

WSSD 논의결과 분석 및 후속과제 도출

2002.11

정영근



서 언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세계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 과 실천행동계획인 '의제21' 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세기 인류가 빚어낸 지구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종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진로를 설정해 가려는 지구촌 규모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2년 9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세계 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194개국의 정상급 대표, 91개 국제기구, 지방정부, 민간단체 대표 등 4만 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계획인 『WSSD 이행계획』 과 그 실천의지를 담은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WSSD에서는 각 분야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세계의 경제·환경·사회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WSSD에서 논의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경제·환경·사회 분야에 대한 후속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국가 장기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후속도출과제는 WSSD 준비과정과 본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쟁점과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WSSD 최종 결과물중 하나인 이행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53개의 후속추진과제는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WSSD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있어서의 사전연구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나아가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근간으로서 유

용하게 이용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해 주신 본원의 정영근 박사와 배현희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맡아주신 한택환 교수, 임종수 교수, 성수호 사무관, 그리고 본원의 한화진 박사, 김준순 박사, 강상인 박사, 이창희 박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닌 연구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2002년 1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국문 요약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 국가가 이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경제, 환경, 사회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WSSD의 전개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한 분석과 각 사안에 대한 국내 현황을 근거로 하여 WSSD의 최종결과물인 이행계획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후속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은 WSSD의 개최가 결정된 시기에서 본회의 폐막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4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지역차원 회의, WSSD 본회의에 걸쳐 국제적, 국내적 동향 파악과 결과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국내 현황은 리우회의 이후 의제 21의 이행성과와 국가전략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현황과 이행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추진과제는 WSSD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합의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해야할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적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WSSD는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맥락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 WSSD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난 10년 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를 위해 4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5개 지역차원의 준비회의가 전개되면서 문안협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WSSD 본회의에서는 준비회의를 통해 도출된 10가지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요하네스버그 정치적 선언문과 이행계획, 파트너쉽/이니셔티브를 최종결과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SSD의 준비회의에서부터 본회의에 걸쳐 논의되었던 주요 주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경제·사회분야,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제도정비·이행수단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어 전개하였다. 각 논의 주제는 2차 준비회의에서 제시되었던 틀로 분석되었으며, 각 주제의 세부사항에 대한 국내의 전반적 현황 및 전략을 다루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WSSD 최종 결과물중 하나인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추진과제들을 도입, 빈곤퇴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수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의 범주에서 각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 배경을 살펴보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후속 추진과제는 WSSD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합의문을 바탕으로 최근 전개되는 국제 협상과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반적 흐름속에서 중요도를 가지는 우선적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53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과제들이 국내에서 가지는 의미와 이행계획의 목표연도를 바탕으로 장기, 중기, 단기 시행계획의 범주로 나누었다. 또한 각 후속과제가 환경·경제·사회의 범주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향후 각 도출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지속가능발전 총괄·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계획과의 연계 미흡,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서 주요그룹의 참여 미흡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방향으로서 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 확산, 수요관리·효율중심의 정책추진, 사전예방적인 정책강화,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정책추진, 환경기술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흔히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만 알려진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더 이

상 환경보전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하여서는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동 개념을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보장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환경부 뿐 만이 아니라 정부 경제·사회 전 부처가 동참할 때에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2002년 세계 환경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리우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평가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WSSD	5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5
가. 등장 배경	5
나. 논의 개요	6
다. 개념 정립	8
2. 지속가능발전의 전개	10
가. 리우선언	10
나. 의제 21	10
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SD)	11
라.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12
제3장 WSSD 관련 논의동향	13
1. UN차원의 논의동향	13
가. 제1차 준비회의	13
나. 제2차 준비회의	14
다. 제3차 준비회의	15
라. 제4차 준비회의	17
2. 지역차원의 논의동향	19
3. 본회의 논의동향	21
가. 본회의 개요	21
나. 주요 회의 진행	22
1) 각료급 본회의	22

2) 정상급 본회의	25
다. 본회의 결과	33
1) 요하네스버그 선언	33
2) 이행계획 (Plan of Implementation)	34
3) 파트너쉽 이니셔티브(Type II)	41
라. 우리나라 대응과 향후 논의방향	43
1)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 입장	43
2) 협상에 대한 평가	44
3) 향후 협상 논의방향	45
제4장 WSSD 주요 논의주제와 국내현황	47
1. 경제·사회분야	47
가.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삶	47
1) 농업 및 농촌개발	48
2) 인구변화와 지속성	50
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50
1) 소비 및 생산	51
2) 지속가능한 에너지	53
다.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54
2.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55
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55
1) 산림자원	56
2) 대기보전	57
3) 사막화	58
4) 생물다양성	58
5) 해양수산자원	60
6) 담수자원	60
나.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61
3. 제도정비·이행수단	63
가. 소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지원	63

나. 이행수단	63
1) 환경과 개발의 통합	65
2) 재원조달	66
다. 거버넌스 (governance)	67
제5장 이행계획관련 후속과제	69
1. 도입	69
가.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	69
2. 빈곤퇴치	72
가. 세계연대기금 설치	72
나.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73
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75
라.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품 안전성 제고	77
마. 지역사회 기반협력 증진	79
바. 안전한 식수 및 공중위생	81
사. 도시빈민촌에 대한 대책방안	83
3.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	85
가. 주요 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분석(Life-Cycle Analysis) 방안	85
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에코라벨링 도입방안	87
다.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 증진	89
라. 청정생산에 대한 투자 증진	91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93
바. 에너지 보조금 철폐와 과세의 재구성	95
사. 폐기물관리체계 개선	97
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99
자.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방안	101
차. 공해상의 해양 폐기물로 인한 동북아 협력방안	102
4.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105
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통합관리	105
나. 수자원통합관리체제 구축	107

다.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09
라.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연구	110
마.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고갈 어족자원의 회복	112
바. 공해상의 어족자원 배분	114
사. 어업보조금 폐지	116
아.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118
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리	120
차. 이동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확보	121
카. 자연재해지역 복원	123
타. 기후변화	125
파.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제협력	128
하. 오존층 보호	129
거. 사막화 및 지구환경금융	132
너. 산림생태 보호	134
더. 지속가능한 관광	136
러. 생물다양성 확보	138
머.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140
버. 전통지식 이용	142
서. 유전자원에 대한 논의	144
5.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146
가.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146
나. 세계화 대응노력	148
다. 디지털화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151
6.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	153
가. 건강과 환경 연계성 평가	153
나.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감소노력	153
7. 이행 수단	157
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157
나. 과다채무빈국(HIPC) 외채 탕감	159
다. 무역관련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	160

라. 농산물 관련 제도 접근과 1차상품 안정화	162
마. 보조금 문제	165
바. 무역과 환경	167
사. 보건과 TRIPS협정	169
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172
가. 건전한 거버넌스	172
나.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175
제6장 결론 및 제언	178
참고문헌	188
<부록 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193
<부록 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문	199

표 차 례

<표 3-1> 2차 준비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15
<표 6-1> 후속과제의 목표 연도	185
<표 6-2> 후속과제의 관련 분야	186
<표 6-3> 후속과제 관련 합동연구기관	18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 국가가 이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경제, 환경, 사회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SSD가 열리게 된 배경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서유럽 정계·재계·학계 인사 모임인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자에서 산업화·소비·인구증가가 인류 성장을 한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해 6월 UN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를 소집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으며, 이 선언을 기초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오존층 파괴·생물종감소·사막화 현상 등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UN은 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1997년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난 10년 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리우회의 10주년이 되는 2002년에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는 경제발전만을 추구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WSSD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빈곤문제는 그동안 진행된 경제발전과 환경보

전에 대한 논의에 전지구적 차원의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축을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즉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빈곤의 문제가 환경파괴와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 문제 극복에 대한 핵심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수적인데 경제발전은 환경파괴와 오염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며 그렇다고 경제발전을 포기하면 빈곤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불가피하게 초래하게 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빈곤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환경보전,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대한 대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환경, 사회 요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면서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자원을 감소시키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소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 시급히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데 자연이 되면 될수록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삶의 질이 높은 복지사회의 추구를 위하여 경제·사회분야 모든 정책에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환경적 고려를 각 분야별 계획에서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이후 국내 환경대책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1996년의 OECD 가입으로 환경정책의 체계가 선진국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찾아온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WSSD에서의 논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현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경제, 환경, 사회분야에 대한 후속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과 관련된 논의 의제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각 분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인구문제 및 빈곤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들, 해양, 대기, 육지, 생물다양성 등 각종 부문 이슈(sectoral issues), 국제환경관련 조직, 법체제 및 재원, 기술이전을 포함한 이행방안 등 복잡한 이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WSSD의 전개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한 분석과 각 사안에 대한 국내 현황을 근거로 하여 WSSD의 최종결과물인 이행계획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후속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은 WSSD의 개최가 준비되기 시작한 시기에서 본회의 폐막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4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지역차원의 회의, WSSD 본회의에 걸쳐 국제적, 국내적 동향 파악과 결과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국내 현황은 리우회의 이후 의제21의 이행성과와 국가전략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국가의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지속가능성 현황과 이행노력 등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후속 추진과제는 WSSD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합의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해야할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적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후속 추진과제는 WSSD의 이행계획을 기본 틀로 하여 최근 전개되는 국제 협상과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반적 흐름 속에서 중요도를 가지는 우선적 사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리우회의 이후 WSSD에 이르는 전사회적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속 추진과제를 WSSD 회의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처음으로 제기되고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리우회의로부터 WSSD 개최에 이르기까지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전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전개하였

다. 즉, 지속가능발전과 WSSD와의 관계를 연결함으로써 WSSD에 대한 이해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맥락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WSSD를 위한 4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5개 지역차원의 준비회의 전개와 논의 동향을 간략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개최된 본회의의 전개와 진행 그리고 논의동향을 제시하였다. 준비회의의 과정과 본회의 폐막까지의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최종 WSSD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고 본회의의 각료급·정상급 회의의 전개를 통해 최종 결과물인 요하네스버그 선언문과 이행계획의 도출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3장에서는 각 국의 입장차이와 노정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협상참여와 WSSD에서의 활동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WSSD의 준비회의에서부터 본회의에 걸쳐 논의되었던 주요 논의주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경제·사회분야,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제도정비·이행수단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어 전개하였다. 각 논의 주제는 2차 준비회의에서 기본적인 틀로 제시되었던 주요 논의 주제의 틀로 분석하였으며 각 주제의 세부사항에 대한 국내의 전반적 현황 및 전략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1,2,3,4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WSSD 최종 결과물중 하나인 이행계획의 전개에 따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추진과제들을 도입, 빈곤퇴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수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의 범주에서 세부사항으로서의 추진과제에 대해 각각 논의 배경을 살펴보고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WSSD 최종 결과물인 '요하네스버그 선언문'과 '이행계획' 전문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WSSD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가. 등장 배경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30여년 전의 일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된 배경의 하나로 「성장의 한계」라는 1972년 로마클럽 제1차 보고서에서 나타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해 연구를 들 수 있다.

1970년 세계 각 국의 과학자·경제학자·교육자·경영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민간연구단체인 로마클럽은 심각한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핵무기개발에 따르는 인간사회의 파괴 등 인류의 위기 접근에 대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모임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1970년 6월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제1회 총회에 내놓았고, 같은 해 7월 MIT 공과대학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그룹에게 제1단계의 프로젝트의 수행을 의뢰하였다. 이는 인류사회가 직면하게될 위기의 제반요인과 그 상호작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작성하여, 장래의 위기적 양상에 대한 전망과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MIT 공과대학의 연구진은 컴퓨터를 이용한 모형작업을 통해 현실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만들고, 과거의 경험을 계량화한 자료를 입력하여 미래의 현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20세기 자원이용과 고갈상태, 인구성장, 환경오염, 소득, 개인별 식량소비 등의 변수들을 지구 전체적 차원에서 함수화 하였으며, 1900년부터 210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현재 상황이 유

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한 분석에서, 인구성장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하여 부존 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가용 부존자원의 양이 인구성장을 지탱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예측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세계경제 정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각도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 비판 가운데 일부는 연구를 발주한 로마클럽이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며 지구 차원의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개별 국에서 취해질 다양한 사업제약 요인들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나, 그 대부분은 연구과정에서 부정확한 가정과 불완전한 자료가 입력되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로마클럽의 보고서는 환경보호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나. 논의 개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하에 열린 동 회의를 통하여 지구환경 보전이 세계공통과제로 제시되고, 환경보전 원칙에 관한 권고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인간환경선언과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of Environmental Programme)의 설치가 결정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국제기구의 공식문서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서이다. 동 전략은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문언을 통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고, 생태계·생명계의 유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지속적인 자원이용의 확보 등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구성요소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도입은 국제자연보호연합,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호기금 등의 지지를 얻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등 다양한 유사개념들을 등장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선·후진국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노력으로 확대되어 나타났다. 갈등은 이미 산업화를 끝낸 선진국들이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중시한 반면,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보전보다는 개발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던 후진국간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가 유엔인간환경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1982년의 유엔환경계획회의이다. 유엔환경계획회의에서 논의되고 다음해인 1983년 유엔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1987년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어 1988년 열린 유엔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도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와 함께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기로 결정하였으며, 1991년 열린 서방 7개국 정상회의(G7)도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한다는 경제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엔결의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00여 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래 20년 간 끌어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규범체제를 마련하였다. 동 회의는 환경보호와 사회경제 발전의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할 구체적 정책이념으로 확립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작업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2년 12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리우회의 결과 실행여부를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약해 오고 있다.

다. 개념 정립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인간이 모든 문제해결의 중심이며, 후 세대를 배려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세대의 자원과 환경의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후 세대의 후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진행되는 개발을 의미하며, 최근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 정책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초개념이 되고 있다.

인류가 지향해야 할 기본전략을 담은 보고서인 Brundtland Report(1987)의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고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¹⁾

이러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미래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관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지구자원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의 경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히кс(J. Hicks)의 지속가능한 소득 개념에 바탕을 두고 ‘약한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 WS)’과 ‘강한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 SS)’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자연자원(natural resource)과 인간이 만들어 낸 자본(humanly created capital)사이의 대체성 정도에 따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²⁾ WS는 인간자본과 자연자본간의 상호 대체성을 허용하여 삶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개념이다.

1)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p.43).

2) 신고전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자본(humanly created capital)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의 flow를 생산하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stock에 대하여 거의 완전대체(near-perfect substitute)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자본이 손상된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손실을 인간자본의 축적으로 보상된다는 논리는 인간자본과 자연자본간의 높은 대체성에 일반적인 가정을 두고 있다.

곧 서로 다른 형태의 자본(capitals)을 통합할 수 있으며 모든 자본은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SS는 인간자원과 자연자원은 대부분의 생산기능에 있어서 대체물이 아닌 투입요소라는 가정에 바탕을 둬으로써 양자를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의 형태로 따로 완전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곧 각 형태의 자본 축적량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지속가능발전의 전개

기술혁신과 국제적 이전이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의 주요 관건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1992년의 리우선언과 의제21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이들은 광범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문제를 인구와 빈곤에 관한 사회경제적인 문제, 해양, 대기, 육지, 생물다양성 등의 세부환경부문 및 그 보존에 관한 국제조직과 법체제의 확립, 그리고 재정자원,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잘 정리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 리우선언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선언적 지침으로 알려진 리우선언은 5개항의 전문과 27개항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반된 입장을 잘 절충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비록 강제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선언적 지침에 불과한 것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에 상당한 규범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의제 21

리우선언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선언적 지침라면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국제사회의 실천계획 혹은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의제21은 전문(preamble)과 개발과 환경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다룬 제1부 7개장,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다루는 제2부 14개장, 주요작업 그룹의 역할을 정한 제3부 9개장, 구체적 이행방안을 다룬 제4부 8개장으로 구성되어 총 38개 의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각 개별의제는 실천기반, 목표, 활동사항 및 이행방안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사항과 이행방안은 각각 관리문제, 자료 및 정보, 지역 및 국제협력과 재정지원, 과학기술지원, 인적자원개발 및 이행능력 형성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정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는 물론, 자체 재원조달 능력과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선진국들의 추가적인 재원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선진국의 보다 확대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SD)

UNCSD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2년 12월에 창설된 기구이다. 동 기구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결정된 의제21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각 국 정부 및 국제사회 중요 단체들과의 협력과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워크숍과 국제회의의 주관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에는 매년 50명 이상의 세계 정상들과 10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환경과 개발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한 UN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라.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1997년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난 10년 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리우회의의 10주년이 되는 2002년에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일명 Rio+10)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회의 목표와 중점논의 분야로 대다수의 국가들은 정부 및 모든 이해당사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행한 성가의 종합평가, 의제 2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리우회의 이후 새로 대두된 과제(new challenges) 및 그러한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대책 및 수단의 명확화, 2002년 회의결과의 효과적 조치, 의제 21의 이행증진을 위한 실천계획,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유엔시스템의 능력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 WSSD 관련 논의동향

1. UN차원의 논의동향

가. 제1차 준비회의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는 2002년 WSSD 제1차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4월 30일 표제회의에서는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주제로, 제반 환경분야에 대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 빈곤퇴치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 검토, 자원 및 기술이전 문제, 그리고 국제환경거버넌스(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 IEG) 등이 제시되었다.

5월 1일과 2일 양일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결정문이 채택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2002년 1월 제2차 준비회의에 제출할 문서에 이번 조직회의 결과 및 지방, 국가, 지역 등 각 단계(level)에서의 준비활동 결과와 주요그룹의 활동결과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UNEP이 주도하는 IEG의 진행 보고서를 제2차 준비회의에서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를 제3차 준비회의에 제출토록 결정하였다.

또한 차후 진행될 WSSD 준비회의 일정 및 장소, 주요논의 내용에 대해서 2002년 WSSD 일정과 관련하여 각 국 정상급이 참가하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일정을 포함하여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002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도록 권고하였다. 정상회의 의사진행규칙은 제56차 UN 총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채택토록 권고하였고 정상회의 부의장 수는 각 지역그룹별로 5명씩 총25명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상회의에서의 주요그룹 연설과 관련, “시간상의 제한으로 인해, 승인된 참가 그룹 대표 중 소수만이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도록 하는” 문안이 반영되었다.

제1차 준비회의는 주로 절차문제를 논의하는 조직회의로서 큰 쟁점은 없었으나, 정상회의 부의장 수, IEG를 준비하는 시기 등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이 나타

나기도 했다. 동 회의에서 결정된 4차에 걸친 WSSD 준비회의 일정 및 장소,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나. 제2차 준비회의

WSSD에서 본격 논의될 의제를 정하기 위한 지구차원의 제2차 준비회의가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8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세계 각 국의 대표, 국제기구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의제에 따라 유럽연합(EU)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그룹과 G77/China로 대표되는 개도국그룹이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선진국은 지구환경 보전,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기술·재정지원, 빈곤퇴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밖에도 무연연료의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 사용, 지구환경금융의 강화, 자원주권의 확립, 월경성 환경문제의 해결 등을 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UN에 속한 몇몇 국제기구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체제, 환경세, 기후변화, 수자원, 빈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 GEF), 에너지 등 다양한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지역회의 결과물인 UN 사무총장 보고서를 기초로 정상회의 채택용 협상초안문서라 할 수 있는 의장 보고서(chairman's paper)를 작성하였다. 앞으로 개최될 준비회의와 본회의의 기본문안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동 의장 보고서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인 도입 장을 제외하고는 9개 주요 의제를 각 장의 제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의제별 주요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2차 준비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공통의제	주요 내용
빈곤	-담수, 에너지, 농촌 및 도시발전, 인간정주, 교육, 질별 등과 연계
소비·생산	-에너지 강조(화석연료의 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의 점유율 증대, 천연가스의 사용 증대)
천연자원	-물, 해양·연안, 재해, 기후변화, 대기 및 오존층 보호, 사막화방지, 산악, 관광, 생물다양성, 산림, 채광으로 구분하여 언급
세계화	-균등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국가보조금 철폐
보건	-주 요인으로 물·대기오염, 소음, 혼잡,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AIDS 등을 언급 -방지대책의 강화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자연재앙에 취약한 특성을 인정 -마르바도스 행동계획의 이행노력의 지원
아프리카	-세계화에 소외되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기술 및 경제 협력의 강화 및 지원
이행수단	-재정, 무역, 기술이전, 과학과 농업, 능력향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구분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GNP 0.7%를 ODA로 활용 -투자과 기술이전의 유인환경을 조성토록 개도국 지원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거버넌스	-제3차 준비회의 때 논의하기로 결정

다. 제3차 준비회의

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준비회의의 2차 준비회의 결과와 추가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강화방안, CSD의 역할에 대한 평가 등이 논의되었다. 무엇보다 이 회의의 주요한 내용은 WSSD에서 채택

될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의 구체문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행계획은 WSSD에서 채택될 3가지 결과문서(정치적 선언문, 이행계획, 파트너쉽/이티서티브) 중 하나로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인 의제 21의 미진한 부분 및 추가이행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개도국간 참여한 대립으로 '이행계획'을 타결하지 못하고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4차 준비회의 직전인 5월24일-26일간 회기 전 회의를 통해 타결되었다. 개도국의 경우 3차 준비회의 최대 쟁점인 자원 등 이행수단 확보와 관련해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과 2002년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³⁾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신규의 자원확보 및 신탁기금의 설립, 선진국 시장에서의 특혜적 접근 등의 추진계획과 목표연도 설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도하각료회의선언문과 몬테레이 합의가 장기간 협상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 회의의 협상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두 그룹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선진국은 이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인권, 시민사회의 참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등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행계획'이 정치적인 선언보다는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한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3차 준비회의를 통해 채택된 '행동계획'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별 구체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와 군소도서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특별히 별도의 '장'을 구성하였고, 해양(수산), 에너지, 건강과 환경 등 주요이슈는 별도의 비공식 그룹을 구성하여 제4차 회의에 별도의 협상문안으로 제출되었다.

3) 몬테레이 합의: 2001년 3.21 채택된 합의문으로 선진국의 대 개도국 ODA 증액 공약 (목표시한은 없음), 빈곤부채국가에 대한 부채처리문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등을 담고 있다.

라. 제4차 준비회의

제4차 준비회의는 각료급 회의로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02년 5월 27일부터 6월 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3차 준비회의에서 합의된 문서를 바탕으로 정상회의의 문서를 구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 25일부터 5월 31일 7일간에 걸쳐 이행계획 문안협상을 진행해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촉진, 자연자원 보전 등에 관한 행동계획 문안 협상을 가졌으나, 빈곤퇴치기금 설립, 해양생태계보전, 거버넌스(Governance) 등의 문안합의에는 실패하였다.

이행계획 협상은 3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제3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장문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의견대립이 심한 이슈는 실무접촉그룹(Contact Group)을 구성하여 문안협의 진행 후 해당 그룹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된 주요사항으로는 빈곤퇴치를 위해 2015년까지 빈곤층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의사결정 시 여성참여 확대, 남녀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농업기술이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인식제고, 청정생산프로그램 마련, 2005년까지 수자원 통합관리계획 마련, 개도국의 수질 관리·대기오염 저감노력 지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최대화 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2010년까지 25%로 낮추고,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연구 지원, 납함유 페인트의 단계적인 사용 금지, 도서국가의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에 합의하였다.

미합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퇴치를 위한 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립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2004년까지 기금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들은 반대하였다. 특히 EU는 기금설립 자체를 반대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자발적인 기여 혹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지원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화석연료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으나 EU는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 사용비율을 5%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며,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 한국은 목표설정에 반대하였다. 특히 77그룹의 경우, 이란, 베네주엘라, 브라질 등 산유국이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

공해상 어족자원 권리분배 및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공해상 이동성 어족자원에 대한 연안도서국가의 몫을 할당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한국·일본 등 조업국가들은 반대입장을 취하였다.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등 연안국가들은 공해지역으로 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였으나 역시 한국과 일본은 국제법과의 일관성 유지와 과학적 정보에 근거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했으며 원양어업에 불리한 협정을 언급한 문안을 약화시키려 유도하였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EU는 각종 소비·생산 정책개발, 에코라벨링 도입,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저해하는 보조금 철폐 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고 한국 역시 단계적인 보조금 철폐를 제기하며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노력 등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하여 EU와 많은 개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2002년에 발효되도록 한다는 목표삽입을 요구하였으나 미국·호주는 발효시기 삽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관리에 있어 EU는 2020년까지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사용을 억제하고 중금속 규제를 위한 협약채택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개도국들과 다른 선진국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전통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이익공유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들은 보호절차 및 이익공유 범위가 애매함을 들어 반대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에 있어 개도국들은 의제21에 명시된 ODA를 GNP 0.7%까지 달성하는 목표연도를 2010년 등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거버넌스(Governance)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인권, 부패추방, 법치주의,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 국내관리체제 개선을 내세우며 이를 개도국 지원의 선결요건으로 강조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의 역할 강화 등 국제 거버넌스(Governance)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양상을 보였다.

2. 지역차원의 논의동향

제1차 준비회의의 폐막 후에 UN이 정한 5개 지역(유럽·북미, 중남미·카리브해, 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태평양)별로 소지역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01년 9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지역회의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지역회의에서는 다음의 5가지 사항들이 공통적인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 i) 국제사회의 의제21에 대한 신속한 이행
- ii) 지속가능한발전의 3개축(환경·경제·사회)의 통합
- iii) 형평성과 포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세계화 추진
- iv) 정상회의에서 이행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정비 강화

지역회의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리우원칙의 이행, 세계화, 빈곤퇴치,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 관리, 농업 및 식량안보, 에너지, 담수와 위생, 인간정주, 건강, 인력개발, 자원, 무역과 시장 접근성, 기술과 능력양성, 거버넌스, 의사결정과 정보 등을 논의하였다.

5개 지역회의 이후 각 지역별 최종 논의 결과물인 지역보고서가 UN에 제출되었고 UN에서는 각 지역보고서의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제2차 준비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UN 사무총장보고서를 발표하였다(2001년 12월). UN 사무총장보고서에서는 의제21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i) 경제, 사회, 환경이 통합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의 노력
- ii) 보전보다는 이용을 선호하는데 따른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패턴
- iii) 정치에 있어 금융, 무역, 투자, 기술 등과의 연계성 및 장기적인 비전의 결여
- iv) 의제21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과 기술이전 체계의 미흡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92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세계화, 정보기술의 발달, AIDS 등과 함께 의제21 이행을 위하여 이번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세계 정상회의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 실질적인 이행, 강력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체계적인 이니셔티브를 달성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 열 가지의 주요의제를 제시하였다.

- i) Making Globalization 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i)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Livelihood
- iii)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 iv) Promoting Health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 v) Access to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 vi) Sustainable Management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 vii) Managing the World's Freshwater Resource
- viii) Finance and Technology Transfer
- ix)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for Africa
- x) Strengthening the System of Inter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본회의 논의동향

가. 본회의 개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는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People, Planet and Prosperity)”라는 주제 하에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 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에 앞서 8월 24일부터 이틀 간 사전 실무협상이 이루어졌다. 193개국과 팔레스타인, 16개 유엔 전문기구, 67개 국제기구와 104개국의 정상급 인사(head of state and government)가 참석하였으며 정부대표 9천명, NGO 8천명, 언론계 4천명 등 총 2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WSSD는 UNCED 이후 10년 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개회식, 각료급 본회의, 정상급 본회의, 채택문서 협상과 폐회식⁴⁾으로 이루어졌다. 움베키(Thabo Mbeki)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의장단의 부의장국⁵⁾은 26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WSSD 사무총장은 니틴 데사이(Nitin Desai), 주위원회(Main Committee)의장은 인도네시아의 에밀 살림(Emil Salim)이 맡았다.

4) 개회식 : 8.26(월), 폐회식 : 9.4(수)

각료급 본회의 : 8.26(월)-30(금)

8.26-29 : WEHAB(Water, Energy, Health, Agriculture, and Biodiversity) 이슈 토의

8.29-30 : 국제기구 연설

정상급 본회의 : 9.2(월)-4(수)

수석대표 연설, 원탁회의 동시 진행

채택문서 협상 : 8.24(토)-9.4(수)

이행계획은 Vienna setting(실무자) 과 Johannesburg setting(각료급)으로 진행

정치적 선언문은 시간 부족으로 남아공이 주요그룹 대표들과 비공식협의로 처리

5) 아프리카 그룹: 카메룬,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동유럽 그룹 :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국 그룹 : 브라질, 쿠바, 안티구아 바부다, 멕시코, 페루

서유럽 및 기타 그룹 : 벨기에,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시아 그룹 : 이란, 이라크, 몰디브, 파키스탄, 사모아

우리나라는 공식 대표단 17명과 100여명의 정부대표 및 300여명의 NGO 대표가 참가하였다. 우분트 환경전시장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였고, NGO 및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등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지와 역동성을 널리 알렸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는 나스럭에서 개최된 국제 NCSD 회의에 참여하였다.

나. 주요 회의 진행

1) 각료급 본회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5개 주요 분야(Water and Sanitation, Energy, Health and Environment, Agriculture, and Biodiversity and Ecosystem Management : WEHAB)에 대한 토론이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파트너십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유엔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이행계획 기본 틀(Implementation framework documents)을 논의의 기초로, 정부대표단과 비정부단체, 세계은행 등 유엔기구 대표들이 논의에 참여하였다.

회의 주제는 인간중심의 개발을 통한 개도국 빈곤퇴치에 있어서 WEHAB 문제의 중요성과 5개 분야의 상호관련성 및 UN 기구들간의 조정 필요성, 여성의 권한부여의 중요성 강조를 비롯해 빈곤층의 기초적, 기술적,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지식, 과학, 연구, 행동 강화의 필요성, 정책결정 및 실행에 시민사회의 참여 및 기여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책임성 및 사회적 기여 등에 있어서 민간역할의 중요성과 생산 및 소비 패턴의 핵심적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가)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

물은 지속가능발전에 핵심적 요소이며, 보건, 농업,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인구가 12억에 달하고 있으며

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구현이 요구되며, 기술, 관리 및 재원의 제공자로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는 접근법(a multi-stakeholder approach)이 필요하며, 다양하고 경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관리접근법(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pproach)이 제기되었다. 또한 물 관리와 보전에 있어서 교육, 정보제공 및 공공인식 제고가 요구되었다.

물은 인권의 문제이며,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인구가 물과 위생의 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물은 부담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할당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에너지(Energy)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빈곤층에의 에너지 보급, 재생에너지 증대, 청정 화석연료 기술 개발 등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시한설정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각 국의 상이한 국내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에너지 보조금 삭감과 환경비용의 효과적인 시장화가 필요하며,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개도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지역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적 통합이 강조되었다. 에너지 분야의 목표로서 빈곤퇴치를 위한 에너지 정책, 에너지 보전과 에너지 효율강화, 청정에너지 강화, 에너지 관련 경제정책의 이용, 여성의 필요 충족, 기후변화에의 대처 (교토 의정서 기준) 등이 제기되었다.

다) 보건(Health)

환경오염, 빈곤, 비위생 간의 악순환을 시급히 제거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명확한 목적과 시한에 기반한 구체적 프로그램 및 행동을 세우고, 이용가능한 과학적 연구, 자발적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보건위험 평가 및 관리, 보건진료 제공자 육성을 위한 능력배양 및 연구가 필요하며, 위생(sanitation) 분야 시한목표를 설정하였다. 새천년 개발목표에는 보건에만 시한을 설정하고, 위생에는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위생분야에 시한설정을 하였다.

라) 농업(Agriculture)

농업의 양극화(polarization: 대규모 농장과 다수의 소작농) 문제 시정을 위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선진국의 무역장벽 해소가 없이는 농업생산성 증대와 기아 및 영양부족인구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철폐, 개도국의 토질개선, 내수시장 개발, 선진국시장 접근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2015년까지 빈곤인구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혁신, 지역공동체 식량은행(food bank)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지속가능한 생산기술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및 능력배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농촌 인프라 건설,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되며, 토지 소유권, 여성 및 원주민 권리 보호,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경보능력 강화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기술발전을 강화하고, 농업, 물, 에너지, 토지, 생물다양성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들에 대한 통합적(integrative) 접근이 강조되었다.

마)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는 지속가능발전의 생태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생물다양성 감소가 경제발전 및 개도국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 명시된 생태적 접근(ecosystem approach)의 실행이 요구되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패턴이 생물다양성 감소의 근원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을 요구

하고 생태계 작용 및 생태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의 세계적, 지역적 공유를 제안하였다.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들간의 시너지효과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무역과 생물다양성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다자환경협약(MEAs)과 WTO간 상호 보완성을 이루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정부, 기업, 농민, 지역공동체간 파트너쉽 구축이 생물다양성 이슈를 경제 및 사회활동에 통합시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지적재산권 이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정상급 본회의

가) 기조연설 주요 내용

WSSD 의장(남아공 음베키(Mbeki)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주제가 “인류, 지구, 그리고 번영(People, Planet, and Prosperity)”이며, 이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채택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불과 10년 전 남아공은 반인류체제의 고향이었으며, 비인간적체제의 유산은 아직도 남아 있으나 비로 이곳에서 세계의 정상들이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인류연대(human solidarity)의 원칙과 이의 실행을 표명함으로써 세계 빈부격차를 지칭하는 범세계적 아파르트타이트(global apartheid)를 퇴치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사막화 등과 같은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수지타산보다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며,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익숙해 온 개발 방식이라는 현실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정부를 필두로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그간 채택한 협약들과 새천년개발목표를 이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촉구하였다.

한승수 유엔총회의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이행계획은 시간적 목표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를 희망하며, WSSD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에 있어 유

엔총회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포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콜린 파워(Colin L. Powell) 국무장관)은 새천년개발목표를 재확인하며, 건전한 경제정책(sound economic policies)은 인류복지에 필수적임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개발지원을 3년 내에 현 수준에서 매년 50억불을 증가하는 수준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수십만불을 지원할 것이고 공언하였다. 미국은 물, 에너지, 농업, 산림 등 4가지의 '서명협력'(signature partnership)을 제안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각국이 이 제안과 여타 15가지 미국 파트너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코이즈미(Junichiro Koizumi) 수상)은 지속가능발전의 해답은 인간(people)에게 있으며 일본은 UN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2500억 엔 이상의 교육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무역축진은 개도국의 독자적인 자신감을 강화하는 핵심이며, 일본은 개도국의 무역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와 무쿼터를 확대할 것이며, 심한 외채에 고통받는 빈곤국가의 건전한 정책수행을 위하여 일본은 G8의 과다채무빈국(HIPC) 이니셔티브 강화 부담금의 25% 이상을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일본은 아프리카 및 여타 세계와 아시아적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하며 남부 아프리카지역 아동 기아구제를 위한 3000만 달러 상당의 긴급식량구호를 결정하였고 또한 환경관련 능력형성을 위해 향후 5년 간 5000명의 해외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2003년 3월 세계물포럼(WWF)과 관련 국제각료회의(IMC)를, 2005년 아이치현에서는 엑스포 2005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영국(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은 현지구상 문제의 해결책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문제는 이를 실현시킬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이며, 이번 정상회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세계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으로 특징 지워지며, 일 국의 문제는 타국의 문제로 이어지므로, 이번 WSSD 정상회의는 자유무역, 특히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촉진하고, 세계화의 이익이 고루 향유되도록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을 촉구하였다. 영국은 2006까지 아프리카 개발원조를 매년 10억 파운드씩 늘려나갈 것이며, 전체 해외원조 수준을 50% 증가시킬 예정인데 이는 자비(charity)가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언급하였다.

프랑스(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적 공조관계(alliance)를 형성해야 하며 이러한 공조관계는 선진국에서의 생태, 생산 및 소비패턴의 혁명적 변화로부터 빈곤국가를 향한 연대노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후변화, 빈곤, 생물 및 문화적 다양성 상실,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 지구적 공공재 등 다섯 분야의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독일(슈뢰더(Gerhard Schroder) 수상)는 기후변화가 단순한 우려가 아닌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으며, 이제 단호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촉구하였다. 따라서 각국의 교토의정서 비준과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산업국가들이 적어도 가입국과 동일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호소하였다. 독일은 이미 19%이상의 온실가스 저감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과 대규모의 재생 에너지 개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5억 유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럽회원국은 현재 260억 유로에 달하는 빈곤 구제 기금 규모를 2006년까지 350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주룽지(Zhu Rongji) 총리)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동등성과 상호존중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리우회의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2000년 대비 주요 환경오염원의 배출수준을 10%이상 감축하여 전반적인 생태환경의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캐나다(장 크레티앙(Jean Chretien) 총리)는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인 실천 노력, 평화와 안전, 인권 그리고 건전한 지배체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캐나다는 아프리카에 5년 동안 60억불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0년까지는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케냐는 2003년부터 최빈국으로부터 생산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이며, 농업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유럽공동체(EU: 프로디(Romano Prodi) 의장)는 민주주의, 건전한 지배체제(good governance),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대한 공유된 인식에 기반한 협약(Pact)를 제시하였다. 몬테레이 협약에서 EU는 GDP 0.7% 목표의 중간 단계로서 GDP의 0.39%를 개도국 원조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것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더욱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2006년까지 220억 유로, 그리고 그 후 매년 90억 유로를 추가 증가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을 상당수준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U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개발, 연구능력 및 기술 공유 등을 통해서 개도국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관련 10개년 프로그램, 주요 수자원 이니셔티브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EU의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쉽은 5년간 135억 유로의 재원을 제공하는 코토노우 협약(Cotonou Convention)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며, 금년 10월 개시 예정인 지역무역협정 협상을 통해서도 공고히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 원탁회의(Roundtables)

1차회의(의장 Aleksander Kwasniewski 폴란드 대통령)에서는 빈곤, 기아, 기근, 환경오염,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 패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stimuli)들을 논의하였다. 전지구적 연대(global solidarity) 형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특히 지구적, 지역적 수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또한 새천년 개발목표와 정상회의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자금 동원을 논의하였는데 ODA 목표달성과 ODA 증대를 촉구하면서, 재원 및 기술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빈곤퇴치를 위한 수입증대적 고용창

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보건 및 안전기준 등 고요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는 원주민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지소유권, 자치권에 입각한 빈곤퇴치 방법이 지방 및 원주민 공동체의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내적, 국제적 제도의 일관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요소의 통합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제도들간에 통합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역 공동체의 기후변화에의 취약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가 WSSD 및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료급 본회의에서 제시된 5개 우선순위 분야(WEHAB)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과학적 지식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ODA 목표 달성과 개도국의 FDI 활성화, 환경서비스에 대한 시장 조성, GEF 자금확충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교토의정서 비준 및 원주민 공동체의 자율성 인정 등을 권고하였다.

2차회의(의장 Massoumeh Ebtekar 이란 부통령)에서는 빈곤, 부채, 자원부족, 보건 서비스 부족, 위생 및 깨끗한 물 공급 부족, 보조금, 관세 및 1차상품 가격 등 무역 관련 이슈, 정보격차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은 공통의 차별화 된 책임 원칙의 적용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2차회의에서는 인적자원 개발과 특히 의무교육 및 보건과 교육의 연계 등을 강조하였다. 의제(Agenda) 21과 WSSD 합의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새로운 자원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원이 사업의 승인 및 관리보다는 실제 이행에 쓰여지도록 재원 활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정개발메카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 제시되었으며, 빈곤퇴치, 보건, 위생, 빈곤층 교육 등을 위해 국제인도주의기금(International Humanitarian Fund) 설립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 선진국의 ODA 목표 달성을 촉구하면서 2차대전후 시행된 마샬플랜이 지속가능발전에 사용 가능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국내자원 동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개도국 부채가 지적되었으며, 무역 및 FDI가 재원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무역장벽과 시장왜곡적 보조

금의 감축을 촉구하였다.

국내 및 국제제도의 일관성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통합능력을 배양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균형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들간 협력 및 조화, 국내수준에 있어서는 부처간 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개도국의 과학기술 능력배양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기술접근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경제성장 및 발전 이익의 공평한 배분과 과학기술의 진전을 제기하였다. 참가자들은 유전자 자원 이용을 통한 이익이 원산지국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적 재산권 제도의 시행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기술이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2차 회의에서는 참가자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포함된 주제로 빈곤 퇴치, 보건, 위생, 빈곤층 교육을 위한 국제인도주의기금(International Humanitarian Fund)의 설립, 이행계획 이행을 위한 피어리브(Peer Review) 제도 창설을 위해 후속 메커니즘 확보,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로 교육투자 확대, 과다채무국은 외채 지불비용을 예산의 10%로 제한, 재활용 및 청정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 개발,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구적 조세(global taxation)부과 가능성을 고려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3차회의(의장 Goran Persson 스웨덴 수상)에서는 지구적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제 21의 이행이 늦은 것은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구체적 행동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위해 지역공동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포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공통의 차별화 된 책임 하에 각 국의 연합(coalition)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WSSD 결과의 후속 이행을 위해 UN CSD가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새천년개발목표와 정상회의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자원 동원을 위해 ODA와 FDI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국의 ODA를 GDP의 1%까지 증대할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무역 왜곡적인 농업보조금이 개도국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업보조금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HIV/AIDS와 아프리카의 기근은 자원동원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GEF, 세계은행의 연구보조를 증대시켜야 하며, 세계연대기금(International Solidarity Fund)이 시민사회의 자원동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도하와 몬테레이 합의, WSSD 결과의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UN 기구들간 중복을 피하고 행동지향적인 전략을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환경보호, 경제개발, 보건, 농업, 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은 민간부문의 자금지원과 개발은행의 융자, 고용의 증대 등을 통해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 국 정책의 변화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촌의 물과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인프라 건설, NGO 참여, 여성 및 청소년 역량 강화, 이행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 과학적 지식의 적용 및 주요 기술 및 과학적 지식에의 접근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교육(universal education)의 중요성 강조하였다. 개도국 두뇌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개도국의 과학기술 연구 감소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안사항으로 HIV/AIDS 해결을 위한 국제기금(Global Fund)과 유사한 빈곤 경감을 위한 지구적 기금을 설립하고, 개별 국가 차원의 변화가 기존의 국제적 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개도국의 과학 기술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 증대해야 한다. UN 기구들간의 일관성 강화 및 이행계획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빈곤, 보건,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지구적 수준의 NGO 창설 가능성 고려가 제안되었다.

4차회의(의장 Bharrat Jagdeo 구야나 대통령)에서는 협상에서 지구적 연대를 위한

의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다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적 수준의 체계적 접근은 에너지, 수자원 공급, 위생, 가족지원계획, 문화적 다양성, 상호성인정과 협력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천년개발목표 및 정상회의의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을 위해 ODA 목표 달성, 외채상환을 위한 정부예산 지정, 지속가능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FDI 및 투자친화적 환경의 조성, 밀수 및 조세포탈에 관한 국제협력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ODA의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도국들은 ODA 보다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도국은 규모의 경제가 없어서 투자유치에 불리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민간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기회로 여기고, 책임을 다하며, 동시에 파트너십을 미래를 위한 통로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인력자원과 기술의 전달을 위해 능력배양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및 국제제도의 일관성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요소 통합능력 배양을 위해 UN 기구들의 국가보고서 작성이 간소화되어야 하며, OECD, 세계은행 등과의 조정이 원활화되어야 하고 또한,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와 물 관리의 연계, 다양한 환경협약들간의 조화로운 이행을 강조하였다. 지역적 수준의 협력은 국제적 수준의 이니셔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및 지식교환, 연구센터 등을 통한 남남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물, 에너지, 보건, 농업 및 생물다양성 등 5개 중점분야(WEHAB) 협력 강화에서 물과 위생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적 및 지구적 수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WEHAB 교육에 대한 협의와 지역적 수준의 이행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농업기구들의 능력배양이 필요하며, 농촌의 빈곤퇴치는 토지소유권과 수자원 관리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농업에서 재원 및 기술이전 확대 원활화를 위하여 농업기구들간 긴밀한 협력을 권장하고 생물다양성이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의 적용 및 주요 기술·과학적 지식의 접근 확보를 위해 정치적 결정은 건전한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제안사

항으로 UN 기구들간 조정을 통하여, 광범위한 참여와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최빈개도국에서, 고용창출과 빈곤퇴치를 위해 중소기업가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끝으로 농업부문 재원 및 기술이전 확대를 위하여 원조기구들과 농업기구들의 긴밀한 협력을 권장하였다.

다. 본회의 결과

1) 요하네스버그 선언

정부간 협상의 결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Johannesburg Declaration)”과 의제21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을 채택하였다.

2002년 6월 발리 준비회의 이후 정치적 선언문에 담길 내용 요소(elements)를 배포하고, 남아공이 준비한 1차 초안에 대해 그룹별 의견 수렴이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해 분량이 길고 내용이 산만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결국 남아공이 제시한 2차 초안에 대해 그룹 대표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정치적 선언문은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으로 최종 채택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의지 표명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빈곤퇴치, 소비·생산패턴 변경, 자연자원 보호가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globalization)의 혜택과 비용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어 특히 개도국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음용수, 위생, 주거, 에너지, 보건,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재원, 시장 개방, 능력형성,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이 중요하며, 만성기아, 영양실조, 외국인 점령, 무장분쟁, 마약, 부패, 테러, 증오, HIV/AIDS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 원주민, 기업 등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이 중요하며, 선진국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ODA) 수준 달성을 촉구하고 아프리카개발 파트너쉽

(NEPAD) 지지 및 군소도서국가를 지원하며 모든 차원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유엔의 지도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실천을 담보하고 있다.

2) 이행계획

발리 준비회의에서 이행계획문의 75%가 타결되었으나 핵심 쟁점은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행계획 협상은 8월 24일부터 주요 그룹 대표들 위주로 진행하는 Vienna setting으로 진행하고, Vienna setting에서의 결과는 주 위원회(Main Committee)에 수시로 보고되었다.

8월 31일부터는 각료급 협상인 Johannesburg setting을 진행하여 그동안 협상결과를 Vienna setting에서 최종 확인하고 Main Committee를 거쳐 9월 4일 정상회의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였다.

가) 리우선언

공통의 차별화 된 책임 원칙(Para 2, 13, 19, 37, 75) 에서 지구환경 악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통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리우선언 7원칙)을 재원과 기술지원으로 연계시키려는 개도국의 시도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타협하였다. 선진국은 동 원칙은 리우선언 27개 원칙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며, 개도국은 여타 원칙보다 동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타협안으로 "taking into account the Rio Principles, including(선진국), inter alia[in particular](개도국) the principle of CBDR" 표현을 채택하였다.

사전예방원칙(Para 22, 103(f)) 조항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리우선언 15 원칙)을 리우선언에 있는 용어대로 사용하고, 부분 인용시 있

을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EU는 사전예방적 접근(approach)이 원칙(principle)으로 발전되었음을 주장하고 지난 10년 간의 진전을 담아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EU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인권문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Para 5, 6)조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인권 존중이 필요한 것으로는 합의되었으나 인권을 구체화하는 수식어는 붙이지 않고 개발에 대한 권리를 추가하여 균형을 유지하였다. 선진국은 인권 앞에 all을, 개도국은 internationally recognized를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윤리(ethics)의 중요성은 선진국의 주장으로 포함되었다.

의료시스템과 인권(Para 47) 조항에서 의료시스템(health-care systems)의 기능을 국내법과 문화·종교적 가치 외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따라 강화하고, 캐나다의 주장에 따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다) 세계연대기금

빈곤퇴치를 위한 자발적 성격의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에 합의하였는데 EU는 기금 설치가 은행계좌 개설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며 설치 문제는 유엔총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기금설립에 반대하였으나, 77그룹의 강한 요청에 따라 결국 EU는 기금 설치에 동의하였다.

라) 위생문제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1/2로 축소기로 합의하였다. 음용수 문제는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생 문제는 동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이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반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동의하였다.

마) 생산 및 소비패턴

10개년 계획 수립문제(Para 14) 조항에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10개년 계획(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을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EU는 단일의 계획을, 미국과 77그룹은 복수의 계획을 주장하였으나 EU의 주장이 보다 많이 받아들여진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생애주기분석(life-cycle approach) 적용(Para 14(c)) 조항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경우 생애주기분석을 활용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에코라벨링(eco-labelling)(Para 14(e)) 조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단을 자발적으로 활용토록 하되, WTO에서 협상이 진행중이고 성격 규정이 어려운 에코라벨링에 관한 언급은 삭제되었다. 에코라벨링과 관련하여 77그룹, 호주, 뉴질랜드는 자발적인 성격을 그리고 EU, 스위스, 일본은 자발적인 성격 외에 강제적인 측면을 주장하였다.

바) 에너지문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공급비율(Para 19(e)) 조항에서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율을 수량적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시급성을 가지고(with a sense of urgency) 대폭 증가시키도록(substantially increase) 하였다. EU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5%를 달성하고, 선진국은 2000년 대비 2% 포인트를 증대하는 목표 채택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77그룹은 개도국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접근 문제임을 주장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은 국가별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수량화된 목표에 반대하

였다.

에너지 보조금 철폐(Para 19(p)) 조항에서는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에 해로운 보조금 철폐를 포함한 시장 왜곡적 조치를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에너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phase out)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선진국의 이행정도를 2007년에 점검하여 만족할 만한 경우 개도국도 이행하는 문안은 삭제되었다.

사) 화학물질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산, 소비하고 중금속의 위해성을 감소하는데 합의하였다. “2020년”이라는 목표 연도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보건에 관한 내용이므로 다른 사안과 차별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EU의 강한 주장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 등과 77그룹이 목표연도 설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EU의 주장은 ‘최소화’한다는 보다 완화된 표현으로 정리되었다.

아) 자연자원 보호

자연자원의 훼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역 노력을 촉구하였다. EU는 “2015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미국과 77그룹의 강한 반대로 목표연도는 삭제되었다.

자) 수산

고갈어족자원 회복(Para 30(a)) 조항에서 고갈어족자원에 대해 “시급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2015년까지”(on an urgent basis and where possible not later than 2015) 최대지속가능생산(maximum sustainable yield) 수준 유지 또는 회복되도록 합

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EU는 목표연도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77그룹, 미국, 일본, 한국은 반대하였다.

공해상 어족자원 배분문제(Para 30(e)) 조항에서는 공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경계왕래성 어족자원과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의 배분문제와 관련하여 연안개도국의 권리(rights)를 지역수산기구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연안국의 권리, 의무, 이해관계와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rights, duties and interests of coastal States and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를 고려한다는 완화된 표현으로 합의하였다. 연안개도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문구는 한국만이 반대해 오다가 노르웨이,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EU, 미국 등의 지지를 확보하여 표현을 보다 완화하였다. 아울러 현행 국제법상 인정되는 “special requirements”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연안국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강조하였다.

차) 기후변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유엔천년정상회의 선언을 언급하면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비준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동 문안에 반대하였다.

카) 사막화/지구환경금융

지구환경금융(GEF)에 토지황폐화(land degradation)를 중점지원분야로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사막화방지협약의 재정 체계가 될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타) 생물다양성 보호

생물다양성 상실 추세 감소(Para 42)와 관련된 조항에서 2010년까지 현재의 생물다양성 상실 추세를 대폭 감소(significant reduction)시키는데 합의하였다. EU는 2002년

4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제6차 당사국총회의 각료선언보다 후퇴된 표현이라고 비난하였다.

유전자원 활용(Para 42(o))과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서 본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을 고려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테두리 내에서 협상하였다. 호주, 미국, 스위스 등은 international arrangement를, 77그룹은 international regime를 주장하였다. 국제 레짐의 성격에 대해 77그룹은 구속력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의 요구로 legally binding 수식어는 삭제되었다.

파) 세계화

세계화(Para 45)와 관련하여 세계화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함을 언급하면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능한 한 균형 되게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균형적인 문구를 주장하였으나 77그룹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고 노력하였다.

세계화 대응 노력(Para 45(a), (d), 45.ter)관련 조항에서는 도하각료선언문에 따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재원 관련 몬테레이 합의의 이행을 지지하고 ILO에서 제기된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작업을 지지하였다. 아울러 세계화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 재원

공적개발원조(ODA) 지원(Para 79(a))과 관련하여 선진국에 대하여 ODA로 GNP의 0.7% 제공목표 달성을 촉구하고 개도국에 대하여는 ODA의 효과적인 사용을 요구하였다. 또한 ODA 관련 목표이행 수단과 시한 검토를 강조하였으나,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ODA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과다채무빈국(HIPC) 외채 탕감(Para 83(a))과 관련하여 HIPC에 대해 외채 탕감조

치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충분히(speedily, effectively and fully) 이행하도록 하였다.

거) 무역

무역 관련 개도국 우대조항(Para 86(a))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하여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비농산물 관련 관세 철폐(Para 86(b)) 조항에서는 비농산물 특히 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감축하고 적절한 경우 철폐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77그룹은 농산물, 비농산물을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언급을 주장하였으나, EU, 일본, 한국 등은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체제(농산물과 비농산물 구분)와 상치됨을 들어 반대하였다.

농산물(Para 86(c))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개선, 수출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 국내 보조의 감축 등 도하각료선언문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농산물의 비교역적 관심(NTC)도 언급하였다.

최빈개도국(LDCs) 수출품(Para 87)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타(duty-free, quota-free)의 목표 달성을 선진국에 촉구하였다.

보조금(Para 91(b)) 관련 조항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도하각료선언문의 작업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지지하는 문구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EU는 환경에 유해하고 무역 왜곡적인 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reduce or phase out environmentally-harmful and/or trade-distorting subsidies) 문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다.

무역과 환경(Para 91, 92) 관련 조항에서는 무역, 환경, 개발간의 상호 보완성(mutual supportiveness)을 제고하고, 다자무역체제와 다자환경협약의 독자성(integrity)의 중요도를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호주, 미국이 찬성하여 “while ensuring WTO consistency”라는 표현이 최초로 포함되었으나, 투발루, 이디오피아, 77그룹, EU 등이 반대하여 결국 삭제되었다.

1차상품 안정화(Para 89)관련 조항에서 개도국은 1차상품 안정화를 위한 메카니즘

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논란 끝에 결국 1차상품 의존국의 능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보건과 관련해서는 HIV/AIDS 등의 문제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역관련지적 재산권협정(TRIPS)이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재확인하였다.

너) 건전한 거버넌스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good governance의 요소로 건전한 경제정책, 민주제도, 자유, 평화, 안전, 인권, 개발 권리, 법치, 남녀평등, 시장정책,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공약 등을 거론하며, 몬테레이 합의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하였다.

더) 국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2005년까지 국별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합의하였다.

3) 파트너십 이니셔티브(Type II)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국제기구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상회의 첫째 주에 협력사업에 대한 소개와 새로운 사업발굴을 논의하였다. WSSD의 정부간 협상결과(정치적 선언문, 이행계획)와 의제 21, 그리고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보완과 이행 강화를 목표로 자발적이며 자주적(self-organizing)으로 추진되면서, 경제, 사회, 환경 3측면을 반영하는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사업은 국가적 수준을 넘어서는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시한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 참가 주체로는 정부, 지역그룹, 지방당국,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민간부문 등 가능한 해당분야의

중요한 주체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원의 경우, 사용 가능하거나 예상되는 재원이 명시되어야 하며, WSSD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WSSD회의에서 초기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제기되었다.

※ 승인된 사업 : 총 172개

- i)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 관련 사업 : 9개
- ii) 보건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 13개
- iii) 이행계획 : 능력배양 관련 사업 : 14개
 -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관련 사업 : 5개
 - 과학과 교육 관련 사업 : 11개
 - 무역 관련 사업 : 2개
 - 기술이전 관련 사업 : 1개
- iv) 빈곤퇴치 관련 사업 : 3개
- v) 자연자원의 보전 및 관리 : 농업/식량 안보/농촌 개발 관련 사업 : 7개
 - 생물다양성 관련사업 : 9개
 - 기후변화/대기오염 관련 사업 : 3개
 - 조기경보/재난방지 관련 사업 : 4개
 - 에너지 관련 사업 : 15개
 - 산림 관련 사업 : 4개
 - 담수 관련 사업 : 14개
 - 산악 관련 사업 : 2개
 - 해양/해안지역/수산 관련 사업 : 21개
- vi) 아프리카 지역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 11개
- vii) 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 : 1개
 - 능력배양 관련 사업 : 2개
 - 기후변화 관련 사업 : 1개

조기경보/재난방지 관련 사업 : 1개

교육 관련 사업 : 1개

에너지 관련 사업 : 3개

보건 관련 사업 : 1개

자연자원 관리사업 : 3개

viii) 도시환경 관련 사업 : 8개

ix) 기타분야 파트너십 관련 사업 : 3개

라. 우리나라 대응과 향후 논의방향

1)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 입장

- i)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 : 세계연대기금은 자발적 성격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동 기금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다.
 - ii) 위생 : 안전한 음용수와 함께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1/2로 축소키로 한다는 목표설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 iii)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공급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에너지정책은 각 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의 목표연도 설정에는 반대하였다.
 - iv) 화학물질 :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목표연도 설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 v) 수산 :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2015년까지 고갈된 어족자원을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가급적 완화된 표현을 지지하였다. 목표연도에는 가능한 경우(where possible)가 추가되었다.
- 공해 및 EEZ내 수산자원의 배분과 관련 연안개도국의 권리(rights)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조업국인 우리나라의 이해를 고려하여, 연안국의 권리, 의무와 개

도국의 특별한 필요(special requirements)를 고려하는 완화된 표현을 제안하였다. 노르웨이,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EU 등의 지지를 확보하여 우리 입장 반영에 성공하였다.

- vi) 기후변화 :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교토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 예정임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 비준 촉구 문안을 지지하였다.
- vii) 지구환경금융 : 지구환경금융(GEF)에 토지 황폐화(land degradation)를 중점 지원분야로 추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 경우 동북아 황사문제 해결에 GEF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viii) 유전자원 활용 이익 분배 :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빈국으로서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 레짐 설립에 대해서는 가급적 완화된 표현을 주장하고, 이 문제는 WIPO, CBD 등의 테두리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개하였다.
- ix) 무역 및 자원 : WTO 도하 각료회의와 몬테레이 개발재원 각료회의의 합의를 넘지 않도록 대처하였다. 특히 농산물 관련, 농산물에 대한 비교역적 관심(NTC)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x) 건전한 관리체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관리체제(good governance)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특히 국내의 good governance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협상에 대한 평가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함에 따라 금번 WSSD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데 따른 결과이다. 금번 회의에서 많은 관심이 쏠린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고, 자원과 무역에서 지난 몬테레이(2002년 3월)와 도하(2001년 11월)에서의 합의사항을 뛰어 넘지 못한 측면

도 존재한다.

WSSD 직전 뉴욕에서 개최된 선·개도국 핵심국가(friends of the chair, 25개국) 회의에서 몬테레이와 도하 합의를 재논의(reopen)하지 않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유엔밀레니엄 선언의 목표(빈곤인구, 음용수, 보건, 교육 등)를 재확인하고 위생, 화학물질, 어족자원, 생물다양성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행계획에는 “의제 21”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가 없더라도 행동 지향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 향후 10-20년 기간에 구체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은 WSSD에서 각국이 많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약과 행동에 합의하였으며, WSSD가 부자와 가난한 자,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부터 시작”(It's Just the Beginning)이라고 언급하였다.

금번 이행계획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건설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조업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자원과 무역 관련하여 몬테레이와 도하의 합의를 유지하는 선에서 대응하였다.

3) 향후 협상 논의방향

- i) WSSD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정책에 반영 : WSSD 결과, 특히 이행계획은 향후 10-20년 간 국제사회가 나아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행계획의 국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ii)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ility) 고려 :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은 금번 WSSD를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도 국가의 모든 정책, 계획 수립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 iii) 정책 및 계획 수립시 이해당사자(stakeholders) 참여 확대 : 정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기업,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WSSD에서도 크게 논의된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핵심 요소이다.
- iv) 국가의 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 : 지속가능발전은 국가 전체의 총체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가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노력을 대폭 제고하여야 한다.
- v) 이행계획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 : 이행계획은 그 자체가 완결된 계획은 아니다. 190여 개국이 모여 목표와 달성 연도에 합의한 분야도 있고, 원칙적인 내용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협상에 맡긴 분야도 있다. 우리나라는 후속협상과 이행계획 점검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가 필요하다.
- vi)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 : 빈곤퇴치는 WSSD의 최대 이슈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제4장 WSSD 주요 논의주제와 국내현황

1. 경제·사회 분야

가.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삶

빈곤퇴치문제는 경제발전의 기본조건이면서 환경보전의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 사항이며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점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히 동의하고 있고 UN에서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농촌 빈곤인구를 현재수준인 75%에서 2025년까지는 현재의 60%로 줄이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그밖에도 2000년 「밀레니엄 선언」에서도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인구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WSSD 준비회의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이행수단으로써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 농촌의 빈곤해소, 사막화 방지, 담수자원의 공급문제 등 관련부문과의 연계강화와 주거 및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WSSD를 위한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을 도시빈곤 및 농촌빈곤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인간정주(human settlement)의 문제로, 후자의 경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농촌빈곤의 탈피수단으로 제기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의 발전(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SARD)을 위하여 토지이용, 벌채, 사막과, 용수 및 관계시설, 생물다양성, 생명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도시빈곤 역시 심각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문제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WSSD 본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빈곤과 저개발이 편중된 개도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

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부문에서 합의에 접근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불어닥친 IMF로 인해 99년 기준으로 빈곤율이 96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IMF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절대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수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9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100만명을 상회한다.

빈곤층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도의 정착이 안되어 부정수급자가 있는가 하면, 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2001년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면서 실질적인 보완이 예상된다.

빈곤의 원인을 실업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가정불화, 아동학대, 여성학대, 노인의 방기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수반한다. 소년소녀가장의 문제의 경우,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증가추세에서 1998년과 1999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은 약 10%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사회보장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 사이였으나 2000년에는 9%로 증액되었고, 1994년부터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의 공급기반의 확충을 위해 보건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의 보강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향후 빈곤대책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절대빈곤인구를 감소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득불균등의 격차를 줄여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농업 및 농촌개발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현황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농촌의 토양과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저하에 의한 인력유출로 동공화 현상이 발생해 영세한 가족농체제의 농업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으로는 대규모 기업농체제인 농산물 수출국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정책의 관점에서 그 간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WTO의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결과적으로 농가의 과잉투자와 부채누증, 환경오염을 유발하였고, 가족농이 지향해야 할 다품종소량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의한 품질경쟁력위주의 시장화 유도에 미흡하였다. 그 간의 법체계 정비를 통하여 의제 21의 기본정신을 법에 반영하여 법체계 자체는 선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5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상 농경지가 농림지역과 준농림지로 구분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WTO라는 경쟁체제와 환경보전과의 조화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지정리·용수개발·관개개선·개간·간척 등을 위한 노력과 환경보전사이의 사회적 조화가 필요하며,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한 유기농의 확대와 이에 따른 고품질화 노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정된 자원과 토지의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환경친화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업과 축산업의 적정 분할(Portfolio)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농업은 내·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그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정부의 대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후속추진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도 역시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문제의 통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성 있는 장기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의 추진을 위한 중·단기 전략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규모의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이어야 할 것이다.

2) 인구변화와 지속성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구와 환경관련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빈곤-환경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환경과 인구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과 후생, 교육 등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NGO활동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환경-인구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과 지속가능한 인구의 관계를 보다 쉬운 언어로 설명하여 교육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는 체계적인 인구정책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 균형상태에 진입하고 있으며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노령화, 노동력 공급둔화, 학령인구감소 등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농촌인구의 탈농현상의 심화로 점차 공동화되어가는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구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여 인구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발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이번 WSSD 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경제활동 즉 생산과 소비가 자원 낭비적이고 환경 파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은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 및 생산패턴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제시된 이행수단은 각

중세제, 보조금 등 시장 매커니즘에 바탕을 둔 방식의 채용,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행동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인증제도 도입, 생산과 소비의 생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시책 시행 등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연료원별 대책 수립, 에너지 기술개발, 보조금의 정비, 산유국 및 소비국간 협력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9차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9)⁶⁾에서의 에너지 관련 결의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였다.

1) 소비 및 생산

소비에 대한 결정은 종종 복잡한 정부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환경적인 다른 정책 수단들을 포함하는데, 예컨대 경제적 도구들과 소비자 가격에 외부 환경적 영향을 연계시키는 것과 함께, 상이한 소비패턴을 제한하거나 최소 생산기준을 선정하는 규제수단을 포함한다. 거시경제정책과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패턴의 규모 및 구조와의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천연자원과 독성물질의 사용,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필요량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기본적 필요량에 대해 만족시키고 더 나은 생활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과 서비스의 소비를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한 소비는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생애순환 관점에서 평가하며, 형평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등 핵심요소를 함께 묶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최근의 물질흐름(Material Flow)은 많은 오염, 자원고갈, 에너지소비, 생물다양성과 자연경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등의 전생애순환으로부터 오는 손실의 강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소비형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발도

6) 제9차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1년 4월)에서 채택한 에너지 부문에 관한 결의안은 개도국의 전력 등 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 기술이전, 에너지 관련 보조금의 점진적 철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국에서 생활수준의 효율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형태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소비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현대의 물질적인 소비문화에 대응하여 정신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소비문화의 창출을 도출하는 동시에 과도한 광고, 상대적 빈곤감, 과소비 등 시장소비경제의 문제점 개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생산 체계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개편해 적은 환경요소의 투입으로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생태효율(Eco-efficiency)이 높은 사회경제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쾌적한 환경수준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하여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에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규제 형태의 환경규제나, 경제적 규제를 확대하여 환경개선효과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최소화계획원리(Least Cost Planning: LCP)에 의거한 수요관리를 확대한다. 비용최소화계획원리는 예상되는 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공급시설의 개발보다 더욱 저렴한 전략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만 새로운 공급시설의 개발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약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공급시설 확충보다 훨씬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때문에 이럴 경우 에너지 공급주체가 최종 소비자인 가정이나 기업에게 자원을 절약하도록 후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보편성을 보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1회용품 사용억제, 쓰레기종량제, 과다포장 제한 등)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문의 노력이 아닌 정부, 기업, 민간단체, 국민들의 동참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홍보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대책들

의 성과와 함께 실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강조해야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경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21세기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전 세계적으로 과잉요소로 변화될 전망이다 반면 자연은 갈수록 희소한 재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노동의 가격을 낮추고 환경과 자원의 가격을 높이는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은 조세에 따른 경제전반에 걸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정책으로 이미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구조개편(민영화와 경쟁도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현재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와 협력 하에 2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전국적인 연대구조(에너지절약시민연대)를 통하여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참여중이며, 서울시는 처음으로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다른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에 있다. 이는 대단히 전향적인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에너지효율화와 관련하여 가격적정성(환경비용내부화 등) 및 유해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가격은 유류가격을 중심으로 향후 6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구조개편 이후의 전력가격에 대하여는 아직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유해보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특별회계, 교통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 많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업구조뿐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수송부문의 효율화는 기후문제, 대기보전문제, 에너지효율화 노력에 공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부문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주체의 에너지절약행위가 자신의 합리적 경제행위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유도되도록 경제시스템, 즉 에너지가격 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절약행위에 대한 가격외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에너지절약행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개편을 위해 최소한 세수중립(revenue neutral) 원칙하에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로 인한 세수증대분 만큼 타 조세를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한 에너지비용 부과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세계화는 다면적인 과정으로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공히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 혹은 대응이 될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SSD 의 논의는 세계화의 추세를 인정하되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세계화가 빈곤의 재생산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와 직접투자의 촉진,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접근 제고와 선진국 자본의 개도국 투자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에 대하여 국가 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 미국은 세계화가 하나의 대세로서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와 EU 등은 급격한 단기자본의 이동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국제 금융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WSSD에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는 담수자원·대기 및 기후·사막화 방지·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부문·산림생태계부문에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산림생태계부문은 숲과 산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실행하기 위한 유엔산림포럼 등 기존 여러 국제협약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산지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산지농업 및 임업, 산지공동체의 의사결정 참여 등이 제안되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대화, 다자 및 양자간 협력 등도 강조되었다.

대기 및 기후 부문에서는 일반적인 대기환경 보다는 기후변화협약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행계획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인정, 관측 및 감시체계 구축, 기후변화관련 개도국 지원,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처체제의 개발,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교토의정서의 비준 및 발효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미국은 국내정책상 교토의정서의 비준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와 기후변화의 방지 보다는 기후변화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안인 적응전략(adaptation strategies)의 적극적인 채택을 주장하였고, 호주와 러시아 등도 2002년까지 기후변화협약을 발효하도록 한다는 문안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사막화방지의 경우 아프리카 중국 등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생존조건을 위협하고 있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초점을 둔 논의로서 특히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on Combating Desertification: UNCCD)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부문에서 생물다양성은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생물자원 문제는 유전자 등 생물학

적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된 이행수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존의 협약들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보전방안과 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부여 문제와 관련한 논의, 생물자원에 기반을 둔 전통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 부여문제, 그리고 유전물질과 관련한 혜택의 형평성 있는 배분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쟁점사항으로는 유전자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하여 개도국 측은 유전자원에 대한 현 지국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 측은 관련논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언급을 반대하였다.

담수자원은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성장에 필요하며 인체보건과 복지에 필수적인 자원이므로 효율적인 담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부내용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관리 및 형평성 있는 이용을 추구하고 담수자원에의 접근 제고를 위한 방안개발(밀레니엄 선언의 내용 관련)과 공유 수자원에 대한 지역 및 국제협력 등이 있다.

1) 산림자원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인 전형적인 산악국가이므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서는 산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가적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환경 친화적인 방안으로서 산림은 물공급의 가장 항구적인 수원함양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산림은 대기보전, 생물다양성보전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부문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산촌지역사회의 구축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도시중심의 공업우선정책으로 농촌 산촌의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는 미흡하였으며, 높은 인구유출, 지리적 험준성, 입지적 벽지성 등으로 인한 빈곤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지 및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과 동시에 경제적, 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유지증진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산림환경기능의 제고와 산림자원의 주기적인 평가·감시를 통해 산림생태계의 관리 및 관리체계 강화해야 한다. 임산물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해 산촌지역사회의 발전을 담보하고, 황폐지복구 및 생태계보전으로 토지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면서 자연생태계의 안정화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효율적 제도정비와 지구적 차원의 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 대기보전

대기오염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의 배출단계에서의 규제보다는 다른 관련 정책과의 조화운영이 필수적이다. 에너지연료의 적정 선택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강화, 도시화에 대한 적정화를 위한 국토개발계획의 선진화, 교통정책에서의 수요관리기능 강화 등이 다차원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염방지노력도 규제방식 일변도에서 보다 다양한 방안모색으로의 전환을 위해 시장기능의 강화 (연료가격에서의 환경비용 내부화 노력, 배출부과금의 적정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연소단계에서의 기술적 해결방안(후처리기술의 개발 및 BAT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도시대기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이 특히 중요한데, 대기질 지표관리기능의 강화 (현재 지표로 활용중인 오존, SO₂, Nox 등 이외에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표화 작업이 필요) 지표관리를 위한 도시내 정부, 시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도시별 대기질 목표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이외의 단체(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NGO, 기업 등)의 이행과제 및 상호 참여와 협력강화 방안을 반영해야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타 부처간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한 과제(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도시교통체계개선 등)의 이

행능력 강화하고, 시민참여프로그램(카풀, 대중교통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을 개발·추진해야한다.

WSSD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해 성층권 오존과피 방지를 위한 계획내용 반영하고, 불확실성 규명을 위한 실천계획(수용체 중심의 대기오염 건강위해성평가, 오존생성 메커니즘 규명, 배출 재고(emission inventory) 구축 등)를 추가·보완해야한다.

후속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목표를 수치화(GDP 증가율 대비 온실가스, SO₂, NO_x, PM₁₀, VOCs 등 배출증가율)하고 목표 달성시기를 명시하고, 추진목표를 계획추진의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실천계획의 보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막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막화 현상이 직접적으로 관찰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며, 그 간의 성공적인 산림녹화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화학비료남용과 산업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지오염방지 노력 등도 부족하나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 몽골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간 민간간 협력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생물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의 존재,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호지역이 다양한 형태로 지정되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는 자연보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많은 나라들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특별히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이 그 규모

는 작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고, 일정수준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이 항시 유지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자연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다각도로 전개된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생물다양성은 살아있는 유기체들 사이의 다양성으로 정의되는데 이런 연유에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수는 그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자료의 수가 부족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멸종위기는 산림 등 주요 생태면적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산림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생태계지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멸종위기는 산림 등 주요생태면적의 감소에 기인하며 지속가능성과 여러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의 여행이나 상거래 도중에 유입되는 외래생물종의 증가로 이들이 정착하고 나면 기존의 생태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이들에게는 천적관계가 없어서 그 수가 급증하게 되며, 현재 그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종은 황소개구리, 블루길, 배스 등 3종이지만 이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또 다른 위험 외래종이 없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 과정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정신이 반영되고, 이후 이에 대한 관리기반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이행성과는 제도 관리차원의 기반이며, 실행에 기초한 구체적인 성과는 향후 노력을 통하여 확보해야하는 과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을 위해서는 종 및 유전다양성, 생태계다양성 등을 실질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실행력에 기초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중인 생물자원보전관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존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향후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선진국들은 보전·관리 기술의 지원을 촉구해야한다. 특히 월경성 동물의 서식지 유지를 통한 이동네트워크 구

축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의 LMO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생물종 개발에 대한 주의를 위하여 국내에서도 조속한 법령 체계 및 위해성 평가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해양수산자원

WSSD 이행계획 협상에서 해양어업에 대해 무역왜곡적인 어업보조금 폐지가 주장점사안이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불법·과잉조업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없애자고 주장하였는데,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는 이를 반대하였다. 최종 이행계획문에 이 문제가 추가되므로써 앞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나드는 어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자원을 우선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후속과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은 구상하기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관리를 위한 목표로서 청정해양환경 조성 및 습지 등의 연안역보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수산자원 보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연구를 통하여 해양 및 그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증진 등을 제고해야 한다.

6) 담수자원

21세기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는 공급위주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holistic) 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선 수자원은 사회적, 경제적 상품인 동시에 그 중요성에 반해 대체가 불가능하며 유한한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인식 하에 물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지 말고 이들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물공급을 우선시 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해 국민들이 부족함 없이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자원 관리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즉, 안정적인 물공급은 물부족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전적(ex ante)으로 모든 대안들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물부족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최선의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즉, 수요관리를 고려한 물 수요추정에 근거해서 수요예측을 하고, 환경적이며 생태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파급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경제성 평가에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정량적(quantitative)으로 계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는 부족함이 없는 양질의 물이용에 초점을 두고 이의 충족에 있어 국민의 후생(welfare)과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사회적 용인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 보건과 지속가능발전

건강은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빈곤 및 환경오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보건악화와 AIDS 문제의 우선적 해결방안을 주로 논의하였다. 개도국 측은 공중보건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유연한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WTO의 도하개발아젠다의 문안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AIDS·말라리아 등 질병의 퇴치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조성하지는 개도국의 주장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은 기존의 기금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WHO의 데이비드 나바로 지속가능발전국장은 "현재 3백억달러 수준인 개도국의 보건예산을 6백억달러로 늘리면 8백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추가 보건예산은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빈곤층 비율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소년의 건강상태와 영양상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되므로 현재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영양 불균형과 영양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아사망률

은 의료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나타내며 이의 감소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다른 잣대인 기대수명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인구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기대수명의 증가는 평균연령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또 전체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 등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제도정비 · 이행수단

가. 소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지원

소도서개도국은 기후변화 등 환경적으로 취약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소도서개도국의 지원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서는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한 지역적 어업관리 기구 및 협정에 대한 지원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서부 및 중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협정에 관한 언급의 삭제를 주장하였으나, 뉴질랜드 사모아 등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아프리카는 세계화의 이익을 향유하는 데에 뒤처져 있으며 빈곤심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의 당위성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공감하였다.

WSSD에서는 소도서 개도국과 아프리카는 소외, 지형적 분포, 고립 등 경제적,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핵심 이슈 중 하나로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들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으로서 재정관련 이슈들에 대한 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의 대응 전략과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이전의 경우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IT기술의 성과와 높은 인력수준을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이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이행수단

재원문제에 관한 논의는 몬테레이 합의의 내용을 고수하려는 선진국 측과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받아내려는 개도국 측과의 이견이 있었다. 개도국 측은

의제21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신탁기금의 창설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측은 이에 대해 반하였고, 개도국 측은 서문에서 자원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규 및 추가자원 (new and additional resources) 관련, 리우선언의 공통의 차별화 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개념을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개도국 측은 ODA를 2010년까지 GNP의 0.7% 달성한다는 목표시한의 설정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였다. 개도국 측은 과다채무국의 구제문제를 결정한 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⁷⁾ 이니셔티브의 조속한 확대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측은 여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무역의 경우, 무역이 지속가능발전의 자원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개도국 측은 시장접근,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무역장벽의 제거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며, EU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양허적 무역체제를 강조하였고 일본, 미국 등은 도하 개발 아젠다의 합의사항을 강조했다. 관세 인하, 환경에 유해하고 무역 왜곡적인 보조금의 제거, 개도국 제품의 시장접근 제고, ILO의 핵심 노동기준의 적용문제, 환경과 무역협정의 연계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EU는 이를 적극 지지하였으나 한국과 미국은 점진적인 철폐를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다른 부분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별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술이전에 관한 논의에서 개도국 측은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하여 환경기술의 이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제도와 지적재산권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였다. 개도국 측은 환경친화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의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측 (미국 및 일본)은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의 청정기술 프로그램 등 기존체제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환경친화기술에 대한 개도국 접근 촉진에 관하여 선진국은 민간부문의 보유를 이유로 곤란함을 표시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전분야에서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7) HIPC 이니셔티브: 2000년 11월을 기하여 IMF와 World Bank는 세계 24개 최빈부채국에 대하여 부채 완화조치를 취하였으며 확대할 계획이다.

점을 지적하며, 개도국 측의 토착 및 전통지식에 관한 특허 부여 주장에 관하여 주요 선진국 및 한국은 이 주제가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서 논의되는 사항임을 들어 삭제를 주장하였다.

1) 환경과 개발의 통합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는 지역 환경개선과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보교류, 상호협력,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의 지방의제21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 연계망(network)의 역할을 위해 1995년에 결성되었다. 2001년 6월 31일 현재, 우리나라는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60%인 14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19.4%인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 중에 있어 79.4%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제도지표 항목별로 2001년에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수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속적인 환경계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 성장의 척도로 사용하던 GDP 혹은 GNP에 환경자산을 고려한 새로운 계정체계에 대한 연구가 국내적으로 94년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환경협력을 위한 노력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한·중·일 3국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및 황사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자 2000년 9월 20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가 발족되었다. PCSD는 정부내 개발과 환경 관련부처의 장관들 및 실무국장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책임은 없다. 이에 현재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참여 및 소속 위원들의 구성도 환경

분야 쪽으로 치우쳐 있어 개발과 환경의 균형 있는 조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므로, PCSD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구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아직도 환경에 국한한 지속가능발전에 머물러 있으므로 인해 포괄적인 방향에서의 국가 및 지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국가정책은 물론, 각종 개발부처와 환경부처들이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부처들의 통합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개별부처 내에서의 환경을 고려한 개발 또는 개발을 고려한 환경이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기와 6.25전쟁 그리고 서구문명의 도입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조직이 절충과 중용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이분론(dichotomy)적인 사고와 행동을 취해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과 환경·경제통합 회계 체계의 수립 항목들이 정비되어야 하며,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정부의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재원조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각 국의 재원은 자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상당량의 재원이 소요되는 바, 이를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겨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확충뿐 아니라 모든 경

제주체에 대해 환경보전을 유인하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재정지원에 공감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공급 특히, 해외 직접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ODA 지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선진국의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ODA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0.06%로 개발도상국 요구수준인 0.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내 여건상 ODA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말하며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이라는 3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WSSD에서는 재원 등 이행 수단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려면 이를 운용하는 주체인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행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국제적인 수준의 거버넌스 대하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의 역할 강화 등 유사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둘러싸고 선진국/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노정되었다. 국별 거버넌스는 재정지원에 대한 개도국의 수용역량문제(투명성, 효율성 등)를 다루고 있으면서 사법제도, 민주주의 등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면서 주권침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WSSD 준비과정에서의 성과는 정부간 합의 문서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메카니즘인 파트너십/이니셔티브(type 2)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니셔티브는 비공식 논의를 거쳐 이에 관한 성격규정과 가이드 라인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파트너십은 범 지구적으로 합의될 정치적 선언과 이행계획(type 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자발적이고 자주적(self-organizing)인 성격을 지니게 되며, 상호 신뢰에 기초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핵심적인 사항으로 분명한 활동주체와 목표, 책임성 그리고 국제적 활동범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에 의한 행정행위는 다원화되고 민주적인 사회의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국민·기업·정부간 자율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과 지원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개별 행위주체 모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며, 기업이 스스로 환경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자율환경 관리제도를 확산하고, 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민간환경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200개 이상의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함께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와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때에 책임 있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에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관련 국제협약, 선진국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전략 수립·추진이 필요하다. 환경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환경규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및 양자간 환경협력을 주도하여 산성비, 황사 등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장 이행계획관련 후속과제

1. 도입(Introduction; Para 1-5)

가.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5)

Peace, security, stabil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s well as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re essential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ing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benefits all.

평화, 안보, 안정, 개발 권리를 포함한 인권 및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2) 논의 배경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이나 생태적 개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최근 들어 사회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담보가 되는 것이 인권 및 기본자유이며, 전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윤리의 확립은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나라에서도 최우선 순위를 가지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3대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보장 중 그동안 사회분야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으나 이번 WSSD에서는 전지구적 입장에서 '사회보장'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3) 추진 방향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또는 환경적 공평성(environmental equity or fairness)의 개념은 환경적 위해성의 해로운 결과와 관계되어 있다. 특히 환경적 위해성과 관련된 편익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다루려는 시도이다. 환경정의 개념도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회현실과도 관련이 깊다.

환경적 공평성은 환경정의와 중복되나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원칙과 정의의 본성에 보다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자연자원은 다른 이용자의 필요는 물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평한 방식으로 할당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간 공평성 즉 저개발국가와 선진국가간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이 중요한 환경쟁점이 되고 있다. 내부 사회적 공평성(intra-societal equity)은 각종 환경오염 피해가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 유아, 빈곤층 등에 집중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생태계의 동태적인 성격은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현세대의 선택은 다음세대의 삶과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다. 현세대의 개발과 과학기술의 발달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핵심인자로서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신뢰성의 정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전환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권위주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법과 제도, 정책, 관행, 의식의 유산은 청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구조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적 개혁과 인권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데 가장 필수적인 과제이며, 그 과제를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인식과 목표, 우선순위가 부여된

장·단기 과제들과 그것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절차, 주체 등 종합적인 전망을 담은 국가행동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미흡으로 환경오염과 파괴의 피해는 생활수준이 낮은 빈곤층, 여성, 어린이 노인층 그리고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미래세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환경권의 보장으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환경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환경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명존엄의 대안적 문화, 윤리, 가치관을 조속히 확립하고 환경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피해책임보상제 등으로 환경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세대내 또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환경정의를 구현하고 환경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⁸⁾

8) 구도완. 2000. “환경윤리와 환경교육”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추진전략」

2. 빈곤퇴치(Poverty eradication; para 6-12)

가. 세계연대기금 설치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6.b)

Establish a world solidarity fund to eradicate poverty and to promote social and human developm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pursuant to modalities to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Assembly, while stressing the voluntary nature of the contributions, the need to avoid duplication of existing United Nations funds, and encouraging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nd individual citizens relative to Governments in funding the endeavours.

기부금의 자발적인 특성의 강조, 기존 UN 기금의 중복을 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력의 자금 지원에 있어 정부 관련 민간 분야 및 개별 국민의 역할을 장려하는 한편 총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개도국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인적 발전을 증진 하도록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설립한다.

2) 논의배경

빈곤퇴치의 중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모든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문 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빈국들의 빈곤경감과 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립이 제기되었다.

3) 추진방향

빈곤의 문제는 굶주림으로 인한 인간이 영양 결핍이나 기아뿐 만 아니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환경훼손에 의한 지구생태계파괴 등의 문제를 동반한다. 빈곤퇴치문제는 경제발전의 기본조건이면서 환경보전의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 사항이며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화가 빈곤국가의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빈곤국가만의 노력으로 빈곤퇴치 성과를 이루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선진국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연대기금의 설립은 절대빈곤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2000년 채택된 '밀레니엄 선언'도 세계연대기금 설치합의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WSSD에서 세계연대기금 설치가 이행계획으로 합의 채택됨으로서 ODA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증액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향적 태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세계연대기금에의 참여를 위한 재원조달과 개도국들에 대한 투자를 마련할 수 있는 관계부처의 방안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6.d)

Promote women's equal access to and full participation, on the basis of equality with men, in decision-making at all levels, mainstreaming gender perspectives in all policies and strategies, eliminating all forms of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mproving the status, health and economic welfare of women and girls through full and equal access to economic opportunity, land, credit, education and health-care services.

모든 정책 및 전략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및 차별을 제거하며, 경제적 기회, 토지, 신용,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지위, 건강 및 경제적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남성과의 평등을 근거로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 및 완전한 참여를 촉진한다.

2) 논의 배경

여성문제를 근대적 성장개념에 기초해 생산확대와 연관지어 바라보던 시각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 상당부분 극복됨에 따라 여성은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있어 중요한 주체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성과 환경문제를 주로 제3세계의 상황으로 보던 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으로의 전환, 유해물질로부터 여성의 보호 등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의 문제까지 다루는 등, 환경과 발전, 여성의 문제를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3) 추진 방향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는 기능을 가진 여성부를 2001년 1월 신설하였다. 앞으로 여성부는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에서 평가하고,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일정 비율이상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1998년 12.4%였던 여성위원 참여율이 2000년 말에는 23.6%로 상승하였고 특히 환경 관련 위원회에는 여성위원 참여율이 25%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역할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제고되어 왔다.

지속적 균형개발에 있어서 여성들의 관심과 경험을 적극 통합시키고, 정보 및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증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고정적인 성역할의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사노동의 사회화, 육아의 사회적 책임 확대, 노인부양부담의 사회화 등 제반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반적인 여성발전에 비해, '환경과 개발 분야에서의 여성(Women i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관심은 미진하며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수립, 집행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여타 부문에서의 여성참여와 같은 수준으로 제고하고, 환경오염이 여성의 재생산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여성의 재생산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인 사회관습과 시민의식 증진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공적부문에서 여성의 주도적 역할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6.i)

Build basic rural infrastructure, diversify the economy and improve transportation and access to markets, market information and credit for the rural poor to support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지원하도록 농촌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를 다양화하며, 운송 및 농촌 빈곤층을 위한 시장, 시장정보 및 신용에의 접근을 개선한다.

2) 논의 배경

농촌빈곤의 탈피수단으로 제기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의 발전(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SARD)을 위하여 토지이용, 벌채, 사막과, 용수 및 관계시설, 생물다양성, 생명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의 전환을 모색 중에 있으며, 도시빈곤 역시 심각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문제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빈곤한 농촌에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추진 방향

현재 한국의 농업은 내·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그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정부의 대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도 역시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문제의 통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성 있는 장기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의 추진을 위한 중·단기 전략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규모의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이어야 할 것이다.

WTO라는 경쟁체제와 환경보전과의 조화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지정리·용수개발·관개개선·개간·간척 등을 위한 노력과 환경보전사이의 사회적 조화가 필요하며,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한 유기농의 확대와 이에 따른 고품질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정된 자원과 토지의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환경친화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업과 축산업의 적정 분산(Portfolio)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정보인프라(초고속정보통신망, 농업위성방송 등) 확충으로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로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순위를 정한 후 시급성이 요구되는 기술개발(청정기술 및 오염복원 기술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학·관·연의 합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나 농업생명공학기술, 선진농업기술 및 현장경험지식을 농업부문에 접목한 지식농업 시스템 구축 및 실용화를 촉진해야 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원격탐사기술을 통한 농업환경 관측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라.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품 안전성 제고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6.j, 38)

Transfer basic sustainable agricultural techniques and knowledge, including natural resource management, to small and medium-scale farmers, fishers and the rural poor,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multi-stakeholder approache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imed at increasing agriculture production and food security.

개도국의 중·소규모 농부, 어부 및 농촌 빈곤층에 농업 생산 및 식품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중 이해관계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es) 및 공공-민간 협력을 통하여 자연자원 관리를 포함한 기초 지속가능 농업 기술 및 지식을 전수한다.

2) 논의 배경

농업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의제 21의 제2부 14장(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ARD)에는 지속가능농업의 개념과 부문별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농업의 환경파괴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농업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 농업의 유지를 위한 행동 지침 제시하고 있다. 농업생산에 관한 지속가능성은 생산양식의 기반인 생물적, 생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간, 범위, 차원 등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적인 지속가능농업의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도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으며, 대체로 저투입농업과 유기농업을 포괄하고 있다.

세계의 농업과 농촌의 현황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농촌의 토양과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저하에 의한 인력유출로 동공화 현상이 발생해 영세한 가족농체제의 농업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으로는 대규모 기업농체제인 농산물 수출국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3) 추진 방향

환경농업 실천농가(eco-farmer)에게 수매사업 등 지원사업의 우선권 부여와 같이 경제적 및 규제적 수단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최적관리기법을 기초로 한 작물양분·병해충 종합관리(IPNM) 등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을 정착시키고 화학적 투입재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비료보조금 감축과 오염자부담원칙을 도입하여 비료·농약 등에 환경세(eco-taxes) 부과를 검토해야 하며, 국토전체의

환경오염 수인한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작물생산 및 가축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 식품안전과 질에 대해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식품기준과의 조화를 담보하고 생산과정 및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농산물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환경농산물의 표시신고제의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안전성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생산·출하단계부터 농약잔류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에 출하연기·폐기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기술 및 정밀농업 육성을 위한 전략형 농기계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완효성 비료·환경친화형 비료, 저독성 미생물농약·친환경 신농약 등 환경친화적 자재산업의 육성과 공급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지역사회 기반협력 증진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6.k)

Increase food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including through harvest and food technology and management, as well as equitable and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s, by promoting, for example, community-based partnerships linking urban and rural people and enterprises.

도시와 지방 인구 및 기업들간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수확 및 식품 기술과 관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 체계를 통해 식품 유용성 및 공급을 증가시킨다.

2) 논의 배경

본격적인 민주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간의 동반자적 공생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환경보전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업과 지역사회 각 주체들의 협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3) 추진 방향

지역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각 주체, 즉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 집단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환경감사 등을 통하여 환경상태 및 환경관리 실태, 성과, 비용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확보된 정보는 공개하여 산업부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환경과 경제의 상호연관성을 폭넓게 인식하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기업과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생산활동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요 오염원인 산업단지의 관리를 포함한 지역오염관리를 위해 기존의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지역기준을 설정하고,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성과 제고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주민과 정부의 환경개선 요구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기업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환경관리 효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바. 안전한 식수 및 공중위생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7, 24)

7. The provision of clean drinking water and adequate sanit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this respect, we agree to halve, by the year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unable to reach or to afford safe drinking water (as outlined in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do not have access to basic sanitation, which would include actions at all levels.

24. Launch a programme of actions, with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 on safe drinking water. In this respect, we agree to halve, by the year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unable to reach or to afford safe drinking water as outlined in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access to basic sanitation, which would include actions at all levels.

7. 청정 식수 및 적절한 공중위생의 제공은 인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바에 따라) 안전식수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인구 비율 및 기초 공중위생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2015년까지 반감하는데 합의하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24. 안전 식수에 대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한 행동계획을 착수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바에 따라 안전 식수에 도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는 인구 비율 및 기초 공중위생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2015년까지 반감하는데 합의하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활동을 포함한다.

2) 논의 배경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청정수의 공급량과 수질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인류의 삶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세계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구의 한정된 청정수 공급능력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20%가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수치는 2025년경에는 전세계 50개국, 세계 인구의 3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추진 방향

물부족 문제는 급성장을 하고 있는 해안지대와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에서 특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상당수 도시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거나 머지않아 마실 물은 물론 적절한 위생용수의 공급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식수공급 및 환경위생은 환경보호, 건강증진 및 기근 경작을 위해 필수적이며 또한 안전한 식수는 많은 전통적, 문화적 활동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수자원과 액체 및 고형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 및 건강보호가 요구되어지며, 종합적 접근방식을 촉진시키고 절차, 태도, 행동의 변혁과 제도적 혁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책에 의해 지원되는 물과 위생계획의 시행 및 유지 서비스의 지역사회관리가 향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기구의 개선된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실한 재정적 형태 또는 적절한 기술의 폭넓은 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한 식수는 수량, 수질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접근해야 하는 종합적인 연구과제이다.

사. 도시빈민촌에 대한 대책방안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10)

By 2020, achiev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lives of at least 100 million slum dwellers, as proposed in the Cities without slums initiative.

2020년까지 "빈민가 없는 도시(Cities Without Slums)"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바에 따라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들의 생활의 현저한 개선을 달성한다.

2) 논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영세민 주택건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민가 형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등장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초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허가 정착촌으로 시작된 도시빈민촌은 이후 정부가 핵심적 정책과제로서 접근한 결과 현재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경관적 차원에서 접근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며 근본적인 도시빈민에 대한 지원과 해결에의 접근에 미흡한 실정이다.

3) 추진 방향

농촌인구의 대거 도시유입현상으로 형성되었던 도시 내 판자촌은 이농향도민들의 흡수처이자 정착지가 되었다. 국가차원의 경제성장정책의 그늘에 가려진 도시빈민촌을 1960년대에 들어 무허가 불량촌에 대해 강제철거와 외곽지 이동이라는 미관차원의 물리적 개선책을 택하였으나 이러한 대책은 도시빈민들의 생활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됨으로서 도시빈민문제는 그대로인 상태로 불량촌의 장소적 이전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80년대에 주택공급촉진이라는 명목아래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불량주택지구가 물리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방식 역시 도시빈민의 생활양식과 주거비에 대한 생계비지출한도를 외면한 아파트 주거양식의 도입으로 대부분이 도시빈민인 원주민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가는 결과를 가져와 불량촌의 이전밖에 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도시빈민촌에 대한 대책은 물리적인 측면에 그쳐왔다. 즉,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었으나 향후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직접적 지원과 더불어 보건, 취업 지원 등의 다른 정책과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취약계층의 자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화 추세로 인해 공공자본의 투입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 하에서 공공주도의 도시빈민촌 주거환경개선의 방식으로부터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거시적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요구된다.

3.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 Para13-22)

가. 주요 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분석(Life-Cycle Analysis) 방안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14.a,c)

(a) Identify specific activities, tools, policies, measures and monitoring and assessment mechanism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life-cycle analysis and national indicators for measuring progress, bearing in mind that standards applied by some countries may be inappropriate and of unwarranted economic and social cost to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b) Adopt and implement policies and measures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patter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pplying, inter alia, the polluter-pays principle described in principle 16 of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 Develop production and consumption policies to improve the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s, using, where appropriate, science-based approaches, such as life-cycle analysis.

(a) 몇몇 국가들에 적용된 기준이 부적절하고 기타 국가들, 특히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에 부당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생애주기분석 및 진전상황 측정 국가 척도를 포함한 개별적인 활동, 수단, 정책과 감독 및 평가 체계를 규정한다.

(b)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선언 제 16조에 명시된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증진하도록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한다.

(c) 환경 및 건강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경우 생애주기분석과 같은 과학 기반의 접근법을 이용하면서, 제공된 생산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생산 및 소비 정책을 개발한다.

2) 논의 배경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제품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 도입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술 또는 제품의 수명주기를 분석하는 생애주기분석을 실질적 방법론으로 삼는 방안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추진 방향

제품의 전과정에서의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종이가 재생용지인지 천연펄프로부터 왔는지, 만약 천연 펄프이면 그 목재를 생산한 곳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지에 대한 생애주기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광고계에 정직성과 공평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생애주기분석이 강조될 수 있다. 즉 제품의 원료로부터 운반, 생산, 소비,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품에 사용된 소재의 양과 유형변화, 보다 효율적인 제조공정의 개발, 사용 중 소모되는 에너지와 재료의 양 절감,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에너지와 물질 회수의 개선 등을 고려하는 생애주기분석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전환에 실질적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기술 또는 제품의 수명주기를 분석하여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의 실질적 방법론으로 삼는 일이다. 물론 구체적 기술이나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세부원칙과 평가양식이 구상되어야 하나, 우선 기업이 주도하여 일단 자사의 핵심기술과 주요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어떤 기술을 적용합

으로써 절감되는 환경부하의 양과 추가되는 환경부하의 양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도 활용할 만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생애주기분석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생애주기분석의 완결된 틀을 구축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기초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향후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생애주기분석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방안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에코라벨링 도입방안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14.e)

Develop and adopt, where appropriate, on a voluntary basis, effective, transparent, verifiable, non-misleading and non-discriminatory consumer information tools to provide information relating to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including human health and safety aspects. These tools should not be used as disguised trade barriers.

인류 건강 및 안전 측면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증명가능하고, 적절하며, 비차별적인 소비자 정보 수단을 자발적 근거에서 적절한 경우 개발하고 채택한다. 이러한 수단이 무역 장벽의 위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논의 배경

최근,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은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소비자의

의식향상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각 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에코라벨제도」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는 상품에만 그 인증으로서 특정한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에 대해서 환경에 좋은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환경부하가 적은 상품의 개발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추진 과제

WSSD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단을 자발적으로 활용토록 하되, WTO에서 협상이 진행중이고 성격 규정이 어려운 에코라벨링(eco-labelling)에 관한 언급은 삭제되었다. 에코라벨링 관련, 77그룹. 호주, 뉴질랜드는 자발적인 성격을 EU, 스위스, 일본은 자발적인 성격 외에 강제적인 측면을 주장하였다.

제3자 인증에 의한 에코라벨제도는 1978년에 독일에서 도입된 이래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북극 4개국(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프랑스, EU(유럽연합), 한국, 인도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각각 독자적인 에코라벨을 디자인하여 인증상품에 부착하고 있다. 특히 환경의식이 진보된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강화하여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및 생산활동을 유도하여 환경마크제도의 부여기준 및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제품주기에 걸친 환경영향 관련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라벨이 된 상품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충분한 환경성을 전과정을 통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사용가능하고 객관적이면 정확한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품을 환경기준에 맞추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에코라벨링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애주기분석에 근거해 제품을 분류하고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는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나 ISTM(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Testing of Materials)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실제 상품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인증하고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독립적이어야 하고 이는 산업계나 정부가 아닌 제 3섹터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규격인 ISO 14000 시리즈의 도입을 지원하고 산업계와의 대화 및 세미나 등을 정례화하여 국제환경이슈 관련 자료 및 정보 전달을 활성화하며 정책수립 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성을 가져야한다. 모든 주요한 이해관계자(산업계, 소비자 그리고 환경 그룹들, 정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인증과 평가의 과정은 공개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다.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 증진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14.f)

Increase eco-efficiency, with financial support from all sources, where mutually agreed, for capacity-building, technology transfer and exchange of technology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 기구와 협력 하에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와 능력배양, 기술이전 및 기술교환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재정지원으로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을 증진한다.

2) 논의 배경

전 세계적인 소비와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산업국가들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패턴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천연자원을 고갈 추세에 있으며, 세계화가 이러한 양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비와 생산을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3) 추진 방향

우리사회의 생산 체계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개편해 적은 환경요소의 투입으로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생태효율(Eco- efficiency)이 높은 사회경제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전 세계적으로 과잉요소로 변화될 전망이다. 반면 자연은 갈수록 희소한 재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노동의 가격을 낮추고 환경과 자원의 가격을 높이는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은 조세에 따른 경제전반에 걸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쾌적한 환경수준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하여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에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규제 형태의 환경규제나, 경제적 규제를 확대하여 환경개선효과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최소화계획원리(Least Cost Planning: LCP)에 의거한 수요관리를 확대한다. 비용최소화계획원리는 예상되는 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공급시설의 개발보다 더욱 저렴한 전략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만 새로운 공급시설의 개발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약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공급시설 확충보다 훨씬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때문에 이럴 때는 에너지 공급주체가 최종 소비자인 가정이나 기업에게 자원을 절약하도록 후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청정생산에 대한 투자 증진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15)

Increase investment in cleaner production and eco-efficiency in all countries through, inter alia, incentives and support schemes and policies directed at establishing appropriate regulatory,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모든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통하여 청정 생산 및 생태적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 적절한 규제, 재정 및 법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을 지원한다.

2) 논의 배경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산, 기술 및 경영은 재이용되지 않는 잔유물을 생성하고, 인류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배출하며, 사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을 제조하며, 따라서 모든 제품수명주기에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 공법 및 경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청정생산의 개념은 제품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최적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귀결된다.

3) 추진 방향

초국가적 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잔유물의 재이용 및 재활용을 포함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 산출당 폐기물 발생량은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초국가적 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와 협의하여 청정생산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수단과 법률, 입법, 표준 등의 규범적 조치를 적절히 혼합하여 병행 실시 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고려하고 자발적인 민간주도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초국가적 기업을 포함한 상공계, 학계, 국제기구는 환경비용을 회계 및 가격 메커니즘에 내부화시키기 위한 개념 및 방법론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청정생산의 개념정의, 평가, 연구개발, 경영, 마케팅, 적용을 포괄하는 기술 및 노하우의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산업계는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조업활동 및 투자에 있어서 청정생산정책을 구체화하고, 상공단체(industry and business associations)는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조업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해야 한다. 상공단체는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영관행에 입각하여 환경성과를 개선시키는 작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환경의식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독려해야 한다.

교역, 과학단체를 포함하는 국제 및 비정부 민간조직은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 청정생산정보교환소(International Cleaner Production Clearing House: ICPIIC), UNIDO 산업기술정보은행(INTIB), ICC/IEB 등 기존데이터베이스의 확대를 통한 청정생산정보의 보급을 강화하고 국가 및 국제정보체계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8, 19.e)

8. Take joint actions and improve efforts to work together at all levels to improve access to reliable and affordable energy servi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fficient to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goal of halving the proportion of people in poverty by 2015, and as a means to generate other important services that mitigate poverty, bearing in mind that access to energy facilitates the eradication of poverty.

19.e. Diversify energy supply by developing advanced, cleaner, more efficient, affordable and cost-effective energy technologies, including fossil fuel technologies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hydro included, and their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on concessional terms as mutually agreed. With a sense of urgency, substantially increase the global shar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with the objective of increasing its contribution to total energy supply, recognizing the role of national and voluntary regional targets as well as initiatives, where they exist, and ensuring that energy policies are supportive to developing countries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and regularly evaluate available data to review progress to this end.

8.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빈곤퇴치를 촉진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빈곤을 완화하는 중요 서비스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2015년까지 빈곤 인구 비율의 반감 목표를 포함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는데 충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공동 조치를 취하고 모든

수준에서 협력 노력을 향상시킨다.

19.e. 화석 연료 기술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 수력을 포함한 선진적이고, 청정하며, 더욱 효율적이고, 입수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상호 합의된 양허 조건에 따라 개도국으로 이전한다. 긴급한 경우, 국가 및 자발적 지역 목표뿐만 아니라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인식하고 에너지 정책이 개도국의 빈곤퇴치 노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장하면서, 총 에너지량에 대한 기여 증가 목표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세계적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목적에서 진전상황을 검토하도록 유효 자료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2) 논의 배경

태양열, 태양광, 연료 전지, 폐기물 이용 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1980년대 이후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에너지의 0.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폐열 부문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06년까지 2%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는 2000년에 3% 공급을 목표로 제시한 적도 있다.

2) 추진 과제

현재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재원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 과학기술부 출연자금, 한전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 재원은 나름대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출연금은 선도기술개발사업에만 투자되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한전자금은 자체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며 전력의 생산 및 공급자로서 한전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만 투자한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중·장기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에너지 이용 기기를 개발해야 하며 시장에 도입되지 않는 기기의 개발은 불가능하므로 기술개발 외에 시장창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금융정책 위주의 사용자 설치 지원 외에 공급자의 기술개발 지원과 사용자의 생산물(전력, 열 등) 판매보장 지원책 등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주관의 시범보급,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형태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므로 가격 경쟁력의 보완을 위한 기술 적 대안마련과 조속한 시행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화석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과세 조정 및 탄소 세 또는 에너지세의 도입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에너지 보조금 철폐와 과세의 재구성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19.p)

Policies to reduce market distortions would promote energy systems compatibl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use of improved market signals and by removing market distortions, including restructuring taxation and phasing out harmful subsidies, where they exist, to reflect their environmental impacts, with such policies taking fully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and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aim of minimizing the possible adverse impacts on their development.

시장 왜곡을 축소하는 정책은 발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개도국의 개별적 필요성 및 조건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여 개선

된 시장 신호(market signals)의 이용을 통해 과세의 재구성 및 유해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같은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증진할 수 있다.

2) 논의 배경

환경문제의 해결을 경제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노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관련하여 시장 왜곡적인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고 환경친화적 세계로의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3) 추진 방향

향후 대기오염이라는 환경비용을 내부화 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에너지에 대한 세율조정 등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연료세 형태인 환경세를 도입하면 대기오염 개선효과 측면에서 휘발유, LPG, 경유 등 화석연료 가격의 전반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증대되는 세수입은 대기오염저감설비 보급에 대한 지원, 법인세 감면, 자동차 보유세, 예컨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주행세 도입 등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환경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여 환경관련 재원의 조달이나 교통세의 역할을 담당시켜야 한다. 탄소세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제품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우리의 탄소세 도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도입시 가능하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탄소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탄소세의 부과대상품목은 가능하면 국내환경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제품부터 국제

경쟁력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부터, 그리고 가격탄력도가 높은 제품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세의 도입방식은 제1차 에너지제품의 사용 혹은 수입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이 그러나 에너지 제품을 원료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2차적 제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비용 절약적이다.⁹⁾

환경에 위대한 보조금을 감축함과 동시에 조세중립(tax revenue neutrality) 원칙하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경제 왜곡적인 조세의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용에 동 세수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꾀하거나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조금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환경에 위대한 보조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감축을 위한 적절한 전략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사. 폐기물관리체계 개선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21)

Prevent and minimize waste and maximize reuse, recycling and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lternative materials, with th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authorities and all stakeholders, in order to minimize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and improve resource efficiency, with financial, technical and other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및 기타 지원으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폐기물을 방지 및 최소화하고, 재사용·재활용 및 환경 친화적 대체 원료의 이용을 극

9) 강만옥. 2001.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구축방안”. 「중장기 환경정책과제」

대화한다.

2) 논의 배경

폐기물 처리정책의 요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의 자원 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폐기물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은 비슷하다. 초기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개념 (Cleaning)에서 시작하여 재활용 (Recycle)문제로 정책중심이 이동하였으며, 최근에는 폐기물 최소화 (Waste Minimization) 개념이 폐기물관리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3) 추진 방향

폐기물 최소화란 폐기물발생억제(Prevention), 감량(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 (Recycle), 에너지 회수 (Energy Recover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폐기물 부담금제도 등을,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포장방법, 포장재질 규제와 아울러 포장 폐기물 감량대책을,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대책, 일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폐기물 최소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자원화란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제도를 확립하고 적절한 역할 및 책임부담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 재활용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재활용 시스템이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예치금제도이다. 폐기물관리처분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에서 보관, 운반, 처분 기준, 처리기준 등을 설정하여 폐기물이 환경에 안전하게 관리처분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분야이다.¹⁰⁾

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22)

Renew the commitment, as advanced in Agenda 21, to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throughout their life cycle and of hazardous wast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ter alia, aiming to achieve by 2020 that chemicals are used and produced in ways that lead to the minimization of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using transparent science-based risk assessment procedures and science-based risk management procedures, taking into account the precautionary approach, as set out in principle 15 of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strengthening their capacity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and hazardous wastes by providing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선언 제 15조에 명시된 사전예방 접근법을 고려하면서 투명한 과학기반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과학기반 위험성 관리 절차를 이용하여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초래하는 방식의 화학제품 이용 및 생산을 2020년까지 달성하도록 아젠다 21에서 진전된 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산주기를 통한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책임을 갱신한다. 또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개도국을 지원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10) 배재근. 1999. “폐기물 관리정책 연구”

2) 논의 배경

산업발전과 함께 화학물질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와 양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2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3) 추진 방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우리주변 생활환경의 보전뿐 만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어 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며, 나아가 유해화학물질의 범람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대 및 강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일치,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위험성 감소계획 수립,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 및 시설강화, 위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국제거래방지 등의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해성 평가는 자원집약적인 작업이다. 그러한 평가작업은 국제적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비용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는 위해성 평가의 2가지 중요한 요소인 위해성 심사와 노출분석에 경험을 갖고 있는 다수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안이 종종 있다. 따라서, 위험성 감소는 때때로 다른 화학물질 또는 심지어 비화학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위해성 감소의 고전적인 예는 유해한 물질을 무해하거나 또는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다. 오염방지절차의 설치 및 음식과 물 등 각 환경매체와 소비재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설정은 위해성 감소의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위험성 감소는 화학물질의 전체생산과정을 고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포함한다. 그러한 접근방법은

보다 깨끗한 제품 및 기술사용의 촉진, 오염방지 절차 및 프로그램, 배출목록, 제품구분, 사용제한, 경제적 유인, 안전취급절차와 노출규정, 인류건강과 환경에 불합리하거나 달리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유해하고 잔존하며 생물학적으로 누적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사용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제거 또는 금지하는 등 규제적이고 비규제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

자.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방안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22.c)

Encourage countries to implement the new 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the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having the system fully operational by 2008.

2008년까지 시스템을 완전하게 운영하여 되도록 빠른 시기 화학제품의 분류 및 라벨링을 위한 국제적으로 조화된 분류표시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을 이행하도록 국가들을 촉진한다.

2) 논의 배경

국내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및 농약관리법에 의거 각각 건강 및 환경유해성, 작업자 안전성, 물리화학적 성질, 맹독성 농약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 및 EU의 물리화학적 성질, 건강유해성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분류개념과 일치됨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각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협약

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통일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3) 추진 방향

국내의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제도를 조사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일치된 분류와 조화된 구분체계를 정립하고 노동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제화에 따른 국내화학물질의 표시 통일안을 각 개별법에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 작업자 및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한 화학물질의 적절한 표시(labeling) 및 ICSC(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국제 화학안전카드) 등과 같은 안전관련 자료와 그와 유사한 서면자료와 보급은 화학물질을 안전한 취급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등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위험한 제품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유엔 조직 내에서 제정한 포괄적인 계획이 현재 이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은 주로 화학물질의 심각한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위험분류 및 구분체계는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특히 작업장 또는 가정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이용할 정도는 아니다. 화학물질의 분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작성될 수 있으며 특히 구분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일치된 위험분류 및 구분체계와 진행작업을 위한 기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차. 공해상의 해양 폐기물에 대한 동북아 협력방안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22.e)

Promote efforts to prevent international illegal trafficking of hazardous chemicals and hazardous wastes and to prevent damage resulting from the transboundary mov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wast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obligations und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유해 폐기물 및 처리의 국경간 이동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과 같은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여 유해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 거래를 방지하고,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및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2) 논의 배경

동북아시아의 환경오염문제는 각 국가 간의 입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염물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활발한 협력체제의 구축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오염배출국가로서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피해국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피해국이자 일본에 대한 잠재적인 가해국으로서의 입장에 놓일 수 있어 한일 간의 입장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이익과 연계한 ODA등의 지원강화를 통하여 환경협력을 추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한 환경관련산업진출을 폭넓게 조성하면서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주도권 행사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¹¹⁾

3) 추진 방향

동북아 환경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 국가 간의 쌍무적 협조체제의 구축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차원의 다자간 동북아환경협력을 보완하는 기본구도로 나아가면서 월경대기오염물질 감축실행계획의 수립, 해양환경협력협정의 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하고,¹²⁾ 경제적 기술적 유인을 통한 중국참여의 활성화, 한일양자간의 공동 관심사항의 제고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일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한 효율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1단계로 역내환경문제에 대한 상설연구가 가능한 가칭 동북아환경센터의 설립, 2단계로 폭넓은 협력기반의 조성 위에 동북아환경협력실무 작업반의 구성, 3단계로 동북아환경협력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효율적 이행의 도모 등이 제안되고 있다.¹³⁾

그러나 국가 간 환경협약이나 정부차원에 의한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에 의한 접근방식은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나 국가 간 주권의 문제와 정부차원의 협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실질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며 협약의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것이 되는 경우도 드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정부차원의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은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다자간 환경협약과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이해 당사국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같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연대를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11) 민병승. 1996.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12) 한택환. 1993. "한중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13) 민병승. 1996.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4.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ara23-44)

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통합관리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23)

Human activities are having an increasing impact on the integrity of ecosystems that provide essential resources and services for human well-being and economic activities.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s base in a sustainable and integrated manner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gard, to reverse the current trend in natural resource degradation as soon a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trategies which should include targets adopted at the national and, where appropriate, regional levels to protect ecosystems and to achieve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water and living resources, while strengthening regional, national and local capacities.

인간 활동은 인간 복리 및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안전성(integrity of ecosystem)에 대하여 증대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자연 자원 기반을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연자원 악화의 현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국가 및 지방 능력을 강화하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 수자원 및 생물자원의 통합된 관리를 달성하도록 국가 및 적절한 경우 지역 수준에서 채택된 목표를 포함하는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논의 배경

그동안 자연자원의 관리는 분야별로 관리주체나 담당부처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다. 특히 토지, 수자원, 생물자원의 통합관리는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효율성에 근거한 성장위주의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의 기반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낸 성장은 자연 자원에 대한 부하의 집중을 초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훼손이 전국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연자원을 지속가능 하도록 이용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자연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추진 방향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관리는 전 국토에 대해서 자연자원의 양과 질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자연자원조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지도 등을 작성하고 모든 자원의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자연자원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축된 자연자원정보망은 자원이용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각종 자연자원이용계획수립에 근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자원은 토지, 수자원 및 생물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산림자원은 수자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해양자원은 생물종다양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각 자원들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통합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시정하고 자연자원의 포괄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각

자원별 관리와 함께 이를 국가 혹은 지역 단위에서 모든 자연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고 분리되어 있는 자연자원 관리 부처들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과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연자원 관리의 통합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로 구축되고 상호 연계가 가능한 방향으로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나. 수자원통합관리체제 구축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25)

Develop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water efficiency plans by 2005, with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actions.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으로 2005년까지 통합된 수자원 관리 및 수자원 효율방안을 개발한다.

2)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3배에 이르고 있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수자원의 신규공급 확대나 획기적인 물 수요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6년부터 물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추진 방향

생활용수 업무가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분리되어 있고 용수확보 및 관리업무가 부

차별로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 협조체제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물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의 부재나 과거 관습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물사용 주체간 업무협약이 수월치 못하거나 수요자간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관련 기존자료가 부족하고 그나마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원천적으로 수자원 관련문제 해결에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각종 수자원 지표 및 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와 NGO간, 기업과 시민 또는 정부간 불신이 매우 큰 상태이다.

모든 사회, 경제적 활동이 담수의 공급과 그 질에 크게 의존하지만 수자원 개발이 경제의 생산성과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보통 크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 인구와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급속히 물 부족상태에 도달하거나 경제개발이 제한된다.

물 수요는 관개용으로 70-80%, 공업용으로 20% 미만, 생활용수로 6%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사회정책의 기본 계획 내에서 유한하고 취약한 자원인 담수의 종합적(holistic)관리와 지역적 수자원 계획의 완성은 1990년대와 이후의 조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 지역, 기관간에 수자원 개발에 대한 책임이 나누어져 있으며 이것은 통합적인 물관리의 진척에 예상보다 더 큰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수행과 연계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국가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담수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통합 수자원 관리는 물을 생태계의 절대 필요한 부분, 양과 질의 이용특성을 결정하는 천연자원 및 사회경제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활동에 필요한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생태계의 기능과 자원의 지속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그 우선권이 생태계의 보호와 이에 꼭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어져야 하며 이 수요를 초과하면 물 사용자에게 적절한 부담을 지워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와 물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 수자원 관리는 유역 또는 소유역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수자원 공유지역의 경우, 공유국가는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계획을 마련하고 정책과 수행계획이 조화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26)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their efforts to monitor and asses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water resources,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or further development of national monitoring networks and water resources databases and the development of relevant national indicators.

국가 감시 네트워크 및 수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또는 추가 개발 및 관련 국가 척도의 개발을 통하여 수자원의 수량 및 품질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노력에 있어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을 지원한다.

2) 논의 배경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물부족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2011년에는 18억^m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손실과 혼란 우려된다. 환경악화와 지구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유역차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수자원네트워크 및 이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주목받고 있다.

3) 추진 방향

개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최종목표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수자원 배분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모든 개별 과제는 수자원 배분과 통합관리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수자원 배분과 통합관리 시스템은 지표수, 지하

수, 대체수자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요과 공급 그리고 수량과 수질 측면에서 계획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통합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수자원네트워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실용화를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기반기술로는 수문 계측기술, 물수요 예측기술, 순환시스템 해석기술, 지하수 모니터링기술, 적정 개발량 평가기술, 오염방지 및 저감 요소기술, 물 재이용 및 처리 기술, 절수 기술, 무인 우수처리기술, 저에너지 담수화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기술들은 수자원 배분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서 실용화를 전제로 하여 관련 기반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산학연의 협동 연구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각종 수문특성 계측자료의 효율적 획득과 자료의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공급을 바탕으로 모든 기반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해야 한다. 수요관리를 고려한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적정 목표수요 관리의 기반을 구축하여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물공급의 적정 신뢰도를 평가하여 계획 공급신뢰도를 설정하고 가용 수자원을 최적 운영하여 장래 필요한 적정 신규 수자원확보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과 사회, 경제, 환경면에서 최적 배분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용수공급의 우선순위 결정, 용수공급 제한량 할당, 하천오염시 용수 공급 대책, 수자원장기계획 해석 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장·단기 기상예보활용기술은 평상시와 비상시 실시간 지표수, 지하수 및 대체수자원 (하수 재이용, 우수 등)을 통합관리 운영함에 있어 가용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라.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연구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29)

Oceans, seas, islands and coastal areas form an integrated and essential component of the Earth's ecosystem and are critical for global food security and for sustaining economic prosperity and the well-being of many national economies,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Ensur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s requires effectiv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cluding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between relevant bodies, and actions.

대양, 해양, 도서지역 및 연안지역은 지구 생태계의 통합된 필수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적 식품안전 및 특히 개도국의 다수 국가 경제에 있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 및 복리에 결정적이다.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및 지역 수준에서 관련 기관과 조치들간 효과적인 조정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2) 논의 배경

연안역은 산지와 하천, 바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하구언 건설, 무분별한 간척매립사업의 확대와 선점식 난개발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시화호 오염이나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보듯이 연안역의 자연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간척매립과 담수호 조성사업, 주변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연안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3) 추진 방향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시정하고 연안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안통합관리계획(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 ICZM)의 수립추진이 필요하

다. 연안의 자연특성과 지역개발수요,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고, 하천구역과 같이 수변역 관리제를 도입하여 해안선 일정구간 이내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도입과 고도제한 등 다양한 동식물 서식해안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갯벌생태계를 훼손하는 대규모 간척, 김 양식업 등은 가급적 사양하고 갯벌에서의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는 친환경적 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안이란 해역과 배후 육지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개발의 중심지역일 뿐 아니라 해양개발의 거점 지역이며, 환경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산업입지 개발, 도시개발 및 매립 등을 선점식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지난 1999년 2월 정기국회에서 연안관리법을 제정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해 연안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연안환경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고갈 어족자원의 회복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0.a)

Maintain or restore stocks to levels that can produce the maximum sustainable yield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se goals for depleted stocks on an urgent basis and where possible not later than 2015.

가능하다면 2015년 이전까지 고갈 어족(depleted stocks)에 대하여 최대의 지속가능한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어족을 유지하고 혹은 재건한다.

2) 논의 배경

해면어업은 매년 80-90백만 톤의 어패류를 생산하는데 그중 95%는 국가관할권에 속하는 수면에서 생산되고 있다. 어획량은 지난 40년 간 거의 4배로 증가되었다.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기타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UN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은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동자원의 이용은 지역사회 및 현지 주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동 자원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식료와 생계수단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되기만 하면,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영양과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 추진 방향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물자원의 자원량, 특히 저이용 및 미이용되고 있는 자원량과 어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도중 폐기를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개량된 처리가공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훈련하여야 한다. 또한 어종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어종관리 및 여타 접근방법도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많은 수역의 수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부 해면의 남획,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생태계 악화, 과잉투자 및 과도한 어선 세력, 어획물의 가격하락, 어구의 선택 어획성의 불완전,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 그리고 영세 어업과 대형어업간 그리고 어로와 다른 어업과의 경쟁격화 등이 있다.

문제는 수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산호초, 늪지 및 하구와 같은 수면 서식지는 지구 생태계에서는 가장 다양하고 밀집되고, 생산성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지역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안을 보호하고 식료, 에너지, 관광 및 경제개발에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양 및 연안이 인간 및 자연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압박 또는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바. 공해상의 어족자원 배분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0.e)

Encourage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ights, duties and interests of coastal States and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when addressing the issue of the allocation of share of fishery resources for straddling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mindful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and within exclusive economic zones.

공해 및 배타경제수역(EEZs) 내에서 해양법에 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조항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 및 운영 관련 1982년 12월 10일의 해양법에 대한 UN 협약 조항의 이행 합의를 주지하면서, 경계

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분배 할당 이슈를 다룸에 있어 연안 국가의 권리, 의무 및 이익과 개도국의 특별한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관련 지역 어업 운영기구 및 협정을 장려한다.

2) 논의 배경

여러 요인에 의해 연안국 관할권확장의 추세는 가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영해 인접수역의 해양자원이 공해자유의 원칙을 내세우는 선진해양국에 의해 선개발 탈취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이러한 자원을 국가적 경제자립에 활용할 수 있는 천부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이들 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해의 범위를 넘는 공해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한이나 그 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의 개념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국제법의 원칙과 쉽사리 조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새롭게 대두한 해양관할권의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법적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¹⁴⁾

3) 추진 방향

지난 십여년 간 공해어업이 크게 발전하여 최근에는 세계 총 어획량의 약5%를 점유하고 있다. 공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해양법협약은 이러한 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보전조치의 채택, 감시 및 강화를 포함하고 공해어업의 관리는 많은 지역에서는 불충분하며 그 결과 일부 자원은 남획되고 있다. 주요한 문제점들을 보면, 어획에 대한 규제부재, 과잉투자, 과도한 어선세력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의 국적, 불충분한 어구의 선택, 신뢰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14)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와 한국의 해양주권”

<http://hanara.kmaritime.ac.kr/%7Ekimrokn/papers/papers/rep6.html>

특히 고도회유성 어종과 경계왕래 어종에 대하여는 공해에서 자국민 또는 자국어선이 조업하는 국가의 노력, 그리고 쌍무적,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한 노력과 협력은 어로관행에서 그리고 생물학적 지식, 어획통계 및 자료처리체계의 개선문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제반 부적정성을 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남획 어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어종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다어종 관리 접근법에 그리고 또한 저이용 혹은 미 이용자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 어업보조금 폐지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0.f)

Eliminate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to over-capacity, while completing the efforts undertaken at WTO to clarify and improve its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어업 보조금에 대한 원칙을 명백하게 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WTO가 착수한 노력을 완수하면서, 개도국에 있어서 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하여 불법조업어선의 어업 및 과잉 어로(over-capacity)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을 폐지한다.

2) 논의 배경

WTO 체제 출범이후 진행되어온 무역장벽철폐의 움직임 중 어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것이 무역 왜곡적인 어업보조금의 철폐이며 WSSD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드러내었다. 어업보조금 철폐는 우리나라의 어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3) 추진 방향

수산물은 재생가능한 유한 천연자원이나 세계 수산자원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어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 무역자유화와 관련,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을 위한 협상은 수산물 수입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반면, 관세인하에 따른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도 예상된다. 어업보조금은 무역왜곡 측면에 의해 감축대상으로 거론되었으며 향후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선박용 유류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보조금 철폐에 의한 어업인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자금 같이 규제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수산업 직불제(휴어민에게 국가 재정에서 소득 감소 보전), 어장환경 개선, 인공종묘 방류 등 뉴라운드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을 확대해 일부 보조금 축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영어자금의 대부분이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타 회원국에 납득시켜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점진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어업인들이 보조금 축소에 적응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수산업은 인류의 식량 생산 이외에도 각 국의 지역사회 발전과 연안역의 관리 및 환경 보전에 공헌함은 물론 각 국민에게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한 대책 마련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어업보조금의 감축 또는 폐지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의 어업인 지원금을 생산자단체인 수협에 지원해 줄 것과 어장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직접지불제 조기실시와 어업인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 기르는 어업,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참여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와 원산지표시제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산업 제도개편 및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어업인이 협상결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1.a)

Maintain the productivity and biodiversity of important and vulnerable marine and coastal areas, including in areas within and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내 관할영역 내외를 포함하여, 중요하고 취약한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생산성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한다.

2) 논의 배경

해양생태계(marine ecosystem)는 해양에 존재하는 생물과 생물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포함한 집합적인 계를 의미한다. 해양생태계는 동 식물플랑크톤, 조류, 어류, 포유류,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요소 및 염수, 퇴적물, 부유물질, 토양 등 여러 종류의 물리적 환경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해양생태계는 날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3) 추진 방향

이러한 환경요인들은 육상환경에 비해서 해양환경 전반에서 관찰되는 해류, 조석 간만, 깊이, 수온, 염분도 차이, 빛의 투과도 차이에 따른 물리적 변화요인이 무척 크며, 환경의 화학적 변화요인은 더욱 크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보전과 오염을 말할 경우 생태계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오염의 궁극적인 영향을 반영하게 되는 생물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해양 갯벌생태계는 조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감조수역(intertidal zone)에서,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이 주로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달하게 되는 갯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태계이다. 따라서 갯벌은 해류나 조류에 의해 지속적으로 퇴적과 침식이 진행되며, 하천 등을 통한 육수(freshwater)와 해수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으로 해서 염분의 점이수역(transition zone)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퇴적입자의 집적에 의한 토양특성과 바다흐름을 통한 해양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개류로 대표되는 여과식자(filter feeder)의 주요 서식지이며, 많은 물고기의 산란장(hatching ground) 및 성육장(nursery ground)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¹⁵⁾

향후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효용성을 규명해 수산자원을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레저자원, 휴양자원, 문화적 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양생물자원의 어종별 자원량 및 해양생물자원의 잠재생산력을 추정하고 어종별 적정어획량의 과학적 결정 및 국가 관할권 해역의 구조적 생태적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어장 환경오염의 근본원인 파악 및 방지방안을 설정하고 어업 통계자료 신뢰도 증진방안을 강구하며 자원남용성 어구의 허가량 제한 또는 사용금지초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멸종위기종, 희귀종 지정 및 보존대책 수립과 아울러 가입과정(recruitment)의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미기록 자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저하며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15) 「월간환경」. 1999. <http://www.hkbs.co.kr/magazine/00205/list.html>

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리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3)

Enhance maritim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pollution by actions.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해상 안전 및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의 보호를 증진한다.

2) 논의 배경

지난 30여 년 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업단지가 건설되었고 새로운 도시의 형성과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산업폐수와 도시하수가 미처 처리되지 않은 채 바다에 유입되어 일부 연안에서 자정능력 한계를 초과함으로써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출사고는 어업활동이 활발한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출사고방재 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역차원에서의 긴급계획과 공동방재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3) 추진 방향

해양환경관리기능 강화, 해양오염의 예방기능 향상, 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제

고, 해양오염피해 보상체제확립,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양환경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육상기원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수질모델 등 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총량규제실시, 수질기준강화, 자동감시체제 구축 등을 통한 육상기원 오염배출의 규제 및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간척매립, 산업시설 유치 등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생물의 분포현황목록, 환경민감도지도(Environmental Sensitivity Map), 습지지도(Wetland Map)등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해상기원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유출시 조기대응체제 갖추고 이를 전담하는 해상유출사고방지센터를 설립하고 방제선박 및 장비를 현대화하며 방제기술을 지원하는 과학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고, 각종 유출사고로 인한 생태계피해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복원기술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차. 이동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확보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3 bis)

Governments, taking into account their national circumstances, are encouraged, recalling paragraph 8 of resolution GC (44)/RES/17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taking into account the very serious potential for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impacts of radioactive wastes, to make efforts to examine and further improve measures and internationally agreed regulations regarding safety, while stressing the importance of having effective liability mechanisms in place, relevant to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and other t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material,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including, inter alia, arrangements for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s don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관련 국제 문서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 및 협의에 대한 협약을 포함하여 국제 해상 운송 및 기타 방사능 물질, 방사능 폐기물 및 폐연료(spent fuel)의 국경간 이동 관련 효과적인 의무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 국가 상황을 고려한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총회 결정문 GC (44)/RES/17의 제 8항을 상기하고, 방사능 폐기물의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잠재성을 고려하여 안전 조치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를 검토하고 추가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2) 논의 배경

방사성폐기물은 핵연료주기와 원자력이용(방사성핵종 의학, 연구 및 산업 이용)에 따라 발생되며,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가 짧고, 방사선 세기가 낮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반감기가 길고, 세기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은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 매우 치명적이고 거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의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

3) 추진 방향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연간 200,000m³가 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약 10,000m³ 정도이다. 이와 같은 양은 원자력발전소의 증가, 원자력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폐기(de-commissioned)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이 증대할 수록 증가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그중 99%가 방사성 물질로, 방사선 위험도가 가장 크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각 나라마다 매년 수십 세제곱미터 정도이나, 밀봉선 원가 같이 엄격한 방사선안전규제를 적용할 정도로 방사선 위험도가 높은 것도 있으므로, 방사성폐기물양의 증가를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방사성폐기물의 최소화 및 수송과 처분에 대한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정책적인 제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 혹은 원자력 응용 계획 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이러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카. 자연재해지역 복원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5)

An integrated, multi-hazard, inclusive approach to address vulnerability, risk assessment and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 prevention,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safer world in the twenty-first century.

예방, 완화, 준비, 대응 및 회복을 포함하여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 다중 위험(multi-hazard), 포괄적 접근법, 위험성 평가 및 재난 관리는 21세기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2) 논의 배경

우리 국토는 연 강수량의 3분의 2이상이 하절기에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 때문에 홍수와 산사태, 재산유실 등 재해가 연례화되고 있다. 국토개발과 더불어 하천개수, 제방보수 등 치수사업이 지속되어 왔으나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홍수와 집중호우에 대한 방재 및 치수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재해방지와 복구를 위한 대책수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다.

3) 추진 방향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예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밖에도 가뭄, 지진, 설해,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재해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를 만드는 것은 재해전담기구의 조직과 홍수예·경보시설 근대화, 그리고 댐 건설 등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재해에 대한 사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재종합정보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태풍, 홍수,

지진, 한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전기, 가스,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정부 및 범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인 방재추진 조직이 구성되어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하천 및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천 개수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며, 수해취약 시가지를 정비하는 등 하천과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저지대 범람지역의 상습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5대강 중심의 수계치수사업을 중규모 하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방재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에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복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합방재추진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재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재해특별지역을 선포하여 종합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재해특별지역 선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타. 기후변화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6)

Change in the Earth's climate and its adverse effects are a common concern of humankind.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all countri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face increased risks of negativ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recognize that, in this context, the problems of poverty, land degradation, access to water and food and human health remain at the centre of global attenti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the key instrument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a global concern, and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chieving its ultimate objective of stabilization of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ithin a time frame sufficient to allow ecosystems to adapt naturally to climate change, to ensure that food production is not threatened and to enable economic development to proceed in a sustainable manner, in accordance with ou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Recalling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in which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resolved to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preferably by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2002, and to embark on the required reduction of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States that have ratified the Kyoto Protocol strongly urge States that have not already done so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in a timely manner.

지구 기후의 변화 및 이의 부정적 영향은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다. 우리는 저개발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의 위험성

증가에 직면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 토지 퇴화, 식수 및 식량에 대한 접근, 인간 건강 문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 세계적 관심사에 대처하는데 핵심 수단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각의 능력에 따라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지 아니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이 진척되는데 충분한 기간 이내, 위협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인위적 방해를 방지하는 수준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2002년 제10차 기념 UN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보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필수 저감에 착수하도록 국가 및 정부의 수뇌부들이 노력하기로 결정한 UN 밀레니엄 선언을 상기하면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여전히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이 교토의정서를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비준하도록 강력하게 독려한다.

2) 논의 배경

기후변화협약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협약에 의한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 부과나 각종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이 결과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산업 등의 새로운 환경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CO₂배출 감축 의무가 주어지면, 철강, 자동차, 금속, 수송 및 운수산업 등은 타격이

크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산업은 정밀기계 등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1997년)가 97.5%에 이르며 에너지 수입액은 271억 달러에 이른다. 1985~199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0.3%로 OECD 평균 소비증가율 1.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는 향후 감축의무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효율증진 등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후변화협약대응 관련대책은 국제협상의 결과 및 에너지 수급계획의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크므로 매년 종합대책을 평가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너지 절약 종합대책', '환경기술개발 중장기계획',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등 기후변화관련 기존의 정부정책은 기후변화협약 관련 종합대책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파.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제협력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7)

Enhance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o reduce air pollution, includ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cid deposition and ozone depletion bearing in mind the Rio principles, including, inter alia, the principle that, in view of the different contributions to global environmental degradation, States hav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with actions.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국가들의 세계 환경 악화에의 상이한 기여를 고려하면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포함한 리우 원칙을 명심하여, 초국경적 공

해, 산성물 침전 및 오존 고갈과 같은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도록 국제,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2) 논의 배경

국가 간의 환경문제는 환경피해가 물질의 이동에 의하는 경우, 인간에 의한 폐기물의 이동에 의하는 경우, 물질의 이동이 없으나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수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의 형태로 발생한다. 또 오염원인자와 피해당사자에 따라 구분하면 한 방향으로만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한 지역 내에서 상호간 환경피해를 주고받는 경우, 환경피해가 전지구적으로 미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3) 추진 방향

국제환경협력의 제도적 방안으로는 외교경로를 통한 방안, 자국의 오염감축량을 판매하는 방안, 오염감축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오염권의 배정과 이를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 국내제도의 국제화방안으로 각 국의 시민들이 타국의 법정 및 법적 절차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어느 나라에서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중 현재 동북아환경협력은 대체로 3번째 범주인 공동기구의 수립을 향하여 진행중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환경협력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대안으로는 기존기구의 활용, 국가적 조정방식, 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이중적 구조의 설치, 다중적 다기구적 구조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하. 오존층 보호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7. b-e)

(b)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by ensuring adequate replenishment of its fund by 2003/2005.

(c) Further support the effective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stablished in 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and the Montreal Protocol, including its compliance mechanism.

(d) Improve access by developing countries to affordable, accessible, cost-effectiv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alternatives to ozone-depleting substances by 2010, and assist them in complying with the phase-out schedule under the Montreal Protocol, bearing in mind that ozone depletion and climate change are scientifically and technically interrelated.

(e) Take measures to address illegal traffic in ozone-depleting substances.

(b) 2003/2005년까지 기금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의 이행을 촉진한다.

(c) 의무준수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구축된 효과적인 체제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d) 오존층 고갈 및 기후 변화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2010년까지 개도국의 오존층 고갈 내용의 대안으로 입수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접근을 개선하고, 몬트리올 의정서 하의 단계적 폐지 계획(phase-out schedule)을 준수하도록 개도국을 지원한다.

(e) 오존층 고갈 내용에 있어 불법 거래를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2) 논의 배경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대서양과 북극해 상공)는 인간보건과 작물생산량,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방출과 이들이 실제 성층권에 도달하는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약에 의해 CFC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3) 추진 과제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지상에 도달하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 주고 또 성층권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적 효과를 갖고 있다. 때문에 오존층 파괴는 생물학적 영향과 기후학적인 영향,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층권의 온도 분포는 성층권 오존에 의한 태양 복사의 흡수량과 대류권의 오존,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 등에 의한 대기 복사의 배출량 사이에 복사 평형으로 유지되고 있다. 성층권의 온도 분포는 대기 대순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층권 오존 감소에 따른 온도 변화는 기존 대기 대순환을 바꾸게 하여 지구 기후도 달라진다.

오존층 파괴의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서 국제적인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HCFCs와 메틸 취화물(methyl bromide)의 공급을 파악하고 현존하는 불법 혹은 합법적 CFCs의 유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엔나 협약이나 몬트리올 의정서를 준수하고 국내 산업에 급격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환경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은 주요 환경지표중 하나로서 이미 국내에도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표를 시계열적 추이 속에서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거. 사막화 및 지구환경금융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39.f)

Call on the Second Assembly of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to take action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GEF Council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land degradation (desertification and deforestation) as a focal area of GEF as a means of GEF suppor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consequently, consider making GEF a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rerogatives and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while recognizing the complementary roles of GEF and the Glob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in providing and mobilizing resources for the e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action programmes.

제 2차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총회에서 UN사막화방지협약(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성공적 이행에 대한 GEF 지원으로써 GEF 중점지원분야인 토지 퇴화(사막화 및 산림황폐)의 지정(designation) 관련 GEF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따라서 행동계획의 구체화와 이행에 대한 자원을 제공 및 동원하는 GEF 및 협약의 글로벌 체계(Glob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의 보완 역할을 인지하면서,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의 특권 및 결정문을 고려하여 GEF를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으로 만들 것을 고려한다.

2) 논의 배경

사막화는 기상이변과 인간의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막과 반건조지대에서 일어나는 토양황폐화 현상의 하나이며 이로 인해 세계 전체인구의 6분의 1과 세계전체 육지면적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고 있다.

3) 추진 방향

각국 정부 및 관련국제기구사이의 연락업무를 담당할 국가단위의 환경정보협력센터(natio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coordination centre)를 설립하고 기후변동과 인간활동의 영향에 의해 야기되는 토양황폐화와 현상을 관측하는데 필요한 국가단위의 system개발과 연계하여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체계적인 관측망(regional and global systematic observation networks)을 강화하고 대응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목적 하에 국가 및 지구차원에서 사막화와 토양황폐화를 감사하기 위한 영속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막화 퇴치를 위해서는 황폐화가 일어나지 않은 토양 또는 황폐화의 진행정도가 미미한 토양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황폐화의 정도가 심한 토양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막화와 한발퇴치에 있어 지역 사회, 농촌 지역 조직(rural organizations), 정부,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식물 식재 활동의 강화는 건조지역(drylands)에서의 수문학적 균형(hydrological balance)뿐만 아니라 토양의 질과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유용한 토지이용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황폐화되지 않은 토양을 보호하고 황폐화된 토양에 대하여는 교정 및 복구 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토양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취약생태계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자원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막화와 한발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의 기존생활 방식과 자원이용 체계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하다. 대부분의 건조 및 반건조 지역내의 전통적인 생

활방식은 농목축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특히, 한발의 영향과 인구증가 압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건전치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목장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농목축체계를 개선하고 대체생활 양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구환경금융(GEF)에 토지황폐화를 중점지원분야로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사막화방지협약의 재정 체계가 될 것을 검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 산림생태 보호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0, 43)

40. Mountain ecosystems support particular livelihoods, and include significant watershed resources, biological diversity and unique flora and fauna. Many are particularly fragile and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need specific protection.

43. Forests and trees cover nearly one third of the Earth's surfac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of both natural and planted forests and for timber and non-timber products is essential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s a critical means to eradicate poverty, significantly reduce deforestation and halt the loss of forest biodiversity and land and resource degradation, and improve food security and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affordable energy; highlights the multiple benefits of both natural and planted forests and trees; and contributes to the well-being of the planet and humanity. Achievement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nationally and globally, including through partnerships among interested Governments and stakeholde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an essential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40. 산악 생태계는 특정 생계를 지원하고, 중요한 유역 자원, 생물 다양성 및 독특한 동식물을 포함한다. 대다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며 개별적 보호가 필요하다.

43. 산림 및 수목은 지구 표면의 약 1/3에 걸쳐있다. 천연 및 조성 산림과 목재 및 비목재(non-timber) 생산품의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빈곤을 퇴치하고 산림황폐(deforestation)를 줄이며 산림의 생물다양성 및 토지, 자원의 퇴화의 손실을 중단시키고 안전 식수 및 입수가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식품 안전과 접근을 개선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천연 및 조성 산림과 수목 모두의 복합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지구 및 인류 복리에 기여한다. 민간 분야, 토착 지역 지역사회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관련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통한 국가 및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임업관리 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목표이다.

2) 논의 배경

산림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지만, 세계산림은 무절제한 개발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림경영으로 인해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의 국토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지림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산악국가이다. 식생환경이 다양하고 토양 및 기후조건상 취약한 산림생태계를 각종 피해요인으로부터 안정되게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3) 추진 방향

오늘날 우리 산림은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새로

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산림으로 인한 경제창출에 대한 의문성의 제기, 그리고 산림의 다양한 생태적 기능의 발휘요구 등을 우리나라 산림이 직면한 대표적 문제들로 들 수 있다.

산림자원은 수 십년에 걸친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자연자원으로서 초기 산림자원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시 장기적인 계획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산림의 생산력 유지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산림의 환경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 생태계 관리의 강화는 이와 같은 피해요인에 대처하여 산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태계로 유지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자원의 양적, 질적 변화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 감시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산림생태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림생태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생태계관련 자료 및 정보의 확보와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감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산불, 병해충, 대기오염 등 각종 재해요인으로부터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제방법 및 피해예측모델, 산림의 타용도 전용 시 적용할 산림영향평가, 원격탐사기술을 응용한 산림자원조사방법,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저장능력, 맑은 물 공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산림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연구개발 결과와 지리정보시스템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산림생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더. 지속가능한 관광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1)

Promote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cluding non-consumptive and eco-tourism, taking into account the spirit of the 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2002, the United Nations Year for Cultural Heritage in 2002, the World Eco-tourism Summit 2002 and its Quebec Declaration, and 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as adopted by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benefits from tourism resources for the population in host communities while maintaining the cultural and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host communities and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cologically sensitive areas and natural heritages. Promote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nd capacity-building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rural and local communities.

지역사회의 문화 및 환경 안전성을 유지하고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및 자연 유산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인구의 관광자원으로부터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2002년 생태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2002), 2002년 UN 문화유산의 해(UN Year for Cultural Heritage in 2002), 2002년 세계 생태관광 정상회의 및 퀘벡 선언(World Eco-tourism Summit 2002 and its Quebec Declaration), 그리고 세계관광기구에서 채택한 세계관광윤리규범(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as adopted by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정신을 고려하여 비소모성(non-consumptive) 및 생태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증진한다. 지방 및 지역사회의 강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및 능력 배양을 증진한다.

2) 논의 배경

지속성에 관한 관심이 관광개발분야에서도 증가되어 1992년 세계관광기구(WTO)는 "현 세대의 관광과 관광지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차세대를 위해 관광기회

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관광"이라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었다.¹⁶⁾ 이와 더불어 빈곤국가 혹은 지역에서의 관광개발이 빈곤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이 더 주목받게 되었다.

3) 추진 방향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분명히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견된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준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일 것이다. 관광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다양한 세부실행정책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란 과제가 선결 과제로 남는다. 비록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자연보존적 소규모적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으로 개발을 추진될 것으로 보거나 추진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러. 생물다양성 확보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2)

16) 김남조. 1999.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정책방향"

Biodiversity,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overal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is essential to our planet, human well-being and to the livelihood and cultural integrity of people. However, biodiversity is currently being lost at unprecedented rates due to human activities; this trend can only be reversed if the local people benefit from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n particular in countries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Convention is the key instru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se of genetic resources. A more efficient and coherent implementation of the thre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he achievement by 2010 of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current rate of loss of biological diversity will require the provision of new and addi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생물다양성은 지구, 인간복리와 생계 및 문화적 안전성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현재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전례 없는 비율로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주민이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 15조에 따라 유전 자원 출처 국가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역전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기인한 이익의 공평·공정한 분배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생물다양성 협약 세 가지 목표의 더욱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이행과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현 비율의 상당한 감소 달성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신규 및 추가 재정 및 기술 자원의 제공이 필요하다.

2) 논의 배경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부문에서 생물다양성은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생물자원 문제는 유전자 등 생물학적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3) 추진 방향

WSSD에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이행수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존의 협약을 확인하는 차원이며,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존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향후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선진국들은 보전·관리 기술의 지원을 촉구해야한다. 특히 월경성 동물의 서식지 유지를 통한 이동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의 L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생물종 개발에 대한 주의를 위하여 국내에서도 조속한 법령 체계 및 위해성 평가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며.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2.g)

To effectively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biodiversity, promote and support initiatives for hot spot areas and other areas essential for biodiversit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regional ecological networks and corridors.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필수적인 분쟁지역(hot spot)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증진 및 지원하고, 국가 및 지역의 생태학적 네트워크와 연결통로(corridors)의 개발을 증진한다.

2) 논의 배경

환경이 점차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네트워크 계획과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을 통하여 자연과의 공생을 위한 노력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파편화 되는 생태계 및 서식처를 보전하면서 작게는 토지이용계획을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넓게 보면 국토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3) 추진 방향

생태네트워크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보전 및 복원방법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 즉 기존에 이루어지던 개별적인 서식처들이나 생물종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생물종과 서식처를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통합 네트워크는 전국의 주요산맥, 10대강, 3대 연안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 및 다양성 확보, 물순환의 건전성,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 생태골격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전수단이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습지 및 갯벌, 하천 및 계곡, 호수, 국립공원 등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특히, 생태네트워크는 단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자연환경 보전 사업으로 산, 바다, 도시, 농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토를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는 백두대간 생태축, 중국러시아 접경지대 생태보전축, 남북접경지역 생태보전축, 도서보전축, 경관보전축, 습지생태보전축의 6개축으로 연결된 격자형의 생명축으로 이루어진다.

한반도의 국토생태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 자연환경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구성요소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주 능선축과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복원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생태네트워크의 주요 고려 대상은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며. 전통지식 이용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2.1)

Promot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decision and policy-making concerning the use of their traditional knowledge.

전통 지식 이용과 관련하여 토착 지방 지역사회의 결정문 및 정책 결정에의 효과적인 참여를 증진한다.

2) 논의 배경

개도국이 전통지식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 지식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안적인 의미로서의 전통 지식에 대한 보호는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추진 방향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의약, 전통식품, 농업 및 환경 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 미술,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전승물을 포함한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개념 구분을 위한 예를 들면, 십전대보탕을 만들 때 십전대보탕에 쓰이는 "약초는 유전자원"이고 "비법(약초의 종류, 첨가비율, 약효 등)은 전통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 of Folklore, '포크로표현물'이라고도 함)이란 전통지식 중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예술적인 형태의 표현물을 의미하며 전통미술표현물(전통수공예품, 그림 등), 전통음악표현물(전래가요 등), 전통무용표현물(전통춤 등), 전통문학(전래동화 등) 등을 포함한다.

전통지식의 경우 아직 전체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통의약 부분만 보고 말한다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전통지식 등의 보호 이슈는 개도국의 적극적 요구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국내 생명공학 및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 논의 과정에 우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참여와 심도 깊은 연구가 요망된다.

서. 유전자원에 대한 논의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2.o)

Negotiat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earing in mind the Bonn Guidelines, an international regime to promote and safeguar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유전 자원의 이용에서 기인한 이익의 공평·공정한 공유를 증진 및 보호하도록 국제 레짐인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을 명심하면서 생물다양성 협약의 틀 내에서 협상한다.

2) 논의 배경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이란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유전자, 세포주, 미생물, 식물, 동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전자원은 보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국제 정치·경제·문화적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 추진 방향

즉, 자원은 풍부하나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으로서는 선진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재의 지재권제도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도국은 이익의 공평한 분배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원을 지재권

으로 보호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못하고 기존의 지적권 제도의 틀 내에서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선진국도 아니고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도 아니다. 우리의 유전공학 발전의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에서 발생한 결과와 이익의 분배를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보다는, 기존의 지적권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선진국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5.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Para 45)

가.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5)

Globalization offer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recognize that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are offering new opportunities to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flows and advances in technology, includ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arou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ere remain serious challenges, including serious financial crises, insecurity, poverty, exclusion and inequality within and among societies.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face special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thos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Globalization should be fully inclusive and equitable, and there is a strong need for policies and measur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mulated and implemented with th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to help them to respond effectively to thos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is will require urgent action at all levels.

세계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한다. 우리는 세계화 및 상호의존이 세계 경제의 성장, 발전 및 전세계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무역, 투자 및 자본의 흐름과 정보기술을 포함한 기술 진보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을 인지한다. 동시

에 심각한 금융 위기, 불안정, 빈곤, 배타성과 사회 내부 및 사회들간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도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는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함에 있어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는 충분히 포괄적이고 공평하여야 하며,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가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원조하여 이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공식화되고 이행되는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정책 및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1) 논의 배경

세계화는 최근 확산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그 범위가 경제 뿐 아니라 문화, 정치 등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 확산에 따른 지구촌 경제의 정착에는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의 혁명과 WTO체제 아래서 국경이 없어진 지구촌은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와 제도, 그리고 그 질서를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로는 무한경쟁이라고 표현되는 세계경쟁을 시사하고 있다.

2) 추진 방향

세계화는 다면적인 과정으로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공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히 관리 혹은 대응할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에 대하여 국가 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로의 대세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되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균등하고(equitable) 포괄적인(inclusive) 세계화와 선진국에서 내세우는 'Global Deal'의 개념과 목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개도국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배의 문제로 인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국제사회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 현재 물질 자원 중심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에 의한 세계시장의 개방은 개도국 입장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계화라는 현실적인 흐름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세계화의 추세를 인정하되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세계화가 빈곤재생산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하도록 방안을 논의 해야한다.

나. 세계화 대응노력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5(a), (d), 45.ter)

(a) Continue to promote open, equitable, rules-based, predictable and non-discriminatory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s that benefit all countries in the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work programme contained in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rrey Consensus. Welcome the decision contained in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to place the needs and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at the heart of the work programme of the Declaration, including through enhanced market access for products of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d) Support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encourage its ongoing work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as stated in paragraph 64 of the Monterrey Consensus;

45.ter Actively promote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based on the Rio Principles, including through the full developm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and measures,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appropriate national regulations, and support continuous improvement in corporate practices in all countries.

(a)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에 이익이 되도록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 및 재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도하 각료선언에 포함된 작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와 몬트레이 합의의 이행을 지원한다. 개도국에 대한 이익상품의 시장접근 강화를 통하여 개도국들의 필요성 및 이익을 도하 각료선언 작업 프로그램의 핵심에 위치시키는 선언에 포함된 결정문을 환영한다;

(d) 몬트레이 합의 제 64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ILO)를 지원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장려한다;

45.ter. 정부간 합의 및 조치의 완전한 개발 및 효과적 이행, 국제 이니셔티브와 공공-민간 협력, 적절한 국가적 규제를 통해 리우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며, 모든 국가에서 기업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2) 논의 배경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에 대하여 국가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나 세계화라는 현실적인 흐름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발전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3) 추진 방향

세계화라는 현실적인 흐름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세계화라는 현상을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선진국의 민간자본을 개도국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으로서 파트너십/이니셔티브라는 이해당사자간 국제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협력방식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환경·무역연계문제는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높은 환경기술 능력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주요 선진국들의 환경 및 통상정책 동향분석이 필수적이다. 국제동향 및 협상결과에 대비한 국내대응 체제를 정비하고 현안쟁점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제도적 대응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도하각료선언문에 따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재원 관련 몬트레이 합의를 이행지지하며 ILO의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작업을 지지함과 동시에 기업의 책임(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증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냉정하게 평가해볼 때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확대의 수혜국가라 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용용량의 부족을 세계화 현상에 편승하여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에 따른 경제활동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된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부존자원의 부족문제를 무역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 자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적 현상을 정면으로 거역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자연자원부국인 여타 개도국과는 매우 다른 위치이다. 때문에 세계화를 부정할 수도 없으며 부정보다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접근은 세계화가 초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¹⁷⁾

17) 정희성. 200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국토와 환경」

다. 디지털화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5.sexities)

Assist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narrowing the digital divide, creating digital opportunities and harnessing the potenti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through technology transfer on mutually agreed terms and the provision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and in this context support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상호 합의된 기술 이전과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제공을 통하여 디지털 격차(divide)를 메우고, 디지털 기회를 창출하며, 발전을 위한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잠재성을 동력화 하도록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원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지원한다.

2) 논의 배경

인간과 기술이 결합되어 창출되는 정보는 과거부터 항상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어 왔다. 최근의 “지식기반경제”로 현재의 경제현상을 지칭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디지털화는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추진 방향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정보의 디지털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국가 중 하나이다. 세계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긍정적인 동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개도국 이전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어 지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이 재정지원적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으므로, 기술 이전 문제는 재정지원 보다도 실현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되면서 이러한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공기관소유기술의 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술(publicly owned technology)의 개도국 이전 촉진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련부처의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이전문제에 대하여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지나치게 가져올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며, 공공기관 소유기술의 이전과 함께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시장경제 지원차원에서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세계 정보 사회 정상회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국내 대응방안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a 46-50)

가. 건강과 환경 연계성 평가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7.k)

Launch international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as appropriate, that assess health and environment linkages and use the knowledge gained to create more effective national and regional policy responses to environmental threats to human health.

건강 및 환경 연계성을 평가하는 국제 능력 배양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고, 인간 건강의 환경적 위협에 대응하여 더욱 효과적인 국가 및 지역 정책을 창출하기 위하여 획득된 지식을 이용한다.

2) 논의 배경

보건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핵심적 과제이자 동시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차환경보건 목표의 성취는 통합되어야 한다.

3) 추진 방향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생물학적 및 경제 사회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건전한 발전이란 건강한 인구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개발 정책들이 많은 건강문제들을 악화시키거나 그 원인

이 변화되는 등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오직 개발에 의해 서만이 완화될 수 있는 건강상태에 개발이 도리어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는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보건분야에서는 자체내의 목적이나 기본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간 몇몇 개발분야에서는 직접 원인 되었던 것 같이 사회, 경제 및 정신개발 (spiritual development)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안전수 공급, 위생관리, 안전식품 공급 및 적정 영양상태 유지 등을 포함한 건강 환경에도 의존하고 있다. 세부적인 관심은 식품오염의 제거에 우선순위를 둔 식품의 안전성, 미생물과 화학오염을 제거하는 위생관리와 안전한 음용수의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건전한 수질 정책의 확립과 보건교육의 증진, 예방접종, 필수 의약품 공급 등을 지도·감독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가치관이 보장되며 문화, 종교, 사회적인 면이 고려된 가족 규모의 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과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도 이러한 각 분야간 정책수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보건수요에 부응하는 외에 취약계층 특히 영유아, 청소년, 토착인과 극빈자를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의 전제로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 보건, 연구기관들은 취약 계층의 보건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제공하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 집단의 구체적 문제들에 관한 사회조사는 확대되어야 하며, 융통성 있는 실제적 해결방안이 예방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탐색되어야 한다. 기술 자원이 보건 분야에서 청소년, 여성, 토착인을 위한 정부기관과 비정부조직에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보건을 위한 인간자원의 개발은 교육기관의 강화, 보건을 위한 상호작용을 하는 교육방법의 추진, 목표집단에 정보를 보급하는데 대중매체의 확대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마을 보건종사자, 간호사, 조산사, 의사, 사회과학자와 교육자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교육, 보건, 인구 등을 담당하는 부처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소득의 증가, 도시화,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력 저하,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양상 변화, 국민의 건강요구 증대와 생활환경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개발, 보건, 환경 분야의 통합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 진료 서비스 위주의 방식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적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감소노력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49)

Reduce respiratory diseases and other health impacts resulting from air pollu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women and children.

여성 및 아동에 주의하여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기타 건강 영향을 감소시킨다.

2) 논의 배경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의 실태는 도서지역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 및 공단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의 대기오염실태가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오염실태를 대변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추진 방향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기오염을 경감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 및 공단지역에서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가장 비중이 큰 대기오염원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1,000만대 수준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IMF를 벗어나면서,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1가구 2차 수준인 2,000만대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가 인상이나 10부제 등 자동차 운행 억제 정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유해한 실내 오염은 여러 가지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흠(fume)이 가득 찬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주로 관련되었다. 그러나 가정과 사무실에서도 상당한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그가 보내는 시간의 70 - 80%를 실내에서 보낸다. 실내 공기오염이 증가하면 무기력, 생산성 감소, 만성 정맥동염, 두통, 기타 질병을 초래한다. 공기중 미생물오염 검사 결과 일반가정의 세균, 곰팡이 오염 정도가 지하철역사, 지하상사,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보다 더 심각하다. 공기 중 세균과 곰팡이는 두통, 마른기침 등 빌딩증후군과 각종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기질에 의한 직접적인 호흡기 질환의 감소를 위해서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별로 관리하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특별 대책지역과 대기오염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대기질을 감시하는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급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을 예·경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의료보험 등의 보건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호흡기 질환의 치료를 위한 정부보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7. 이행 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Para 75-119)

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79(a))

Make available the increased ODA commitments announced by several developed countries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Urge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not done so to make concrete efforts towards the target of 0.7 per cent of GNP as ODA to developing countries, and effectively implement their commitment on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contained in paragraph 83 of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01-2010. We also encourage developing countries to build on progress achieved in ensuring that ODA is used effectively to help achiev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in accordance with the outcom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We acknowledge the efforts of all donors, commend those donors whose ODA contributions exceed, reach or are increasing towards the targets, and underline the importance of undertaking to examine the means and time frames for achieving the targets and goals.

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 몇몇 선진국이 공고한 증가된 공적개발원조 의무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행하지 아니한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ODA로써 GNP의 0.7%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하며, 2001-2010년간 최빈국에 대한 행동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01-2010) 의 제 83항에 제시된 바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선진국의 ODA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

행한다. 우리는 또한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결과에 따라 발전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ODA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전상황에 개도국이 의지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모든 기부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ODA 기부금이 목표를 초과, 도달 혹은 목표를 향하여 증가하고 있는 기부자를 치하하며,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기간의 검토 착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논의 배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각 국의 재원은 자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상당량의 재원이 소요되는 바, 이를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3)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확충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환경보전을 유인하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재정지원에 공감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공급 특히, 해외 직접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ODA 지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선진국의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ODA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0.06%로 개발도상국 요구수준인 0.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내 여건상 ODA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과다채무빈곤(HIPC) 외채 탕감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83(a))

Implement speedily, effectively and fully the enhance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initiative, which should be fully financed through additional resources, taking into consideration, as appropriate, measures to address any fundamental changes in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those developing countries with unsustainable debt burden caused by natural catastrophes, severe terms-of-trade shocks or affected by conflict, taking into account initiatives which have been undertaken to reduce outstanding indebtedness.

미불 부채액을 삭감하도록 착수된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극심한 교역 조건(terms-of-trade) 충격으로 야기되거나 분쟁으로 영향 받은 비지속적인 부채 부담의 개도국의 경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감안하면서 추가 재원을 통해 완전하게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강화된 채무과다 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이니셔티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한다.

2) 논의 배경

채무과다 빈곤국의 대외 채무는 1999년 말 현재 1,700억 달러로 GNP대비 11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채무과다 빈곤국의 경우 분쟁상황이나 자연재해, 통상적 악조건에 의해 단기간에 자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이들 국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추진 방향

WSSD의 이행계획에서는 채무과다 빈곤국에 대하여 외채 탕감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충분히(speedily, effectively and fully) 이행하도록 강조하였다. HIPC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사회 및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회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의 조치를 강조하였다.

채권·채무국들은 그동안 파리클럽(Paris Club)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채무 재조정(debt rescheduling)을 실시해 왔으나, 1996년에 처음으로 HIPC 채무조정협약(debt initiative)이 발의되어 다자 기관(multilateral institutions)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였으며, 1999년에는 부채 탕감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실효성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이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원조 지원국의 부채 탕감이 여타 형태의 원조 삭감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부채 탕감에 의해 외채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지는지 그리고 빈곤 축소에 충분한지 여부, HIPC 채무조정협약의 참여국 확대 등이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채무과다 빈곤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채무과다 빈곤국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ODA나 기타 관련 기금에의 기여 혹은 참여로서 간접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적 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채무과다 빈곤국들의 사회개발을 위한 정부 혹은 민간주도의 교류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무역관련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86(a), 87)

86(a). Review all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m and making them more precise, effective and operation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4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87. Call on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not already done so to work towards the objective of duty-free and quota-free access for all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orts, as envisaged in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01-2010, which was adopted in Brussels on 20 May 2001.

86(a). 도하 각료선언 제 44항에 따라 모든 특혜 및 차별 조치 조항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운영 가능하도록 이들 조항을 검토한다.

87. 선진국들이 2001년 5월 20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2001-2010년간 최빈국에 대한 행동계획에서 구체화된 바에 따라 모든 최빈국 수출에 대하여 면세 및 쿼터 프리(quota-free) 접근 목표를 위하여 활동하도록 요청한다.

2) 논의 배경

도하 각료선언에서 주요 논의사항으로 부각되었던 개도국 우대조항은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개도국 통상 악조건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무역환경에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추진 방향

WSSD 이행계획에서는 저소득과 빈곤, 저수준의 교육 및 투자, 채무 과다 등으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이점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자금 조달을 확충하기 위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최빈개도국(LDCs)의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타(duty-free, quota-free)의 목표 달성을 선진국에 촉구하고 있다.

무역관련 개도국 우대는 개도국 산 수입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공업국가나 국가 그룹이 제공하는 특혜 관세(tariff concessions) 혹은 기타 무역상의 특혜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특혜조치는 일반적으로 호혜적이지 않지만 GATT의 원칙에 따라 호혜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개도국의 생산패턴에 영향을 가하여 환경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의 시행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국내무역장벽의 수준, 향후 협상방식, 국내산업의 대응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아직 도하개발아젠다의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개도국 우대조항을 실시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형 산업을 점진적으로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으로 인한 국내 경제에의 타격을 근본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라. 농산물 관련 제도 접근과 1차상품 안정화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86(c), 89)

86(c) Fulfil, 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the commitment for comprehensive negotiations initiated under article 20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s referred to in paragraphs 13 and 14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iming at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reductions of with a view to phasing ou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while agreeing that the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all elements of the negotiations and shall be embodied in the schedules of concession and commitments and, as appropriate, in the rules and disciplines to be negotiated, so as to be operationally effective and to enable developing countries to effectively take account of their development needs, including f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Take note of the non-trade concerns reflected in the negotiating proposals submitted by WTO members and confirm that non-trade concerns wi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negotiations as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accordance with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89. Build the capacity of commodity-dependent countries to diversify exports through, inter alia,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and address the instability of commodity prices and declining terms of trade, as well as strengthen the activities covered by the Second Account of the Common Fund for Commodities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86(c). 개도국에 대한 특혜 및 차별 조치 조항은 모든 협상 요소 중 핵심 부분이 되고, 특혜 및 공약 예정표와 적절한 경우 협상된 규칙 및 질서 내에서 구체화되어, 운영상 효과적으로 하고 개도국이 식품 안전 및 지방 발전을 비롯한 개발 필요성을 효과

적으로 고려하도록 합의하면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 보조금의 모든 형태의 단계적 폐지 목적의 감소 및 무역 왜곡적 정부 지원의 실질적 감소를 목표로 하여, 협상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도하 각료선언 제 13항 및 14항에 언급된 농산물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 20조에 따라 착수된 포괄적 협상을 위한 공약을 수행한다. WTO 회원국이 제출한 협상 제안서에서 반영된 비무역 문제(non-trade concerns)에 주의하며, 비무역 문제가 도하 각료선언에 따른 농산물 협정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협상에서 고려될 것을 확인한다.

89. 재정 및 기술 지원, 경제 다양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통해 수출을 다양화하도록 상품 의존국가의 능력을 배양하며, 상품 가격의 불안정성 및 교역조건의 하락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상품공동기금의 제 2차 계정(Second Account of the Common Fund for Commodities)에 포함된 활동을 강화한다.

2) 논의 배경

농업분야와 1차 상품분야는 서비스분야와 함께 도하 각료선언 뿐만 아니라 많은 무역협상에서 핵심적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한국 등의 일부 선진국에서 자국의 식량안보와 경제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농산물과 1차상품에 대한 협상에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3) 추진 방향

WSSD에서 개도국은 1차 상품 안정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차 상품 의존국의 능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농산물과 관련해서 상당한 시장접근 개선, 수출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 국내보조의 상당한 감축 등 도하각료선언문의 합의사항 반영, 또한 농산물의 비무역적관심(Non-Trade Concerns: NTC)도 언급하였다.

최근 무역관련 협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최대 피해는 농산물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개방 속도의 가속화 등 농업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협상의 3대 협상목표 중 수출보조금은 한국의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및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에 따른 국내농업의 타격이 클 것이다.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산물 협상에서는 위의 3대 목표가 협상결과를 예단치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 EU 등이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하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조항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국내 농업이 받는 충격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협상과정에서는 2005년 이후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하여 일차적 노력을 경주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및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는 점진적, 단계적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는 종합적인 농업구조개편 방안 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추곡수매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쌀의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따르는 농가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쌀 시장과 관련하여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 관세징수액을 전적으로 농가소득 손실을 보전하는데 투입함으로써 추가 재원의 요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소비자 잉여가 증대될 뿐 아니라 무역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보조금 문제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91(b))

Support the completion of the work programme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on subsidies so a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hance the environment, and encourage reform of subsidies that have considerabl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and are incompatibl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환경을 강화하도록 보조금에 대한 도하 각료선언의 작업 프로그램의 완성을 지원하며, 환경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없는 보조금의 개혁을 장려한다.

2) 논의 배경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무역 왜곡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가 되는 보조금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무역왜곡 조치를 포함한 무역자유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환경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추진 방향

WSSD 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도하각료선언문의 작업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지지하는 문구로 합의하였다. EU는 환경에 유해하고 무역 왜곡적인 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reduce or phase out environmentally- harmful and/or trade-distorting subsidies) 문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이행계획으로서 채택되었다.

생산보조금이란 정부가 민간에 지급하는 특전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무역에 영향을 끼친다. 환경보조금과 같은 생산보조금은 새로운 생산설비의 확충에 투여되어 환경표준에 부합하고 보다 엄격한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유발하며, 궁극

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반면에 생산보조금은 국제시장에 대한 경쟁력저하를 부추겨 수출국, 수입국 모두에게 무역왜곡과 환경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를 국내에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경제상황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 도입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철폐할 경우에 대한 파급효과를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예측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 보조금 지원에서 간접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입하고 보조금 철폐에 따른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이후 보조금 철폐를 시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내의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이를 통해 국내산업의 환경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바. 무역과 환경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91, 92)

91. Continue to enhance the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ith a view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ctions at all levels.

92. Promot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support of the work programme agreed through WTO,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both sets of instruments.

91.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무역, 환경 및 발전의 상호 조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92. WTO를 통해 합의된 작업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일관된 다자간 무역체제 및 다자간 환경협정간 상호 조화를 증진하며, 양측 수단의 안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2) 논의 배경

WSSD에서는 무역, 환경, 개발간의 상호 지지성(mutual supportiveness)을 제고하고, 다자무역체제와 다자환경협약의 독자성(integrity)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while ensuring WTO consistency”라는 표현이 최초로 포함되어, 호주, 미국 등이 찬성하였으나 투발루, 이디오피아, 77그룹, EU 등이 반대하여 결국 삭제되었다.

3) 추진 방향

환경무역연계 문제는 국제통상 정세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차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높은 환경기술 능력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주요 선진국들의 환경 및 통상정책 동향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국 정책동향과 병행하며, 뉴라운드, 환경서비스협상 등 국제협상에 대한 담당관, 관련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응상황에 대한평가는 국제회의 및 협상담당관의 잦은 교체, 전문가의 국제회의 및 협상 참가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의 미비로 인하여 지속적인 논의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선진 각 국의 환경규제 기준의 강화, 특히 제품환경기준에 대한 강화는 제도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수출산업에 추가적인 비용분담을 야기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협약들이 환경

목적의 교역구제조치를 도입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국제환경기준에 대한 적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된다.¹⁸⁾

환경무역 연계협상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안쟁점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제도적 대응체계 정비를 위하여, 기존 대책협의회의 확대 방안과 관련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 활용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 보건과 TRIPS협정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94)

Address the public health problems affecting many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those resulting from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other epidemics, while noting the importance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in which it has been agreed that the TRIPS Agreement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WTO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Accordingly, while reiterating our commitment to the TRIPS Agreement, we reaffirm that the Agreement c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a manner supportive of WTO members 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to promote access to medicines for all.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TRIPS 협정에서 합의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및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의 중요성을 주지하면서,

18) 강상인. 2001. 「환경·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대응방안Ⅳ」

HIV/AIDS, 폐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전염병으로 인한 다수의 개도국 및 최빈국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문제들에 대처한다. 따라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두를 위한 의학으로의 접근을 증진하여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해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재확인한다.

2) 논의 배경

WSSD에서는 HIV/AIDS 등 보건문제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역관련지재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이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3) 추진 방향

유소년의 건강상태와 영양상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되므로 현재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영양 불균형과 영양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아사망률은 의료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나타내며 이의 감소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잣대인 기대수명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인구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기대수명의 증가는 평균연령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또 전체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 등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국민소득의 증가, 도시화,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력 저하,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양상 변화, 국민의 건강요구 증대와 생활환경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개발, 보건, 환경 분야의 통합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 진료 서비스 위주의 방식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적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중보건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TRIPS의 유연한 적용을 제기했다. 적절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기술혁신 및 이전에 기여하며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과 환경친화기술의 접근 및 이전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임에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내상황의 검토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a 120–153)

가. 건전한 거버넌스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120.bis, 123)

120.bis. Good governance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und economic policies, solid democratic institutions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people and improved infrastructure are the basis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poverty eradication, and employment creation. Freedom, peace and security, domestic stability, respect for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 gender equality, market-oriented policies, and an overall commitment to just and democratic societies are also essential and mutually reinforcing.

123. Good govern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is fundamental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ensure a dynamic and enabl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promote global economic governance through addressing the international finance, trade, technology and investment patterns that have an impact on the development prospects of developing countries. To this eff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ensuring support for structural and macroeconomic reform,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external debt problem and increasing market acces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be continued)

Efforts to refor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need to be sustained with greater transparency and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 universal, rule-based, open, non-discriminatory and equitabl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well as meaningful trade liberalization, can substantially stimulate development worldwide, benefiting countries at all stages of development.

120.bis 건전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건실한 경제정책, 국민의 필요성에 반응하는 견고한 민주 제도 및 개선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고용창출의 기반이 된다. 자유, 평화 및 안보, 국내적 안정, 발전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법률 규칙, 성평등, 시장 지향적 정책, 그리고 공정한 민주 사회에 대한 총체적 책임 역시 필수적이며 상호 보완적이다.

123. 국제 수준의 건전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의 기초가 된다. 역동적이고 가능한 국제경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발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재정, 무역, 기술 및 투자패턴을 다룸으로써 세계 경제적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국제 공동체는 구조 및 거시경제 개혁에 대한 지원 보장, 대외부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증가를 포함한 모든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재정구조 개혁 노력은 더욱 확대된 투명성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보편적이고, 규칙 기반의, 공개적이며,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간 무역체계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무역자유화는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들이 이익을 얻는 세계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2) 논의 배경

거버넌스(Governance)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말하며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이라는 3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자원 등 이행 수단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려면 이를 운영하는 주체인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3) 추진 전략

WSSD에서는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건전한 거버넌스의 요소로 건전한 경제정책, 민주제도, 자유, 평화, 안전, 안정, 인권, 개발권리, 법치, 남녀평등, 시장정책,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공약 등 거론하였다.

중앙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에 의한 행정행위는 다원화되고 민주적인 사회의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국민·기업·정부간 자율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과 지원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개별 행위주체 모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며, 기업이 스스로 환경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자율환경 관리제도를 확산하고, 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민간환경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200개 이상의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함께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와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때에 책임 있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에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관련 국제협약, 선진국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전략 수립·추진이 필요하다. 환경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환경규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및 양자간 환경협력

을 주도하여 산성비, 황사 등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1) 관련 이행계획문(Para 145(b))

Take immediate steps to make progress in the formulation and elaboration of nation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egin their implementation by 2005. To this end, as appropriate, strategies should be support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Such strategies, which, where applicable, could be formulated as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that integrat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each country's national priorities.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가 전략의 공식화 및 구체화를 진전시키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2005년까지 이행에 착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특수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제 협력을 통해 전략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을 통합하는 빈곤축소전략으로 공식화가 가능하며, 각 국가의 국가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2) 논의 배경

1990년대 중반까지 각 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거한 각 국의 환경상태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칙 정립에 있어서 지구차원의 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전지구적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각 국가전략으로 공식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방향

1990년대 중반이후 '환경이나 경제냐의 양자택일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의 물음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의 환경과 개발의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으로 의제21이 채택된 이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향후 전략추진의 기반은 개별 부처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기구 확대에 더하여 부처간 조정 기능 및 정책종합기능을 포함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내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그린비전 21'과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같은 장기 전략계획은 국가 전략에 종합적인 환경 체제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바탕해서 정부는 주요 분야의 전략계획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계획은 통합정책의 촉진, 규제조치와 시장기초 수단의 병행으로 특징 지워진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경제적 유인과 비유인 수단을 통해서 환경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주요 분야들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에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 각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이 달성될 때 이루어진다는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여성, 산업계와 지방정부 등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민간단체 등의 역할로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담

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요인과 제약요인을 찾고, 안정적 경제성장과 환경지향적인 대중의식의 성장, 그리고 제도적 개선과 정부의 전략 등이 긍정적 역할을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WSSD의 전개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한 분석과 각 사안에 대한 국내 현황을 근거로 하여 WSSD의 최종결과물인 이행계획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후속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리우회의 이후 WSSD에 이르는 전사회적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추진과제들을 도입, 빈곤퇴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수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들의 범주에서 세부사항으로서의 추진과제에 대해 각각 논의 배경을 살펴보고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후속 추진과제는 WSSD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합의문을 바탕으로 최근 전개되는 국제 협상과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반적 흐름속에서 중요도를 가지는 우선적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해야할 53개 과제를 <표 6-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행계획문안에 들어 있는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단기 및 중·장기적 추진과제를 모두 포함하여 도출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과 관련된 논의 의제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행계획은 총 10개 장(Chapter)에 걸쳐 지속가능발전 3대 축인 환경, 경제, 사회 분야에서 향후 10~20년에 걸쳐 달성하여야 할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을 153개 문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연구기간 내에서 WSSD에 대한 논의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른 후속과제를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표 6-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각 분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향후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

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 부처뿐 아니라 <표 6-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그리고 지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이 수립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WSSD 이후 '국가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WSSD 결과물들은 향후 유엔총회·산하 위원회 회의, 관련 협약당사국총회 등에서 국제적 규범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분야별 의제 분석에 이은 대응방안 연구가 요구된다.

각 분야별 연구에 있어 특히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자원 통합관리, 기후변화 대처, 대기오염 저감, 토양황폐화 방지지원, 생물다양성 보전, 유전자원으로 인한 이익공유 체제 마련 등이 환경분야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외에 주요그룹 참여,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청정에너지 사용, 빈곤층에 안전한 식수공급, ODA 확대, WTO 도하협상 또한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이행계획의 환경분야에는 목표연도 설정이 두드러진 상황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조치가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관련법의 경우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화학물질,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각 부문별 현 국내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국내상황에 대한 분석에 이어 이행계획에 나온 목표달성을 위하여 취해질 국제적인 조치 내용 및 파급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 수행한 국내외 상황분석을 토대로 이행계획의 목표연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및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 특히 기 추진중인 기본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점을 중점 발굴, 다음 단계의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 유엔 등이 주관하는 각종 국제협상 및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하여야 할 입장을 정립하여 이러한 과정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할 세부 주제를 발굴하여 향후 국제회의의 참가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국민 인식증진 등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WSSD 후속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 NGO, 산업계 등 주요그룹의 참여도를 높이고,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WSSD 준비과정에서 많은 참가국들이 1992년 UNCED 이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은 각국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그 이행성과가 미진하였다고 평가되는 바, 향후 국내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 NGO 등 주요그룹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위하여 우선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총괄·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1992년 7월 지구환경대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수립도 이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6월 이 대책회의가 폐지된 이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여 왔으나, 실제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조정을 하는 데에는 그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과 함께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효율적인 이행 및 환경분야 대외 협상 전략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 환경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연간 100회 이상 개최되는 각종 지구환경문제 관련 국제회의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논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여러 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구환경관련연구 기능을 통합한 가칭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또는 '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소' 설립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유엔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WSSD 국가실천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주요 정책을 입안할 때 우선적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 수립시 사전에 환경성 또는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계획과의 연계 미흡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WSSD 국가실천계획' 수립시 실효성을 위해서는 중앙, 지방정부간의 정보·자료 교환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정보교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단체별 추진과제 및 실적 정례평가 및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방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관련단체의 앞으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향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노력을 지원·평가하기 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하여 지방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에 있어서 주요그룹의 참여 미흡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계, 농민, 여성, 과학기술계 등 주요그룹의 이해와 실천이 필수적인데 비해 이들에 대한 정부의 홍보노력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논

의에 있어서 이들의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민간환경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환경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여와 역할이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주요그룹이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한편, 'WSSD 이행계획'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이행계획 관련 정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요 그룹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민간단체와 정보교환, 토론회 등 협력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는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 WSSD 이행계획 관련분야에 대한 이행 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 확산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성장,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환경보전이 되도록 하는 통합적 사고와 행태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와 함께, 경제와 환경은 서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수요관리, 효율중심의 정책 추진

공급 중심, 팽창 위주의 정책기조로부터 수요 관리와 효율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물이 부족하면 댐을 만들고, 택지가 부족하면 산을 헐고 바다를 매립하여 공급하는 기존의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공급 만능의 사고를 버리고,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여 환경을 살리는 생산과 소비생

활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절약 운동의 확산, 재활용·재이용의 촉진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사전예방적인 정책 강화

환경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사후관리 방식을 벗어나 사전에 환경성을 고려하고 오염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WSSD 이행계획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 강화, 제품의 생산공정에서부터 폐기까지 환경을 고려하는 생애주기분석(Life Cycle Analysis)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야 한다.

□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

중앙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에 의한 행정행위는 다원화되고 민주적인 사회의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할 있다.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국민·기업·정부간 자율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과 지원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개별 행위주체 모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환경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자율환경 관리제도를 확산하고, 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민간환경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환경기술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

우리 산업의 실정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당 에너지 사용량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특히 좁은 국토, 많은 인구로 국토 환경용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산업의 오염집약도(총생산량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가 매우 높다. 따라서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기술·산업의 육성과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제 확립, 청정기술 및 재생 에너지 개발 등 청

정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200개 이상의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함께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와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때에 책임 있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에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관련 국제협약, 선진국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전략 수립·추진이 필요하다.

환경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환경규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및 양자간 환경협력을 주도하여 산성비, 황사 등 월경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정책수립 및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흔히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만 알려진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더 이상 환경보전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하여서는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동 개념을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보장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환경부뿐 만이 아니라 정부 경제·사회 전 부처가 동참할 때에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2002년 세계 환경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리우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평가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1> 후속과제의 목표 연도

	후속 과제	목표 연도	시행계획		
			단기	중기	장기
도입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				✓
빈곤 퇴치	세계연대기금 설치			✓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 제고		✓		
	지역사회 기반협력 증진		✓		
	안전한 식수 및 공중위생		✓		
	도시빈민촌에 대한 대책방안	2020년			✓
소비·생산 패턴의 변화	주요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분석 방안		✓		
	에코라벨링 도입방안		✓		
	생태적 효율성 증진			✓	
	청정생산·생태적 효율성에 대한 투자 증진			✓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2015년		✓	
	에너지 보조금 철폐와 과세의 재구성		✓		
	폐기물관리체계 개선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2020년			✓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방안	2008년		✓	
공해상 해양폐기물로 인한 동북아 협력			✓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통합관리		✓		
	수자원통합관리체계구축	2005년	✓		
	국가 수자원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연구		✓		
	지속가능한 어업활동,고갈 어족자원의 회복	2015년		✓	
	공해상의 어족자원배분		✓		
	어업보조금 폐지			✓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리		✓		
	이동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확보		✓		
	자연재해지역 복원		✓		
	기후변화			✓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제협력			✓	
	오존층 보호	2003/2005년	✓		
	사막화 및 지구환경금융			✓	
	산림생태보호			✓	
	지속가능한 관광		✓		
	생물다양성 확보	2010년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전통 지식 이용				✓
유전자원에 대한 논의			✓		
세계화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	
	세계화 대응 노력			✓	
	디지털화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	
건강	건강과 환경 연계성 평가		✓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감소노력		✓		
이행 수단	공적개발원조 지원	2010년		✓	
	과다채무빈곤국 외채 탕감			✓	
	무역관련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	2010년		✓	
	농산물 관련 제도 접근과 1차상품 안정화		✓		
	보조금 문제			✓	
	무역과 환경			✓	
제도틀	보건과 TRIPS 협정			✓	
	건전한 거버넌스				✓
	국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2005년	✓		

<표 6-2> 후속과제의 관련 분야

	후속 과제	분야		
		환경	경제	사회
도입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	**		***
빈곤 퇴치	세계연대기금 설치		***	**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	**	***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 제고	***	**	
	지역사회 기반협력 증진			***
	안전한 식수 및 공중위생	***		
소비·생산패턴의 변화	도시빈민촌에 대한 대책방안		**	***
	주요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분석 방안	**	***	
	에코라벨링 도입방안	**	***	
	생태적 효율성 증진	**	***	
	청정생산·생태적 효율성에 대한 투자 증진	**	***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	***	
	에너지 보조금 철폐와 과세의 재구성	**	***	
	폐기물관리체계 개선	***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방안	***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공해상 해양폐기물로 인한 동북아 협력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통합관리	***		
	수자원통합관리체제구축	**		
	국가 수자원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연구	***		
	지속가능한 어업활동,고갈 어족자원의 회복	***	**	
	공해상의 어족자원배분	**	***	
	어업보조금 폐지	**	***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리	***		
	이동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확보	***		
	자연재해지역 복원	***	**	
	기후변화	***	**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제협력	***		**
	오존층 보호	***	**	
	사막화 및 지구환경금융	***	**	
	산림생태보호	***		
	지속가능한 관광	***	**	
	생물다양성 확보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전통 지식 이용		**	***	
유전자원에 대한 논의	***	**		
세계화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	***	**
	세계화 대응 노력	*	***	**
	디지털화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	***	**
건강	건강과 환경 연계성 평가	***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감소노력	***		
이행 수단	공적개발원조 지원		***	
	과다채무빈곤국 외채 탕감		***	
	무역관련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		***	
	농산물 관련 제도 접근과 1차상품 안정화		**	
	보조금 문제		***	
	무역과 환경	**	***	
	보건과 TRIPS 협정		***	**
제도틀	건전한 거버넌스	*		***
	국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	***	***

주) ***: 깊은 연관 **:연관 *: 적은 연관

<표 6-3> 후속과제 관련 합동연구기관

	후속 과제	합동연구기관
도입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	한국법제연구원
빈곤 퇴치	세계연대기금 설치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한국여성개발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역사회 기반협력 증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한 식수 및 공중위생	국립환경연구원
소비·생산패턴의 변화	도시빈민촌에 대한 대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분석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코라벨링 도입방안	환경마크협회
	생태적 효율성 증진	산업연구원
	청정생산·생태적 효율성에 대한 투자 증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보조금 철폐와 과세의 재구성	조세연구원
	폐기물관리체계 개선	한국자원재생공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국립환경연구원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방안	국립환경연구원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공해상 해양폐기물로 인한 동북아 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통합관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자원통합관리체제구축	국토연구원
	국가 수자원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속가능한 어업활동,고갈 어족자원의 회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해상의 어족자원배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보조금 폐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동 방식성폐기물의 안전성 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연재해지역 복원	국립방재연구원
	기후변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존층 보호	국립환경연구원
	사막화 및 지구환경금융	국립환경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림생태보호	임업연구원
지속가능한 관광	한국관광연구원	
생물다양성 확보	국립환경연구원	
세계화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국토연구원
	전통 지식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원에 대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화 대응 노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건강	디지털화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건강과 환경 연계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행수단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감소노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개발원조 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다채무빈곤국 외채 탕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관련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관련 제도 접근과 1차상품 안정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조금 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무역과 환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도틀	보건과 TRIPS 협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건전한 거버넌스	한국행정연구원
	국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고문헌

- 강광규. 2001. "에너지정책의 변화과정 및 전망".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녹색시민연대
- 강광규. 1996.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체계 구축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강만옥. 2001.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구축방안". 「중장기 환경정책과제 연구」. 환경부
- 강상인 외. 2001. 「환경·무역 연계논의동향과 대응방안 IV」.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0. 「물관리백서 2000」
- 국토연구원. 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 김남조. 1999.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정책방향'. 한국관광연구원
- 김준순. 2002. 'WSSD 지역회의 논의결과 및 준비회의 주요의제'. 「환경포럼」. 제6권 제2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농림부. 200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 농림부. 1996.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 농림부 농정개혁위원회. 1998.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 발전계획」
- 농림부 농정발전기획단. 1997. 「21세기 선진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의제21과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지속가능한 미국 - Sustainable America」
- 대한민국. 1997.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 제6차 회의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 1996.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 민동기. 2000. "생활용수수요추정에 관한 연구". 물 「위기의 시대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환경정의시민연대 엮음
- 민병승. 1996.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배재근. 1999. 「폐기물 관리정책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연구실
- 산림청. 2000. 「『21세기 산림비전』 구현을 위한 전략계획 보고서」
- 산림청. 2000. 「제4차 정부간 산림포럼 참가결과보고서」
- 산림청. 1997. 「지구산림협약의 논의동향과 전망」
-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1. "지속가능발전과 한국의 미래". 「Green Samsung」 (57)
- 서승진. 1999.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 및 지표의 개발」
- 신부식. 2000. "수자원의 수요관리를 위한 물가격 정책방향". 「물위기의 시대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환경정의시민연대
- 심명필. 2000. "21세기 수자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물위기의 시대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환경정의시민연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석유가격 구조개편을 위한 연구」
- 외교통상부외 12개 부처. 2000. 「해양개발기준계획 해양한국(Ocean Korea) 21」

- 이정전.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GreenSamaung」 (57). 2001
- 정영근. 2001. '세계환경정상회의 준비동향과 논의주제'. 「환경포럼」. 제5권 7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영근. 2001. '세계환경정상회의를 위한 정책과제'. 「사회운동연구」 제2권 1호. 한국사회운동학회
- 정영근. 2001.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환경부
- 정영근 외. 200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작업지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정희성. 200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국토와 환경」
- 지구환경대책기획단. 1992. 「21세기 지구환경 실천강령- 리우 지구환경회의의 문서 국문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대응방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의제21 국가실천계획 검토보고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전방안 워크샵」
- 한화진 외. 2002.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대응전략 및 기여방안 연구」. 환경부
- 해양수산개발원. 2000. 「수산부분의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해양수산부. 1999. 「해양환경보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연구」
- 환경부. 2001. 「중장기 환경정책과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부. 2001. 「제9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회의 문서자료집

- 환경부. 2000.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과 추진전략」
- 환경부. 2000. 「석유가격 구조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부. 2000.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 환경부. 2000.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안)
- 환경부. 2000. 「제8차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자료집」
- 환경부 지구환경과. 1998. 「UNCSD 제6차회의(98.4.20~5.1 유엔본부) 참고자료」
- 환경부 지구환경과. 1997. 「의제21 향후 이행계획」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OECD 농업환경지표와 정책활용 방안」. 연구자료 D14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 한택환, 정영록, 이호생외. 1993. "한중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93(1)
- 21세기 농정비전작업반. 1999. 「21세기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99-31
- Government of Canada. 1999. *Canada's Green Plan*
-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00. *Green Tax Reform Towards a Sustainable Society*
- OECD. 2001. *OECD Environmental Outlook*
- OECD. 2001. *OECD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OECD. 2001. *Environmental Outlook(Section IV- Energy, Climate Change, Transport and Air Quality)*

Palo · Matti · Jussi Uusivuori. 1999. "World Forests, Society and Environment"

Steenblik. Ronald. 2000. *Agri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ECD. SG/SD(2000)9

The UK Strategy. 1994.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6. *Sustainable America*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ptions and strategies for action on key issu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17/2001/xx

UNCSD. 2001. "Proceeding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Organizational Session"

<부록 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¹⁹⁾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발단에서 미래까지 (From our Origins to the Future)

1. 우리, 세계 인구의 대표자들은 2002년 9월 2일-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2. 우리는 모두에 대한 인간 존엄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인도적이고 공평하며 우호적인 지구사회를 구축하는데 전념한다.
3. 정상회의 초반부에 세계의 어린이들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미래가 그들의 것임을 이야기하였고, 따라서 우리의 조치를 통해 그들이 빈곤, 환경악화, 비지속적인 발전 패턴으로 야기된 냉대(indignity) 및 상스러움(indecency)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대답을 요청하였다.
4. 우리의 집합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대답의 일부로써, 상이한 생활 경험의 세계 모든 구석구석 출신의 우리 모두는 새롭고 더욱 밝은 희망의 세계를 창출할 긴박한 필요성을 깊이 느낌으로써 연합하고 감동 받았다.
5. 따라서, 우리는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의존적·상호강화적 중심 기둥인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를 촉진하고 강화할 집합적 책임을 맡는다.
6. 인류의 요람인 이곳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우리는 이행계획 및 본 선언을 통해 서로에 대한, 더욱 확대된 생활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자손들에 대한 책임을 선언한다.
7. 인류가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빈곤퇴치 및 인간 발전을 초래하는 실질적이고 명백한 계획을 산출할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확고한 노력을 제정하도록 공동의 결의를 통해 연합한다.

19) 본 정치적 선언문의 국문은 외교통상부에서 번역한 자료임.

스톡홀름에서 리우로,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From Stockholm to Rio de Janeiro to Johannesburg)

8. 30년 전 스톡홀름에서 우리는 환경 악화 문제에 대응할 긴급한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10년 전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는 리우 원칙에 기반하여 환경보호와 사회 및 경제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임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아젠다 21 및 리우 선언을 채택하였다. 리우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수립하는 의미 깊은 이정표였다.
9. 리우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의 기간 세계 국가들은 발전 재정에 대한 몬트레이 회의(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e for Development)뿐만 아니라 도하 각료회의(Doha Ministerial Conference)를 포함한 UN 지침에 따라 몇몇 주요 회의들을 회합하였다.
10. 요하네스버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세계로의 공통 경로를 건설적으로 모색함에 있어 민족 및 견해의 값진 태피스트리를 불러모음으로써 많은 것을 달성하였다. 요하네스버그는 또한 세계적 합의 및 전 지구 모든 사람들간의 협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상황을 또한 확인하였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The Challenges we Face)

11. 우리는 빈곤퇴치,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기반인 자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반적인 목표이며, 필수요건임을 인지한다.
12. 인류 사회를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분리하는 깊은 단층선 및 선진국과 개도국 세계간의 증가하는 격차는 세계적 변형, 안보 및 안정에 주요 위협으로 나타나

고 있다.

13.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지속되고, 어족은 지속적으로 고갈되며, 사막화는 점차 비옥한 토지를 점유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분명해지고,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하고 더욱 파괴적이며, 개도국은 점차 취약해지고, 대기, 수자원 및 해양 오염은 지속적으로 다수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있다.
14. 세계화는 이러한 도전들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고 있다. 시장의 급속한 통합, 자본의 유동성 및 세계 투자 흐름의 현저한 증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혜택 및 비용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여 특수한 곤경에 직면한 개도국으로 인하여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
15.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불균형의 침해를 감행하며, 만약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빈곤층은 그들의 대표자가 단지 요란스러운 금관악기 혹은 딸랑거리는 심벌즈에 지나지 않음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전념하는 그들의 대표자 및 민주체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약 (Our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16. 우리는 우리의 집합적 위력인 풍부한 다양성이 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17. 인류 연대감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인종, 장애, 종교, 언어, 문화 및 전통에 상관없이 세계 문명 및 사람들간 대화 및 협력의 증진을 촉구한다.
18.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불가분에 초점을 둔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를 환영하며, 식수, 공중위생, 적절한 은신처, 에너지, 보건,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 필요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증가시키도록 목표, 예정표 및 협력

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결의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을 소유하고, 시장 개방을 통해 이익을 얻으며, 능력 배양을 보장하고, 발전을 초래하는 근대 기술을 이용하며,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영원한 저개발을 떨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확신하는데 있어 서로 윈조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19.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세계적 상황들을 퇴치하는데 특별히 중점을 두고 우선적인 관심을 둘 것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만성적 기아; 영양실조; 해외 점령; 무력 분쟁; 불법마약 문제; 조직적 범죄; 부패; 자연재해; 불법무기밀매; 인신매매; 테러; 인종, 민족, 종교 및 기타 혐오에 대한 불관용 및 선동;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HIV/AIDS, 말라리아, 폐결핵 등의 풍토병, 전염병 및 만성질환 등이 있다.
20. 우리는 여성의 권한부여 및 해방과 성 평등이 아젠다 21, 밀레니엄 발전목표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포함된 모든 활동에 통합되도록 보장할 것을 공약한다.
21. 우리는 글로벌 사회가 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인류가 직면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전에 대처하도록 자원을 부여받았다는 현실을 인지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용 가능한 자원이 인류의 이익에 이용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22.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발전 목적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 선진국들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한다.
23. 우리는 지역협력, 개선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아프리카 신개발협력(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과 같은 더욱 강력한 지역 집단화 및 연맹의 등장을 환영하고 지원한다.
24. 우리는 군소 도서 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및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발전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특히 유의할 것이다.
25.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토착민(indigenous people)의 극히 중대한 역할을 재확인한다.

26.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정책 공식화, 의사결정 및 모든 수준에서의 이행에 있어 장기적 전망과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지한다. 사회적 협력자로서 우리는 모든 주요 단체들 각각의 독립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면서 이들 단체들과의 안정된 협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27. 우리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같은 민간 분야가 그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및 사회의 진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한다.
28.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 기본 원칙 및 근무 권리에 대한 선언(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고려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고용기회를 증가시키도록 지원 제공에 동의한다.
29. 우리는 민간 분야 기업들이 기업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동의한다. 이는 투명하고 안정된 규제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0. 우리는 아젠다 21, 밀레니엄 발전목표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개선할 의무를 진다.

다자주의가 미래이다 (Multilateralism is the Future)

31.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제 및 다자간 기구를 필요로 한다.
32. 우리는 UN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 및 목적뿐만 아니라 다자주의 (multi-lateralism)의 강화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최상의 위치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 기구인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33.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전상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Making it Happen to Sustainable Development))

34. 우리는 역사적인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참가한 모든 주요 단체들 및 정부들을 수반하여, 이것이 포괄적인 과정임에 동의한다.
35. 우리는 우리의 지구를 구하고, 인간 발전을 증진하며, 전세계의 번영 및 평화를 달성하도록 공동 결정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 실행할 책임이 있다.
36.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포함된 기한,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의 달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책임이 있다.
37. 인류의 요람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집합적 희망이 실현화되도록 결의하였음을 전세계 사람들과 지구를 상속받을 후세에 엄격하게 서약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과 정부의 관대한 호의 및 훌륭한 준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한다.

<부록 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문²⁰⁾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of
Implementation)

I. Introduction

1.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 및 활동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리우 원칙에 대한 의무, 아젠다 21(Agenda 21) 및 아젠다 21 추가 이행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UN 밀레니엄 선언 및 1992년 이후 주요 UN회의와 국제 협약의 결과에 따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2. 본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은 UNCED 이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나머지 목표의 실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제 7조에 명시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특히 고려하여 모든 수준에서 구체적 활동과 조치에 착수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할 것을 서약한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기둥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요소인 경제개발,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의 통합(integration)을 증진시킬 것이다. 빈곤퇴치, 비지속적인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반인 자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반적인(overarching) 목표일뿐만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3. 우리는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이 모든 사람, 특히 여성, 청소년, 아동 및 취약 그

20) 본 이행계획문의 국문은 외교통상부에서 번역한 자료임.

룹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나아가, 이행은 광범위하게 공유된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선·후진국 정부들간 협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주요 그룹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모든 관련 행위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몬트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에도 반영되었듯이, 이러한 파트너십은 세계화되는 세계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핵심이 된다.

4. 각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국내 수준에서, 건전한 환경, 사회 및 경제 정책,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국내 제도, 법의 지배, 반부패 조치, 성 평등 및 투자 가능 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다. 세계화의 결과로써, 외부 요인이 개도국의 노력에 있어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지속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해 특히 재정, 기술이전, 외채 및 무역, 그리고 세계적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 등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위한 역동적이고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국제 경제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한다.

5. 평화, 안보, 안정, 개발 권리를 포함한 인권 및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5 bis.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따라서 아젠다 21의 이행에 있어 윤리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II. 빈곤 퇴치 (Poverty eradication)

6. 빈곤 퇴치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전 세계적 도전이며, 특히 개도국

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각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퇴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고, 국가 정책 및 발전 전략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는 없지만, 아젠다 21, 기타 관련 UN회의 결과 및 UN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빈곤 관련 목표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 합의되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a) 2015년까지 일당 1달러 미만 소득의 인구 비율 및 기아에 고통받는 인구 비율을 반감하고, 같은 기간까지, 안전한 식수를 입수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반감한다;
- (b) 기부금의 자발적인 특성의 강조, 기존 UN 기금의 중복을 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력의 자금 지원에 있어 정부 관련 민간 분야 및 개별 국민의 역할을 장려하는 한편 총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개도국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인적 발전을 증진하도록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설립한다;
- (c) 빈곤 상황에 있는 국민 및 그들 조직에 대한 권한 부여(empowerment)를 증진하도록 국가 소유 빈곤감소 전략에 적절한 지역 및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들 국가의 우선 순위를 반영해야 하며, 특히 식수, 고용기회, 신용, 교육 및 건강 등과 같은 생산 자원, 공공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 (d) 모든 정책 및 전략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및 차별을 제거하며, 경제적 기회, 토지, 신용,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지위, 건강 및 경제적 복리를 증진시키므로써, 남성과의 평등을 근거로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 및 완전한 참여를 촉진한다;
- (e) 토착민과 그들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정책 및 세입

- 을 개발하고, 훈련, 기술지원 및 신용 편의와 같은 조치를 통해 적절한 경우 그들의 고용을 증가시킨다. 지속가능한 수확을 포함한 재생가능한 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 직접적 의존성이 토착민과 그들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및 신체적 복리에 본질적 요소임을 지속적으로 인지한다;
- (f)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재정지원, 기술지원 및 지식이전을 제공하면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과 빈곤, 건강 및 환경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적 건강 위협을 감소시킨다;
- (g) 어느 곳에서나 아동, 소년·소녀 모두 초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모든 단계의 교육과정에 동등한 접근을 지니도록 보장한다;
- (h) 빈곤에 처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토착민에 농업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토착 및 일반 재산 관리체계를 인지하고 보호하는 토지 소유장치(land tenure arrangement)를 증진시킨다;
- (i)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지원하도록 농촌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를 다양화하며, 운송 및 농촌 빈곤층을 위한 시장, 시장정보 및 신용에의 접근을 개선한다;
- (j) 개도국의 중·소규모 농부, 어부 및 농촌 빈곤층에 농업 생산 및 식품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중 이해관계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es) 및 공공-민간 협력을 통하여 자연자원 관리를 포함한 기초 지속가능 농업 기술 및 지식을 전수한다;
- (k) 도시와 지방 인구 및 기업들간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수확 및 식품 기술과 관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 체계를 통해 식품 유용성 및 공급을 증가시킨다;
- (l) 빈곤 퇴치의 수단으로 심각한 가뭄 및/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UN 사막화 방지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을 이행하도록 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재정 자원의 제공을 포함하여, 현재 추세를 확보하고 토지 및 수자원의 퇴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선된 기상 정보 및 예보의 이용, 조기 경보체계, 토지 및 자연자원 관리, 농업

관행 및 생태계 보존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사막화를 방지하고 가뭄과 홍수의 영향을 완화시킨다;

- (m)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빈곤 감소 전략이 필요한 국가들에서 식수 및 공중 위생을 우선 시하여, 건강을 증진하도록 공중위생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고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7. 청정 식수 및 적절한 공중위생의 제공은 인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바에 따라) 안전식수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인구 비율 및 기초 공중위생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2015년까지 반감하는데 합의하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가구 중심의 효율적인 공중위생 체계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 (b) 학교와 같은 공공 기관에서의 공중위생을 개선한다;
- (c) 안전 위생 활동을 증진한다;
- (d) 행태 변화의 수단으로써,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및 지부를 증진한다;
- (e) 입수 가능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술 및 관행(practices)을 증진한다;
- (f) 혁신적인 재정 및 협력 체계를 개발한다;
- (g) 공중위생을 수자원 관리 전략으로 통합한다.

8.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빈곤퇴치를 촉진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빈곤을 완화하는 중요 서비스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2015년까지 빈곤 인구 비율의 반감 목표를 포함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는데 충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공동 조치를 취하고 모든 수준에서 협력 노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소규모 및 중간 수준에서 빈곤층에 접근을 제공하는 개별적 요인을 인지하면서 능력 배양, 재정 및 기술 지원, 혁신적인 재정체계를 통해 지역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특수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 전력화 및 비집중적 에너지 체계 강화, 재생 가능, 액체 청정(cleaner liquid) 및 가스 연료의 이용 증가, 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 (b) 현대식 바이오매스 기술과 목재 연료 및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지방 및 이러한 실행이 지속가능한 지역에서 농업 잉여물의 이용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사업을 상업화한다;
- (c) 자원의 관리, 더욱 효율적인 목재 연료와 신규 혹은 개선된 생산품 및 기술의 이용과 같은 현 이용 패턴의 개선을 통하여 바이오매스 및 적절한 경우, 기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한다;
- (d)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경우, 액체 청정 이용 및 가스 화석 연료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e) 지방, 도시 근교 및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에너지 분야에서 필수적인 경제·사회·제도적 조건 창출을 지원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규제 틀을 개발한다;
- (f) 지방 및 고립 지역에 특별히 주의하여 여건 조성(enabling environment)의 창출을 촉진하고 능력 배양 필요성에 대처함으로써 빈곤 감소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인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도록 국제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 (g) 개도국의 에너지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는 그들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며 에너지 서비스는 빈곤 퇴치 및 생활 수준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는 점을 명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도국의 에너지 정책의 도구적 역할을 고려하여 공공-민간 협력 및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을 통해 가속화된 기반에 따라 개도국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촉진한다;

9.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산업 발전의 공헌을 강화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상호 합의된 특혜 협정에 따른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을 포함하여, 산업 생산성 및 경쟁성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산업 발전을 강화하도록 원조를 제공하고 자원을 동원한다;
- (b) 국제노동기구 기본 원칙 및 근무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고려하면서 고용 기회 수입 창출을 증가시키도록 원조를 제공한다;
- (c) 지방 지역사회의 생계 부양책인 농업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 교육 및 기술 향상을 통해 중소 규모 기업의 발전을 증진한다;
- (d) 개도국 지방 지역사회의 소규모 광업에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계 기회로부터 이익을 획득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e) 요리와 온수를 위한 연료를 공급하거나 유지하는 안전한 저비용 기술의 발전에 있어 개도국에 지원을 제공한다;
- (f) 빈곤층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창출하도록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10. 2020년까지 "빈민가 없는 도시(Cities Without Slums)"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바에 따라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들의 생활의 현저한 개선을 달성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여성이 가계의 가장인 경우에 주의하면서 토지 및 자산, 적절한 주거지, 도시 및 농촌 빈곤층을 위한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 (b) 개도국의 문화, 기후, 개별적 사회 조건 및 자연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재정 및 기술 지원으로 빈곤층에 대한 적절하고 안전한 거주지를 건설하도록 저비용의 지속가능 재료 및 적절한 기술을 이용한다;
- (c) 여성과 남성에 공평한 기회를 장려하면서 적절한 국가 정책을 통해 도시 빈곤층에 대한 상당한 고용, 신용 및 수입을 증가시킨다;
- (d) 소규모 기업 및 비공식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및 기타 장벽을 제거한다;
- (e) 도시 발전 계획 및 특히 빈곤층에 대한 주택공급 법률 정보에의 편의 접근의 틀 내에서 빈민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 정부를 지원한다.

11.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 No.182에 명시된 아동 노동의 최악의 상황을 제거하도록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며, 용인된 국제 기준에 반하는 아동 노동의 제거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 노동 기준이 보호무역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함을 강조하면서, 빈곤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및 경제 정책을 통해 아동 노동 및 이의 근본 원인을 처리하는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

III. 비지속적인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사회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세계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제 7조에 명시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포함한 리우 원칙들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주도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과정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증진하여야 한다. 정부, 관련 국제기구, 민간 분야 및 모든 주요 단체들은 비

지속적인 소비 및 생산 패턴을 변화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아래에 명시된 활동을 포함한다.

14. 자원 및 생산 공정의 이용에 있어 효율성 및 지속성 개선과 자원 감소, 오염 및 폐기물의 감소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에 대처하고 연계를 깨뜨림으로써 생태계 수용력 내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하도록 지역 및 국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여 10년 기간 프로그램 틀의 개발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모든 국가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의 모든 자원의 동원과 개도국에 대한 능력 배양을 통하여 개도국의 발전 필요성 및 능력을 고려하면서 선진국의 주도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 (a) 몇몇 국가들에 적용된 기준이 부적절하고 기타 국가들, 특히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에 부당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생산주기(life-cycle) 분석 및 진전상황 측정 국가 척도를 포함한 개별적인 활동, 수단, 정책과 감독 및 평가 체계를 규정한다;
- (b)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제 16조에 명시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증진하도록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한다;
- (c) 환경 및 건강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경우 생산주기 분석(life-cycle analysis)과 같은 과학 기반의 접근법을 이용하면서, 제공된 생산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생산 및 소비 정책을 개발한다;
- (d) 지방, 국가 및 지역적 문화 가치를 고려하면서 교육, 민간 및 소비자 정보, 광고 및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특히 청소년 및 관련 부문들간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e) 인류 건강 및 안전 측면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증명가능하고, 적절하며, 비차별적인 소비자 정보 수단을 자발적 근거에서 적절한 경우 개발하고 채택한다. 이러한 수단이 무역 장벽의 위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f) 국제 기구와 협력 하에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와 능력배양, 기술이전 및 기술교환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재정지원으로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을 증진한다;

15. 모든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통하여 청정 생산 및 생태적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 적절한 규제, 재정 및 법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을 지원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특히 개도국에서 생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및 능력 배양을 제공함으로써 청정 생산 프로그램 및 센터와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 (b) WTO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역 왜곡 조치들을 회피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국가 공채, 위험부담자본(venture capital), 기술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청정 생산 및 생태적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모든 국가에서 제공한다;
- (c) 청정 생산, 생태적 효율성 및 환경 관리에 있어 비용 효율적인 사례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유포하며, 공공-민간 기구간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최선의 실행 및 노하우의 교환을 증진한다;
- (d)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이용에 대하여 중소기업들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6. 생산 및 소비 패턴의 이슈를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프로그램 및 전략,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빈곤 감소 전략에 통합한다.

17.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원칙 제 11조를 명심하면서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준 및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지구보고제안(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환경 관리 체계, 운영 규범, 환경 및 사회 이슈의 증명 및 공개를 포함한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회 및 환경 이행을 개선하도록 산업계를 장려한다;
- (b) 기업, 지역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간 대화를 장려한다;
- (c) 지속가능한 발전 고려사항을 의사 결정 과정에 편입시키도록 재정 기관을 독려한다;
- (d)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작업장 기반 협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8. 인프라, 사업 개발 및 정부 조달에 있어 국가 및 지방 발전 계획, 투자를 포함하여 의사 결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관련 당국을 독려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인프라의 투자 및 사업 개발 관련 의사 결정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b) 공익과 관련하여 국제 무역 및 투자 왜곡 없이 오염자가 원칙상 오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고려하여 환경 비용의 내부화 및 경제 수단의 이용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 (c)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 및 서비스의 발전 및 확산을 장려하는 정부 조달 정책을 증진한다;
- (d) 본 항에 열거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관련 당국을 지원하도록 능력 배양 및 훈련을 제공한다;
- (e)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이용한다.

19. 세계 환경 악화에의 상이한 기여에 있어 국가들이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래 제시된 이슈 및 선택권을 포함하여 제 9차 회기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의 권고사항 및 결론을 국가 및 지역 개별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하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 및 국제 기구와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결정문 9/1의 섹션 A 3항 및 섹션 D 30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결론에 따라 재정 자원의 제공, 기술 이전, 능력 배양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확산을 동원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한다;
- (b) 에너지 효율성, 입수 가능성 및 접근 가능성을 포함한 에너지 고려사항들을 주요 에너지-소비 분야의 정책과 공공 분야, 교통, 산업, 농업, 도시 토지의 이용, 관광 사업 및 건설 분야 등의 장기 에너지 소비 인프라의 계획, 운영 및 유지와 같은 사회-경제 프로그램에 통합시킨다;
- (c) 청정 화석 연료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 및 선진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에너지 의존성을 개선하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혼합의 확대된 분배를 목적으로 대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유포한다;
- (d) 증가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이용,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선진 에너지 기술에 대한 확대된 의존과 전통적 에너지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결합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장기적으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증대를 충족시킨다;
- (e) 화석 연료 기술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 수력을 포함한 선진적이고, 청정하며, 더욱 효율적이고, 입수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상호 합의된 양허 조건에 따라 개도국으

로 이전한다. 긴급한 경우, 국가 및 자발적 지역 목표뿐만 아니라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인식하고 에너지 정책이 개도국의 빈곤퇴치 노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장하면서, 총 에너지량에 대한 기여 증가 목표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세계적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목적에서 진전 상황을 검토하도록 유효 자료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f) 민간 분야의 개입으로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원유 생산 관련 연소 및 누출(flaring and venting)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원한다;
- (g) 다양한 지역적 용도를 위한 토착 에너지원 및 인프라를 개발 및 이용하고, 단순한 지역 해결책을 강구할 일상적인 에너지 필요성을 충족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국제 사회의 지원에 따라 지역 아젠다 21 그룹(Agenda 21 groups)을 포함한 지방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한다;
- (h) 국제 사회의 지원에 따라 에너지 효율 기술의 전개를 가속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내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i) 상호 합의된 특허 및 특허 조건과 같은 우호적 조건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입수 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보존 기술의 개발, 유포 및 전개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의 이전을 가속화한다;
- (j) 국제 재정 기구 및 기타 기관의 정책이 다음 사항들간 평등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을 창출하는 정책 및 규제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 선진적이고 청정한 화석 연료 기술을 포함한 선진 에너지 기술, 집중적·분포적·비집중적 에너지 체계.
- (k) 재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선진적이고 청정한 화석 연료 기술을 포함한 선진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기술 분야에 있어 국가적으로 또한 국제 협조를 통하여 연구·개발(R&D)을 증진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관련 국가 및 지역 연구·개발 기관/센

터를 강화한다;

- (l) 능력 배양의 노력을 지원하고 증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기술의 소관 센터와 개도국의 기술이전 활동들간 연계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우수센터(centres of excellence)들간 네트워크를 증진한다;
- (m) 입수 가능한 에너지원 및 기술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증진한다;
- (n)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재생가능한 에너지, 선진적이고 청정한 화석 연료 기술을 포함한 선진 에너지 기술을 증진하는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의 훈련, 기술적 노하우 및 국가 기구의 강화를 위한 능력 필요성을 충족하도록 최빈국과 군소 도서국과 같은 개도국에 재정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에 따라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같은 재정 수단 및 체제를 이용한다;
- (o)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달성을 목표로 수요 및 공급 관련 에너지 시장에 대한 기능, 투명성 및 정보를 개선하는 노력 및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보장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 (p) 시장 왜곡을 축소하는 정책은 발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개도국의 개별적 필요성 및 조건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여 개선된 시장 신호(market signals)의 이용을 통해 과세의 재구성 및 유해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같은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증진할 수 있다;
- (q) 개별적 국가의 특정 조건 및 발전의 상이한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개도국에 대한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억제하는 이러한 분야의 보조금을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r) 각 국가의 정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고, 시장 장벽을 극복하며,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또한 정부의 특성 및 능력과 발전 단계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서 반영하는 바에 따라 고려되어 국가 에너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정부를 독려한다;
 - (s) 인구의 모든 분야에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지역 및 국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에너지 기구 혹은 설비를 강화한다;
 - (t) 정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의 교훈을 근거로 국가들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하고 선진 및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과 선진 에너지 기술 등 에너지에 대한 접근 분야의 사업 및 산업을 포함 하면서, 제 9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틀 내에서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국가들을 독려한다;
 - (u)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교육 및 능력 배양 증진의 지역 및 국가 활동을 강화하면서, 아젠다 21 추가 이행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 제 46(h)항을 명심하여 국제 및 지역 기구와 기존 위임사항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의 상이한 일면을 다루는 조직들간 협력을 증진한다;
 - (v) 전기 그리드(electricity grids)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관의 상호연결을 포함 하여 국경간 에너지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협력 협정을 강화 및 촉진한다;
 - (w) 지역, 국가 및 국제 에너지 생산자 및 소비자들간 대화 포럼을 강화 및 촉진한다;
20. 국가의 우선 순위 및 상황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고 입수 가능하며 효율적인 운송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며, 오염을 감소시키고, 인구과잉을 축소시키며, 부정적인 건강 효과를 줄이고, 도시의 스프롤(sprawl) 현상을 제한할 목적

으로 토지 이용, 인프라, 공공 운송체계 및 상품 운반 네트워크의 정책 및 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국가, 지역 및 지방 수준의 운송 서비스 및 체계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통합된 접근법을 증진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운송 수단의 입수 가능성, 효율성 및 편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기 환경 및 건강을 개선하도록 개별적인 지역, 국가 및 지방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송 전략을 이행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입수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보다 개선된 운송 기술의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을 감축한다;
- (b)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 교통수단 체계를 포함한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다중 방식(multi-modal) 운송체계 및 보다 개선된 지방 운송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 및 협력을 증진한다.

21.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및 기타 지원으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폐기물을 방지 및 최소화하고, 재사용·재활용 및 환경 친화적 대체 원료의 이용을 극대화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재포획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폐기물 방지 및 최소화, 재사용·재활용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처리시설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폐기 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며, 도시와 지방 폐기 관리를 지원하는 소규모 폐기물 재활용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해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 (b) 재활용 소비재 및 생물 분해성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필수적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폐기물 방지 및 최소화를 증진한다.

22.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제 15조에 명시된 사전예방 접근법을 고려하면서 투명한 과학기반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과학기반 위험성 관리 절차를 이용하여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초래하는 방식의 화학제품 이용 및 생산을 2020년까지 달성하도록 아젠다 21에서 진전된 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산주기를 통한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책임을 갱신한다. 또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개도국을 지원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국제 무역의 특정 유해 화학제품 및 살충제에 대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로테르담 협약(the Rotterdam Convention on Prior Informed Consent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을 2003년까지 발효하고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을 200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에 대한 관련 국제 수단의 비준 및 이행을 증진하고, 조정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이행에 대한 지원을 장려 및 개선한다;
- (b) 2005년까지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IFCS)의 2000년 이후 활동을 위한 바야 선언 및 우선순위(the Bahia Declaration and Priorities for Action Beyond 2000)를 기반으로 국제 화학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화학 관리를 다루는 UN환경계획(UNEP),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IFCS) 및 기타 국제기구와 이 점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련 국제 기구 및 행위자들을 독려한다;
- (c) 2008년까지 시스템을 완전하게 운영하여 되도록 빠른 시기 화학제품의 분류 및 라벨링을 위한 국제적으로 조화된 분류표시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을 이행하도록 국가들을 촉진한다;

- (d) 다자간 환경 합의를 이행하고, 화학 및 유해 폐기물 관련 이슈의 인식을 증진하고, 부가적인 과학 자료의 수집 및 이용을 장려하여, 화학 및 유해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활동을 증진하도록 협력을 촉진한다;
- (e) 유해 폐기물 및 처리의 국경간 이동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과 같은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여 유해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 거래를 방지하고,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및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 (f) 국가 오염물질 발표 및 이전 등록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논리적이고 통합된 정보의 개발을 장려한다;
- (g) UNEP의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의 국제 평가와 같은 관련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야기된 위험성의 감소를 증진한다.

IV. 경제사회 발전의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23. 인간 활동은 인간 복리 및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안전성(integrity of ecosystem)에 대하여 증대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자연 자원 기반을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연자원 악화의 현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국가 및 지방 능력을 강화하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 수자원 및 생물자원의 통합된 관리를 달성하도록 국가 및 적절한 경우 지역 수준에서 채택된 목표를 포함하는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24. 안전 식수에 대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한

행동계획을 착수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바에 따라 안전식수에 도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는 인구 비율 및 기초 공중위생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2015년까지 반감하는데 합의하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모든 수준에서 국제 및 국내 재정 자원을 동원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최선의 실행을 증진시키고, 인프라 및 서비스가 빈곤층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gender sensitive) 사항임을 보장하면서 식수 및 공중위생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의 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 (b)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이행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면서 모든 수준에서 공개 정보 및 여성의 참여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 (c)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원으로 수자원 관리 및 능력 배양에 대한 정부의 우선 조치(priority action)를 증진하고, 아젠다 21의 제 18 장을 이행하도록 신규 및 추가 재정자원과 혁신 기술을 제공한다;
- (d) 입수 가능한 공중위생 및 국내 산업 폐수처리를 위한 기술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의 영향을 완화하며, 국가 수준에서 감시 체계 및 효과적인 법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건강 위협을 축소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수자원 오염 방지를 강화한다;
- (e)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증진하고 수자원 부족에 대처하도록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채택한다;

25.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으로 2005년까지 통합된 수자원 관리 및 수자원 효율방안을 개발한다.

- (a) 통합된 하천 유역(river basin), 유역(watershed)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국가/지역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하고, 손실을 줄이고 수자원의 재생을 증진하는 수자원 인프라의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도입한다;

- (b) 빈곤층의 안전 식수 접근에 장벽이 되는 비용 회복(cost recovery) 목적이 없는 규제, 감독, 자발적 조치, 시장 및 정보 기반 수단, 토지 관리와 수자원 서비스의 비용 회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통합된 수자원 유역 접근법을 채택한다;
 - (c)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개선하고, 식수 품질 보호를 포함한 인간의 국내, 산업 및 농업 필요성에 따라 연약한 환경에서 기초 인간 필요성의 만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생태계 및 생태계 기능의 보전 혹은 복구의 필요성간 균형을 조절하면서 경쟁적인 이용들간 할당을 정한다;
 - (d) 극단적인 수자원 관련 사고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e) 기술 및 재정 지원과 능력 배양을 통하여 수자원 부족에 직면하거나 가뭄 및 사막화의 피해를 입는 개도국 및 지역에 비전통적 수자원 및 보존 기술에 대한 기술 보급 및 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 (f) 기술, 전문 및 재정 지원과 기타 방식을 통하여 개도국의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바다물의 탈염화, 수자원 재생 및 연안 안개(coastal fogs)로부터 수자원 채취를 위한 노력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g) 지방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며, 활동을 감독하고,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책임성을 개선하면서, 정부의 안정되고 투명한 규제 틀 내의 빈곤층의 필요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공공-민간 협력 및 기타 형태의 협력 구축을 촉진한다.
26. 국가 감시 네트워크 및 수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또는 추가 개발 및 관련 국가 척도의 개발을 통하여 수자원의 수량 및 품질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노력에 있어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을 지원한다.
27. 공동 관측 및 연구 협력을 통하여 수자원 관리 및 물순환(water cycle)의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 공유를 장려 및 촉진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원격탐사 및 인공위성 기술을 포함한 능력 배양 및 기술 이전을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에 제공한다.

28. 정부간 의사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국제 기구 및 시민사회의 기부를 유인하면서 UN 체계 내에서 UN과 국제 재정 기구간 수자원 관련 이슈활동을 지속하여 다양한 국제 및 정부간 조직체 및 과정들간 효과적 조정을 증진한다; 또한 제안을 구체화하고 지원하며, 2003 국제 민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reshwater 2003 and beyond) 및 관련 활동에 착수하도록 긴밀한 조정을 증진하여야 한다.

29. 대양, 해양, 도서지역 및 연안지역은 지구 생태계의 통합된 필수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적 식품안전 및 특히 개도국의 다수 국가 경제에 있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 및 복리에 결정적이다.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및 지역 수준에서 관련 기관과 조치들간 효과적인 조정 및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 활동을 필요로 한다:
 - (a) 해양활동에 대한 전반적 법률 틀을 제공하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이행하도록 국가들에 비준 혹은 동의 를 요청한다;
 - (b)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 해양 환경 및 기후 변화의 관리의 결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국제 및 지역 협력과 조정의 강화; 군소 도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포함한 통합된 관리의 프로그램 지역 및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대양, 연안 지역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을 제공하는 아젠다 21의 제 17장의 이행을 증진한다. ;
 - (c) 국제 연합 체계 내에서 해양 및 연안 이슈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정규적인 기관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d) 해양생태계의 책임성 있는 어업(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에 대한 레이카비크 선언(Reykjavik Declaration) 및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결정문 5/6을 주지하면서, 생태계 접근법의 적용을 2010년까지 장려한다;

- (e) 국가 수준에서 통합된 학제간 다구역의 연안 및 해양 관리를 증진하고 통합 연안관리에 대한 해양 정책 및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연안 국가들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 (f) 관련 지역 조직 및 프로그램, UNEP 지역 해양 프로그램, 지역 어업 관리 조직과 기타 지역의 과학, 보건 및 개발 조직간의 지역적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한다;
- (g) 수산 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 및 소지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합하도록 개도국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연안 및 소규모 어업활동의 증진과 관련 인프라의 발전을 통하여 통합 연안지역 관리(integrated coastal area management) 계획을 이행한다;
- (h) 해양 정세의 발전 총회의 연간 검토 및 본 결정의 사항에 따른 제 57차 효율성 및 유용성의 후속 검토를 촉진하기 위하여 UN 총회 결정 54/33에서 제정된 공개 비공식 협의 절차(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를 주지한다;

30. 지속가능한 어업을 달성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조치가 요구된다:

- (a) 긴급하게 가능하다면 2015년 이전까지 고갈 어족(depleted stocks)에 대하여 최대의 지속가능한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어족을 유지하고 혹은 재건한다;
- (b)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 및 운영 관련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대한 UN 협약 조항의 이행 합의(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와 공해 어업 선박

- 의 국제 보존 및 운영 조치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1993년 합의(the 1993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를 주지하면서 UN 및 지역 어업 합의 혹은 협정을 비준하거나 동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 (c) 1995년 책임성 있는 어업에 대한 행동지침(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의 제 5조에 명시된 개도국의 특수한 요건과 UN식량 농업기구 국제 조치 계획 및 기술적 지침을 주지하면서 1995년 책임성 있는 어업에 대한 행동지침을 이행한다;
 - (d) 2005년까지 어업 능력 운영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by 2005)과 2004년까지 불법 조업어선의 어업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폐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by 2004)과 같은 FAO 국제 조치 계획을 실시하도록 국가 및 지역 조치 계획을 긴급하게 개발하고 이행한다. 불법조업어선(IUU)의 어업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폐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진행하도록 어업 선박의 효과적인 감시 및 보고, 집행, 통제를 구축한다;
 - (e) 공해 및 배타경제수역(EEZs) 내에서 해양법에 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조항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 및 운영 관련 1982년 12월 10일의 해양법에 대한 UN 협약 조항의 이행 합의를 주지하면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분배 할당 이슈를 다룸에 있어 연안 국가의 권리, 의무 및 이익과 개도국의 특별한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관련 지역 어업 운영기구 및 협정을 장려한다;
 - (f) 어업 보조금에 대한 원칙을 명백하게 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WTO가 착수한 노력을 완수하면서, 개도국에 있어서 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하여 불법조업어선의 어업 및 과잉 어로(over-capacity)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을 폐지한다;
 - (g) 최빈국, 군소 도서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 등의 개도국이 인프라에 대한 국

가, 지역 및 소지역의 능력과 어업의 통합된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발 하도록 국제 재정 기관, 쌍무적 기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기증자 조정을 강화한다;

- (h) 식품 안전 및 경제 발전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소규모 양식어업을 포함한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31. 아젠다 21의 제 17장에 따라 다음의 국제적 수단에 근거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조치를 통해 해양의 보존 및 관리를 증진한다.

- (a) 국내 관할영역 내외를 포함하여, 중요하고 취약한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생산성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한다;
- (b) 개도국에서 재정 자원 및 기술 지원의 긴급 동원과 인력 및 제도적 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의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자카르타 위임(the Jakarta Mandate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Biological Diversi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비롯된 작업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c) 생태계 접근법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 및 수단의 이용, 파괴적인 어업 관행의 폐지, 2012년까지 대표 네트워크를 포함한 국제법에 일관되면서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해양 보호 지역의 구축, 성육장(nursery grounds)의 보호를 위한 시간/장소의 폐쇄(closures), 적절한 연안 지역의 이용; 유역 계획과 해양 및 연안 지역 관리의 주요 분야로의 통합을 개발 및 촉진한다;
- (d) 산호초 지대 및 습지대의 해양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하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e) 산호초 지대, 홍수림(mangroves), 해초 양식장(seaweed beds) 및 조수 개펄을 포함한 연안 지역 습지대 생태계를 위한 공동 관리 계획 및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생물다양성 협약과의 공동 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과 국제 산호초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oral Reef

Initiative)가 요청한 행동계획을 이행한다;

32.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의 보호를 위한 지구 행동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과 2002년-2006년 기간 도시 폐수(municipal wastewater), 서식지의 물리적 개조 및 파괴, 활동으로 인한 영양물(nutrients)에 초점을 맞춘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의 보호에 대한 몬트리올 선언(Montreal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의 이행을 추진한다:

- (a) 협력, 과학적 연구 및 기술 지식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내, 지역 및 국제 자원을 동원하며; 개도국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 및 제도적 능력배양을 증진한다;
- (b) 지구 행동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의 목표를 주류화하고 해양 오염의 위험성 및 영향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과 메커니즘의 개발에 있어 개도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 (c) 가속화된 환경 변화 및 발전 압력을 받기 쉬운 지역을 특히 주지하면서,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고 연안 및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들간 연계를 개선한다;
- (d)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2006년 지구 행동계획 후속 회의에 따라 실질적인 향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33.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해상 안전 및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의 보호를 증진한다:

- (a) 해상 안전 증진과 유해성 오염방지 페인트의 이용과 같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및 환경적 피해로부터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들이 협약 및

의정서, 기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관련문서를 비준 혹은 동의하고 이행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기국주의(flag states)의 IMO 수단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메커니즘을 고려하도록 IMO를 독려한다;

- (b) 발라스트수(ballast water)에서의 유해 해양생물 유입(invasive alien species)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개발을 가속화한다. 선박의 발라스트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한 IMO 국제 협약(the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을 최종 승인하도록 IMO를 독려한다.

33 bis. 관련 국제 문서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 및 협의에 대한 협약을 포함하여 국제 해상 운송 및 기타 방사능 물질, 방사능 폐기물 및 폐연료(spent fuel)의 국경간 이동 관련 효과적인 의무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 국가 상황을 고려한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총회 결정문 GC (44)/RES/17의 제 8항을 상기하고, 방사능 폐기물의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잠재성을 고려하여 안전 조치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를 검토하고 추가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34. 다음의 모든 수준에서 활동을 통한 건전한 의사결정의 근본으로써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과학적 이해 및 평가를 개선한다.

- (a) 생물 및 무생물(living and non-living) 해양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해양 과학 및 해양 기술의 적절한 이전을 포함하고, 해양 환경 상태에 대한 시기 적절한 예측 및 평가의 해양 관측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국제와 지역 수준에서 통합된 평가를 포함한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증진한다;
- (b) 현존 지역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및 미래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 환경 상태의 세계적 보고 및 평가를 위한 UN의 정규 과정을 2004년

까지 구축한다;

- (c) 연안 및 해양 환경과 생물 및 무생물 자원에 유해할 수 있는 계획 혹은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력 평가와 환경 평가 및 보고 기술의 이용을 증진함으로써 해양 과학, 정보 및 관리에 있어 능력을 배양한다;
- (d) 해양 과학과 해양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있어 국가 및 지역 능력을 구축하도록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세계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기타 관련 국제, 지역 및 소지역 기구의 능력을 강화한다.

35. 예방, 완화, 준비, 대응 및 회복을 포함하여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 다중 위험(multi-hazard), 포괄적 접근법, 위험성 평가 및 재난 관리는 21세기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재해경감 국제전략(the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SDR)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탁 기금(Trust Fund)에 필수적인 재정 자원을 제공하도록 국제 공동체를 장려한다;
- (b) 재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 소지역 및 국가 전략과 과학 및 기술의 제도적 원조의 구축을 지원한다;
- (c) 수면 지지(surface-based) 감시의 개선과 위성 자료의 이용 증가, 기술 및 과학 지식의 보급, 취약한 국가에 대한 원조 제공 등을 통하여 국가의 제도적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합동 관측 및 연구를 증진한다;
- (d) 습지 및 유역 보호 및 복구와 토지 이용계획 개선의 증진, 습지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더욱 광범위한 기술 및 방법론의 개선 및 적용, 이러한 영향에 특히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 등을 통하여 취약성 국가들의 홍수 및 가뭄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 (e)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및 방법론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장려한다;
 - (f) 재난의 영향을 완화하는 전통 및 토착 지식의 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고, 훈련 활동 및 공공 인식 증가를 통해 지방자치 당국의 지역사회 기반 재난 관리계획을 증진한다;
 - (g) 자연적 재해의 관리에 있어 합의된 관련 지침에 따라 비정부기구(NGO), 과학 공동체 및 기타 협력자의 진행 중인 자발적 기부를 지원한다;
 - (h) 재해경감 국제전략(ISDR)에 따라 재난 관리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 및 정보 네트워크를 개발 및 강화한다;
 - (i) 엘니뇨현상에 대한 국제 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El Nino phenomenon)와 같이 엘니뇨/라니냐 현상에 대처하는 기관의 지원 제공을 통해 극심한 기상재해를 예측하는 조기 경보체계의 개선을 포함하여 과학 및 기술 정보를 수집 및 유포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능력을 개발 및 강화한다;
 - (j)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영향받은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의 과학 기술적 및 기타 재난의 예방 및 완화, 준비, 대응, 회복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
36. 지구 기후의 변화 및 이의 부정적 영향은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다. 우리는 저개발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의 위험성 증가에 직면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 토지 퇴화, 식수 및 식량에 대한 접근, 인간 건강 문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 세계적 관심사에 대처하는데 핵심 수단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각의 능력에 따라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지 아니하며, 지

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이 진척되는데 충분한 기간 이내, 위협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인위적 방해를 방지하는 수준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2002년 제 10차 기념 UN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보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필수 저감에 착수하도록 국가 및 정부의 수뇌부들이 노력하기로 결정한 UN 밀레니엄 선언을 상기하면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여전히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이 교토의정서를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비준하도록 강력하게 독려한다. 다음을 이행하도록 모든 수준에서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 (a)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에 의거한 모든 공약 및 의무를 충족한다;
- (b) UNFCC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 (c) 마라케시 합의문(Marrakesh accords)을 포함하여 UNFCCC 하의 공약에 따라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기술 및 재정 지원과 능력배양을 제공한다;
- (d)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 자료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과학 및 기술 능력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 (e) 기술적 해법을 개발하고 이전한다;
- (f) 민간 분야 개입, 시장 지향적 접근법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공공정책 및 국제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와 같은 발전 핵심 분야 및 이점에 있어서의 투자에 관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유포한다;
- (g) 개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이용을 위해 유포 가능한 고품질의 자료를 산출하도록 감시 기지의 개선, 위성 이용의 증가 및 관측의 적절한 통합을 통해 지구의 대기, 토지 및 해양의 체계적 관측을 증진한다;
- (h) UNFCCC와 협력하는 UN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함으로써 통합된 국제 관측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 지구의 대기, 토지 및 해양을 감시하

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 전략의 이행을 강화한다;

- (i) 지역 및 토착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여 북극위원회 이니셔티브(Arctic Council initiatives)와 같은 기후변화의 결과를 평가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37.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국가들의 세계 환경 악화에의 상이한 기여를 고려하면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포함한 리우 원칙을 명심하여, 초국경적 공해, 산성물 침전 및 오존 고갈과 같은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도록 국제,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 (a) 건강에의 영향을 포함한 대기 오염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감소시키며, 평가하도록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능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b) 2003/2005년까지 기금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의 이행을 촉진한다;
- (c) 의무준수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구축된 효과적인 체제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 (d) 오존층 고갈 및 기후 변화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2010년까지 개도국의 오존층 고갈 내용의 대안으로 입수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접근을 개선하고, 몬트리올 의정서 하의 단계적 폐지 계획(phase-out schedule)을 준수하도록 개도국을 지원한다;
- (e) 오존층 고갈 내용에 있어 불법 거래를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38. 농업은 세계 인구 증가의 궁핍을 처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개

도국에서 빈곤 퇴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방 발전, 농업, 영양 및 식품 안전의 모든 수준 및 모든 측면에 있어 여성의 역할 증대는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방 발전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한 식품 생산의 증가 및 식품 안전의 증대에 대하여 통합된 접근법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세계 식량회의(World Food Summit)의 결과 및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제 11조 하의 국가 당사국들에 대한 의무에 따라 빈곤을 처리하는 조치들과 공동으로 식품 안전을 증진하고 기아를 퇴치함으로써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 비율을 반감하는 밀레니엄 선언 목표를 달성하고 가족의 건강 및 복리에 적절한 생활 수준 권리를 실현한다.
- (b) 재생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사회-경제·환경 가능성의 통합된 평가에 기반한 통합된 토지 관리 및 용수 이용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하고, 토지 및 수자원의 양과 질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 당국 및 공동체의 능력을 강화한다;
- (c) 민물,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도록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 (d) 토착 및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접근법을 통하여 농업, 임업, 습지, 어장 및 양식 어업에 있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토지 생산성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e) 적절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침적토(silt), 토지 퇴화 및 염분 증가로부터 오아시스를 보호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한다;
- (f)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모든 측면 및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한다;
- (g) 관련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저비용 기술과 같은 우수 실행의 농부들간(farmer-to-farmer) 교환을 촉발하도록 국가 연구 및 보급 서비스

- (extension services)와 농부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 관행에 대한 기존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다;
- (h) 지방 계획 및 개발에 있어 토착 자원 관리 체계를 보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남성 및 여성의 동등한 기부를 지원하는 조치를 제정한다;
- (i) 서로 상이한 국가 법 및/또는 토지 접근 및 보유 시스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토지 및 수자원 이용권을 보증하고 토지 소유의 법적 안전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법률을 이행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 개혁에 착수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j)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서 농업 연구, 자연자원 관리 능력 및 농업 공동체로의 연구 결과 보급을 강화하도록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공공 분야 재정의 하락 추세를 역전시키고, 적절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민간 분야 투자 및 지원 노력을 증진한다;
- (k) 소규모 관개와 폐수 재활용 및 재사용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수자원 이용 및 품질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농업 기업 및 농부들에 대한 시장 기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 (l) 기존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부가 가치 농산품에 대한 신규 시장을 개발한다;
- (m) 환경 오염이 심각한 선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서 적절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오염지역(brown-field)의 재개발을 증가시킨다;
- (n) 부정적인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마약 작물의 불법 재배를 퇴치하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 (o) 토질 산출력 개선 활동 및 농업 해충 억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 (p)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및 식품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기존 이니셔티브의 조정을 강화 및 개선한다;
- (q) 국가들이 식량 및 농업의 식물 유전 자원에 대한 국제 조약(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을 비준하도록 요청한다;

- (r) 전통 및 토착 농업 체계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증진하고, 농업 생산의 토착 모델을 강화한다.

39. 토지를 복구 및 유지하고, 토지 퇴화로 인한 빈곤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막화 및 토지 퇴화의 원인에 대처하는 아프리카와 같이 심각한 가뭄 및/또는 사막화를 경험하는 국가(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에서 UN 사막화 방지 협약(the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이행을 강화한다.

- (a) 모든 수준에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자원, 기술 이전 및 능력 배양을 동원한다;
- (b) 지방 수준에서 비집중적 계획을 포함한 국제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협약 및 관련 계획의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도록 국가 행동계획을 공식화한다;
- (c) 협약 하의 계획 및 전략의 구체화 및 이행에 있어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조사 및 강화하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생물다양성 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및 사막화 방지 협약을 장려한다;
- (d) 토지, 수자원 및 임업 관리, 농업 및 지방 개발, 조기 경보체계, 환경, 에너지, 자연 자원, 건강 및 교육,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등과 같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막화를 예방 및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가뭄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통합한다;
- (e) 사막화 및 가뭄 관련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개선하도록 정보에 대한 지방 접근을 제공한다;
- (f) 제 2차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총회에서 UN사막화방지

- 협약(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성공적 이행에 대한 GEF 지원으로써 GEF 중점지원분야인 토지 퇴화(사막화 및 산림황폐)의 지정 (designation) 관련 GEF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따라서 행동계획의 구체화와 이행에 대한 자원을 제공 및 동원하는 GEF 및 협약의 글로벌 체계(Glob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의 보완 역할을 인지하면서,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의 특권 및 결정문을 고려하여 GEF를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으로 만들 것을 고려한다;
- (g) 관리 및 법 집행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목초지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한다.

40. 산악 생태계는 특정 생계를 지원하고, 중요한 유역 자원, 생물 다양성 및 독특한 동식물을 포함한다. 대다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며 개별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한 산악 발전의 환경·경제 및 사회적 요소들을 통합하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정책 및 접근법을 개발 및 증진한다;
- (b) 산림황폐(deforestation), 침식, 토지 퇴화, 생물다양성의 상실, 수류의 붕괴 및 빙하의 용해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c) 산악 지역사회가 직면한 불공평을 제거하도록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포함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gender sensitive)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한다;
- (d) 특정 산악의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개별적 훈련 프로그램과 국내 및 국제 시장, 통신, 운송 계획에의 접근 향상을 포함하여 다양화 및 전통적 산악 경제, 지속가능한 생계 및 소규모 생산 체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e) 모든 발전 이니셔티브에서 산악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토착 지식, 유산 및 가치를 통합하는 결정에 있어 산악 공동체의 완전한 참여 및 개입을 증진한다.

다;

(f) 2002년 산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Mountain 2002)의 정신을 고려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적용된 연구 및 능력배양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지원을 동원하고,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서 산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계획 및 프로그램을 통한 산악 거주민들의 빈곤에 대처한다.

41. 지역사회의 문화 및 환경 안전성을 유지하고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및 자연 유산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인구의 관광자원으로부터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2002년 생태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2002), 2002년 UN 문화유산의 해(UN Year for Cultural Heritage in 2002), 2002년 세계 생태관광 정상회의 및 퀘벡 선언(World Eco-tourism Summit 2002 and its Quebec Declaration), 그리고 세계관광기구에서 채택한 세계관광윤리규범(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as adopted by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정신을 고려하여 비소모성(non-consumptive) 및 생태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증진한다. 지방 및 지역사회의 강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및 능력 배양을 증진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모든 수준에서 국제 협력, 해외직접투자(FDI), 및 공공-민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 (b) 환경,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이 생태관광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토착 및 지방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생태관광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보장하며, 관광 개발 및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이해관계자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c) 국내 관광을 개선하고 기업 발전을 자극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개발 및 투자와 관광 인식 프로그램(tourism awareness programme)을 지원하도록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d) 세계관광기구 및 기타 관련 기구의 지원으로 전통, 문화 및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부정적 영향 및 위험성을 보장하면서, 관광객의 방문을 유인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경영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 (e) 시장 및 상업 정보에의 접근 촉진을 통한 경제활동의 다양화와 특히 중소기업의 신흥 지방 기업의 참여를 증진한다.

42.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생물다양성은 지구, 인간복리와 생계 및 문화적 안전성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현재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전례없는 비율로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주민이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 15조에 따라 유전 자원 출처 국가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역전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기인한 이익의 공평·공정한 분배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생물다양성 협약 세 가지 목표의 더욱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이행과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현 비율의 상당한 감소 달성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신규 및 추가 재정 및 기술 자원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국가 및 국제 재정기구의 경제 분야 프로그램 및 정책에 있어 국제, 지역 및 국가 분야 및 분야간(cross-sectoral) 프로그램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통합시킨다;
- (b) 상이한 생태계, 분야 및 주제 영역 관련 전반적(cross-cutting) 이슈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진행 작업을 증진한다;
- (c) 공통의 책임 및 관심사에 대한 개별적 위임사항과 관련하여 공동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생물다양성 협약과 기타 다자간 환경협정간의 효과적인

시너지를 장려한다;

- (d)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에 있어 국가, 지역 및 국제 행동계획을 통하여 활동 프로그램과 결정문의 활발한 탐구(follow-up)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이의 조항들을 이행하고, 생물다양성의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 관련 분야간 전략,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의 생물다양성 및 이의 조항의 통합을 강화한다;
- (e) 생물다양성 협약의 진행 작업 구체화에 따라 생태계 접근법의 광범위한 이행 및 추가 개발을 증진한다;
- (f) 재정 자원 및 기술의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로의 전달을 통하여 생태계, 세계문화유적지(World Heritage sites)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국제 지원과 협력을 증진한다;
- (g)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필수적인 분쟁지역(hot spot)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증진 및 지원하고, 국가 및 지역의 생태학적 네트워크와 연결통로(corridors)의 개발을 증진한다;
- (h) 토착 및 지역사회 기반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을 강화하도록 개도국으로의 능력 배양을 포함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i)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인 유해 생물유입(invasive alien species)을 억제하는 국가, 지역 및 국제 노력을 강화하고, 모든 수준에서 유해 생물유입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한다;
- (j) 국가 입법에 근거하여 전통 지식, 혁신 및 관행의 보유자인 지역 및 토착 지역 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러한 지식 보유자의 승인 및 개입에 따라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이용에 대한 상호 합의된 협약의 이익 공유(benefit sharing)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k)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 이행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 및 이용하는데 특히 청소년, 여성 및 토착 지방 지역사회의 개별적 역할을 인지하도록 장려한다;

- (l) 전통 지식 이용과 관련하여 토착 지방 지역사회의 결정문 및 정책 결정에의 효과적인 참여를 증진한다;
- (m)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가 우선 순위 및 입법에 따라 국가의 독자적인 시스템 및 전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장려한다;
- (n)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입법, 행정 혹은 정책 조치들과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상호 합의된 협약에 따른 계약 및 기타 협정들을 개발하고 기안하는 경우 당사국들을 지원하는 정보(input)로써 생물다양성 협약 이용에서 기인한 유전 자원으로의 접근 및 공평·공정한 이익 공유에 대한 본 지침(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of the CBD)의 광범위한 이행 및 지속적인 작업을 증진한다;
- (o) 유전 자원의 이용에서 기인한 이익의 공평·공정한 공유를 증진 및 보호하도록 국제 레짐인 본 지침(Bonn Guidelines)을 명심하면서 생물다양성 협약의 틀 내에서 협상한다;
- (p) 지적 재산권과 유전 자원, 전통 지식 및 민속에 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 위원회(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의 제 8조 (j)항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임시 개방 실무그룹(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에서 현행 과정의 성공적인 결론을 장려한다;
- (q) 전문가 교환, 인적 자원 훈련 및 연구 지향 제도적 능력 개발을 포함한 생물공학(biotechnology) 및 생물안전성에 대한 과학 및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의 제 15조 및 19조에 따라 유전 자원에 기반하여 생물공학으로부터 비롯된 결과 및 이익에의 접근을 위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증진한

다;

- (r) 관련 협정의 결정문에 따라 시너지 및 상호 보완을 강화하도록, 도하 각료선언(Doha Ministerial Declaration)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생물다양성 협약과 국제무역 및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의 의무들간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s) 지구 분류학 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의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증진한다;
- (t) 아직 비준하지 아니한 모든 국가들이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및 기타 생물안전성 관련 협정을 비준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비준한 국가들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하고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기술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43. 산림 및 수목은 지구 표면의 약 1/3에 걸쳐있다. 천연 및 조성 산림과 목재 및 비목재(non-timber) 생산품의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빈곤을 퇴치하고 산림황폐(deforestation)를 줄이며 산림의 생물다양성 및 토지, 자원의 퇴화의 손실을 중단시키고 안전 식수 및 입수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식품 안전과 접근을 개선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천연 및 조성 산림과 수목 모두의 복합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지구 및 인류 복리에 기여한다. 민간 분야, 토착 지역 지역사회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관련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통한 국가 및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임업관리 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목표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통합된 접근법으로 임업 분야 및 기타 분야들간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 정치 안전의 우선 순위로써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를 보증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정치적 공약을 강화한다;
- (b)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

- 하는 핵심 정부간 메커니즘으로써 UN 산림 포럼(UN Forum on Forests)을 지원하여 산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한다;
- (c)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국내 산림 법 집행 및 산림 생물자원을 포함한 임업 생산품의 불법 국제거래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가 입법의 집행 관련 인적 및 제도적 능력 배양을 제공한다;
- (d) 지속가능한 목재 수확을 이루는 수단을 증진 및 촉진하고, 재정 자원의 제공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 및 개발을 촉진하도록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비지속적인 목재 수확 관행을 처리한다;
- (e) 현재 빈곤 및 산림전용의 가장 높은 비율을 경험하면서 영향받은 정부가 국제 원조를 환영하는 일부 국가들의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 및 이행한다;
- (f) 재정 자원의 제공,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 무역, 능력 배양, 모든 수준에서의 산림 법 집행 및 거버넌스, 그리고 정부간 산림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IPF)/ 정부간 산림 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s: IFF) 조치 제안서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 이행을 위한 통합된 토지 및 자원 관리 등을 촉진하도록 공동 협력 및 국제협력을 창출하고 강화한다;
- (g) 국가 및 산림 협력(Collaborative Partnership on Forests)의 조치에 대한 IPF/IFF의 제안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2005년 진전상황 평가에 기여하도록 포럼에의 보고 노력을 강화한다;
- (h)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토착 및 공동체 기반 임업 관리체계를 인지하고 지원한다;
- (i)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개입으로 포럼, 협력 회원국 및 기타 산림 관련 과정 및 협약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종류의 산림 생물다양성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확대된 조치 지향 작업 프로그램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s expanded action-oriented work programme)을 이행한다.

44. 광업, 광물 및 금속은 다수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중요하다. 광물은 근대적 생활에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광업, 광물 및 금속의 기여 확대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을 포함하여 광업, 광물 및 금속의 생산 주기동안 이들의 환경, 경제, 건강 및 사회적 영향과 이익에 대처하는 노력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 개발을 위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도록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현행 활동을 진행하면서 당사국 정부, 정부간 기구, 광업 기업 및 노동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간 협력 범위를 이용한다;
- (b) 국가 규칙에 따라 중요한 국경간 영향을 고려하여 재건(rehabilitation) 목적을 위한 폐쇄 이후에도 광산업의 생산 주기동안 광업, 광물 및 금속 개발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방 토착 지역사회 및 여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 (c) 소규모 광업을 포함한 광업 및 광물 가공에 있어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재정, 기술 및 능력 배양 지원의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광업 활동을 육성하고, 적절한 경우, 부가가치 가공을 개선하고, 과학 및 기술 정보를 개량하며, 퇴화된 부지를 개간 및 재건한다.

V. 세계화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45. 세계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한다. 우리는 세계화 및 상호의존이 세계 경제의 성장, 발전 및 전세계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무역, 투자 및 자본의 흐름과 정보기술을 포함한 기술 진보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을 인지한다. 동시에 심각한 금융 위기, 불안정, 빈곤, 배타성과 사회 내부 및 사회들간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도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는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함에 있어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는 충분히 포괄적이고 공평하여야 하며,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가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원조하여 이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공식화되고 이행되는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정책 및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에 이익이 되도록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 및 재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도하 각료선언에 포함된 작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와 몬트레이 합의의 이행을 지원한다. 개도국에 대한 이익상품의 시장접근 강화를 통하여 개도국들의 필요성 및 이익을 도하 각료선언 작업 프로그램의 핵심에 위치시키는 선언에 포함된 결정문을 환영한다;
- (b) 의사결정과정 및 제도구성이 공개적이며 투명하도록 국제 재정 및 무역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한다;
- (c) 생산성, 상품 다양성 및 경쟁성 개선 목적의 국제 협력 및 조치, 지역사회 기반 기업의 능력, 운송 및 통신 인프라 개발을 통하여 자유 무역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최빈국, 내륙지방 개도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 (d) 몬트레이 합의 제 64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ILO)를 지원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장려한다;
- (e) 기존 및 미래의 시장접근 기회를 이용하고 무역, 환경 및 발전간의 관계를 검사하도록 조정되고, 효과적이며, 목표로 정해진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전달을 강화한다.

45.bis. WTO 회원국들의 도하각료회의 결과를 이행하고,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강화하며, 개도국들의 필요성 및 이익을 WTO 작업 프로그램의 핵심에 위치시킴으로써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의 의미 있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45.ter. 정부간 합의 및 조치의 완전한 개발 및 효과적 이행, 국제 이니셔티브와 공공-민간 협력, 적절한 국가적 규제를 통해 리우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며, 모든 국가에서 기업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45.quater. 국가 및 재정 시장에서의 접근 용이성, 정확성, 시기 적절성 및 정보의 범위를 강화하는 공공-민간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도록 개도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다자간 및 지역 재정 기관이 이러한 목적으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45.quinque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 국제 재정기구 및 지역개발은행의 지원으로 선진국, 개도국, 시장경제 전환국가들간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간 지역 무역 및 협력 협정을 다자간 무역체계에 적합하게 강화한다.

45.sexties. 상호 합의된 기술 이전과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제공을 통하여 디지털 격차(divide)를 메우고, 디지털 기회를 창출하며, 발전을 위한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잠재성을 동력화 하도록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원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지원한다.

VI.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46.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은 인간이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생산성 있는 생활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전체 인구를 위한 건강 증진이 빈곤 퇴치를 요구하면서, 고도의 질병 확산이 없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여성 및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및 토착민들과 같은 사회의 취약층에 초점을 두어 질병의 원인 및 발전에의 영향에 대처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47. 관련 UN 회의, 정상회의 및 UN총회의 특별 회기의 보고서를 고려하면서 인권 및 기본 자유에 근거하고 국가법 및 문화적·종교적 가치에 일관되어,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치료할 목적에서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입수 가능한 방식으로 모두에 대한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적 건강 위협을 감소 하도록 건강 보호 체계의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가장 취약한 인구의 것을 포함한 건강 문제를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통합한다;
- (b) 건강 체계의 모든 수준에서 예방을 포함한 적당하고 효율적인 건강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적당한 가격의 필수적이고 안전한 약품, 면역 예방 서비스 및 안전 백신,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공평하게 증진한다;
- (c) 발전 위험성(development hazards)에 대한 건강 정보체계 및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한 모두의 건강을 위한 전략(Health for All Strategy)을 이행하도록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로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d) 건강 보호 서비스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증진한다;
- (e) 적절한 UN 기관의 개입에 따라 2010년까지 세계 기반의 개선된 건강 교양(health literacy)을 달성하도록 건강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 및 개발한다;
- (f) 2015년까지 2000년 대비 유아 및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까지 및 임산부의 사망률을 1/4까지 줄이고, 여아 및 아동간 불균형적이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 패턴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되도록 신속하게 선진국 및 개도국간 및 이들 내의 불균형을 줄이도록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 (g) 신규 백신의 개발, 건강 위협에의 노출 감소, 건강 보호 서비스, 교육, 훈련, 치료 및 기술에의 공평한 접근 증축, 빈곤층 건강의 부작용 대처를 통하여 영향받기 쉬운 취약한 인구의 연구 노력을 목표로 하고, 연구 결과를 공공 복리

이슈 우선 순위에 적용한다;

- (h) 국제법에 따라 전통 지식의 효과적인 보호를 증진하면서, 전통 지식 및 관행의 보관자로서 토착 및 지역사회를 인지하여 근대 의학과 공동으로 효과적인 전통 의학 지식 및 관행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을 증진한다;
- (i) 임신부 및 산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j) 세계아동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 UN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제 4차 세계 여성총회(the 4th World Conference on Women)와 각각의 회의 검토 및 보고서를 포함한 최근 UN 회의 및 정상회의의 위임사항과 결과에 따라 재생산 및 성 건강을 포함하여 적절한 연령 모든 개인들에 대한 건강한 생활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 (k) 건강 및 환경 연계성을 평가하는 국제 능력 배양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고, 인간 건강의 환경적 위협에 대응하여 더욱 효과적인 국가 및 지역 정책을 창출하기 위하여 획득된 지식을 이용한다;
- (l) 국가 개별적 상황 및 여성의 개별적 기술 필요성을 포함한 성 평등을 고려하면서 국제 재정 지원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공-민간 다분야 협력을 통해 안전 식수에 대한 기술과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지방 및 도시 지역의 공중위생 및 폐기물 관리를 이전하고 보급한다;
- (m) 직업성 사망(occupational death), 상해 및 질병을 감소시키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및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프로그램을 강화 및 증진하고, 공공 복리와 교육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적 복리와 공공 복리 증진을 연계한다;
- (n) 풍족하고, 안전하며,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품에 대한 유용성 및 접근을 개선하고, 소비자 건강 보호를 증진하며, 미량 영양소

결핍 이슈에 대처하고, 현행 국제적으로 합의된 위임사항과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이행한다;

- (o) 심장 혈관증, 암,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 상해, 폭력 및 정신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 및 건강 상태와 알코올, 담배,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트 및 무력증과 같은 파생 위험 요인들(associated risk factors)에 대처하도록 예방, 진흥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혹은 강화한다.

48. 최대 피해국가에서는 2005년까지, 세계적으로는 2010년까지 15-24세 연령의 청소년 및 여성들간 HIV 확산을 25%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 26차 UN총회 특별회기에서 채택된 HIV/AIDS에 대한 공약 선언(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에서 합의된 모든 위임사항을 합의된 기간 이내 이행하고, 말라리아, 폐결핵 및 기타 질병들을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을 이행한다.

- (a) 국가 예방 및 치료 전략, 지역 및 국제 협력 조치와 HIV/AIDS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특수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의 개발을 이행한다;
- (b) 가장 필수적인 국가들의 기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면서, AIDS, 폐결핵 및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 기금(Global Support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을 지원하도록 충분한 자원의 제공에 대한 공약을 이행한다;
- (c) 작업장의 조건을 개선하도록 자발적인 HIV/AIDS 및 노동 세계(world of work)에 대한 ILO 실행 규약(ILO code of practice)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 안전을 증진한다;
- (d) 생물 의학 및 건강 연구뿐만 아니라 신규 백신 및 약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HIV/AIDS, 말라리아, 폐결핵과 같은 빈곤층의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위하여 충분한 대중을 동원하고, 민간 재정 자원을 장려한다.

49. 다음을 이행함으로써 여성 및 아동에 주의하여 공해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기타 건강 영향을 감소시킨다:

- (a)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으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및 국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b) 휘발유의 납성분의 단계적 제거를 지원한다;
- (c) 청정 연료 및 근대 오염 통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 및 지원한다;
- (d)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리 및 난방의 기존 연료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도록 지방 지역사회에 입수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개도국을 원조한다.

50. 인간에 노출된 납성분 페인트 및 기타 원료에서 납성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특히 아동의 납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감독 및 감시 노력뿐만 아니라 납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제 51항은 삭제되었다]

VII.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52. 군소 도서 개도국은 환경 및 개발에 있어 특수한 경우이다. 도서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방침에 있어 지속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젠다 21, 군소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제 22차 UN 총회 특별회기에서 채택된 결정문에 분명히 강조된 부정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점차 제한 받고 있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지구환경금융(GEF) 중점 지원분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 및 국제 공동체의 능력배양 지원을 통한 적절한 재정 자원으로 행동계획의 국가 및 지역적 이행을 가속화한다;
- (b) 적절한 경우에 최근 구축된 카리브해 지역 수산 메커니즘(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등의 관련 지역 어업관리 조직과 태평양 중서부의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관리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등의 협정을 지원 및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경영을 추가 이행하고, 어업으로부터의 재정 수익을 증진한다;
- (c) 해양법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및 UNEP 지역 해양 프로그램의 맥락 내에서 연안 지역 및 배타경제수역, 대륙붕(적절한 경우 연안 한계선으로부터 200마일 이상의 대륙붕 지역 포함)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 관리 이니셔티브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한계를 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개별적 이니셔티브의 구체화를 통하여 군소 도서 개도국을 지원한다;
- (d) 다음의 개발 및 추가 이행을 위하여 능력 배양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한다.
 - (i)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의 작업 프로그램 내의 군소 도서 개도국-개별 구성요소(SIDS-specific components);
 - (ii) 지구환경금융 중점 지원분야를 통한 군소 도서 개도국을 위한 신선한 식수 프로그램;
- (e) 군소 도서 개도국에서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지구 행동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이행 목적의 이니셔티브를 2004년 까지 착수함으로써 폐기물 및 오염과 건강 관련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 예방 및 통제한다;
- (f)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맥락 내에서 세계 경제로의 통합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군소 도서 개도국이 채택한 정당한 근거(du

account)를 진행 협상 및 소규모 경제의 무역에 대한 WTO 작업 프로그램의 구체화를 통해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g) 문화 및 전통을 보호하고,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면서, 2004년까지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한다;
- (h) 포괄적 위험 및 위험성 관리, 재난 예방, 완화 및 준비에 대한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역사회와 적절한 국가 및 지역 조직을 지지하면서 군소 도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 극심한 기상 재해 및 기타 비상사태의 영향을 경감하도록 원조한다;
- (i)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제, 사회 및 환경 취약성 지표 및 관련 척도의 승인 및 후속 초기 운영화를 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 (j)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UNFCCC)의 위임사항에 따라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이성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적응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자원 및 협력을 동원하는 군소 도서 개도국을 지원한다;
- (k) 지적재산권 체제를 이행하도록 능력 및 제도적 합의를 구축하는 군소 도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한다;

53. 다음을 이행하여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절하고, 입수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의 유용성을 지원한다:

- (a) UN 체계 및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2004년까지 에너지 공급 및 서비스에 대한 진행과정을 강화하고 신규 노력을 지원한다;
- (b) 토착 자원 및 재생가능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개발 및 증진하고, 에너지 관리 영역의 훈련, 기술적 노하우 및 국가 제도 강화를 위한 군소 도서 개도국의 능력을 배양한다;

54. 능력을 개발하도록 군소 도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다음을 강화한다:

- (a) 건강관리(healthcare)에의 공평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 (b) HIV/AIDS, 폐결핵, 당뇨병, 말라리아 및 뎅기열(dengue fever)과 같은 전염 및 비전염성 질병을 퇴치 및 통제하도록 지속적이고 입수 가능한 방식으로 필수 약품 및 기술을 이용하게 하는 건강 시스템;
- (c) 폐기물 및 오염을 줄이고 관리하는 노력과 지방과 도시 지역에서 식수 및 공중위생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능력 배양;
- (d) 본 문서 제 II장에 명시된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노력.

55. UN총회 결의문 S-22/2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베이도스 행동계획 이행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검토에 착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제 57차 UN 총회가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회의를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VIII.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frica)

56. UN 환경개발회의 이후,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부터 제외된 채로 남아있다. 빈곤은 여전히 주요 도전으로 남아있으며, 대다수 대륙 국가들은 세계화의 기회로부터 완전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대륙의 주변화를 악화시켰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노력은 분쟁, 불충분한 투자, 제한된 시장 접근 기회 및 공급 분야 제한, 비지속적인 부채 부담, 역사적으로 감소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준과 HIV/AIDS의 영향으로 인하여 저지되었다.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는 이러한 특수 도전들에 대처하도록 국제 공동체의 공약을 재생하여야 하며, 아프리카에서 아젠다 21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행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신개발협력(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은 아프리카 국민들에 대한 아프리카 지도자들간의 공약이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 공동체간 협력이 빈곤 퇴치를 위한 공유된 공통 비전(shared and common vision)의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세계 경제 및 정치 통일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개별적·집합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에 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모든 아프리카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대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국제 공동체는 아프리카 신개발협력(NEPAD)을 환영하며, 동경 아프리카 발전 국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의 지원에 의한 남남 협력의 이익을 이용함으로써 비전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서약한다. 또한 국제 공동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소유하고 추진하며, 빈곤축소 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와 같이 빈곤축소전략을 구체화하는 기타 현행 발전 틀을 지원하도록 서약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은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소지역,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여건 조성을 창출하고, 평화, 안정 및 안보, 분쟁 해소 및 예방, 민주주의, 건전한 거버넌스, 발전 및 성 평등권을 포함한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존중을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한다;
- (b) 빈곤축소 전략문서와 같은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프로그램 및 국가 소유의 지도 전략에 따라 재정지원, 기술 협력 및 제도 협력, 지역, 소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인적 및 제도적 능력 배양을 통하여 아프리카 신개발협력(NEPAD)의 비전 이행과 기타 구축된 지역 및 소지역의 노력을 지원한다;
- (c) 아프리카로의 기술 개발, 이전 및 보급을 증진하고, 추가적으로 아프리카 우수 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 및 지식을 개발한다;

- (d)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 및 기술 기관 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을 개발하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한다;
- (e) 빈곤 축소를 위한 국가 소유의 주도전략의 맥락에서 교육을 증진하는 국가 프로그램 및 전략의 개발을 지원하고, 어느 곳의 아동이라도 소년과 소녀가 동등하게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하게 수료하고, 소년과 소녀가 국가 필요성 관련 모든 교육 수준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것을 2015년까지 보장하는 밀레니엄 선언에 수록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관련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의 달성을 지원할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교육 연구 기관을 강화한다;
- (f) 핵심 인프라의 개발, 기술에 대한 접근, 연구 센터들의 네트워크, 수출 상품에 대한 가치 부가(adding value), 기능 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시장 접근 강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의 결합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 생산성, 다양성 및 경쟁성을 강화한다;
- (g) 투자를 유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투명한 규제 및 관리 틀과 부가 가치(value addition), 광범위한 기반의 참여,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시장 접근 증가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산업 분야, 특히 광업, 광물 및 금속분야의 기여를 강화한다;
- (h)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입법 정책 및 제도적 개혁에 착수하고 환경 영향력 평가에 착수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다자간 환경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i) 계획, 프로그램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개발하고,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 방안(the African Process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s) 결과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자원을 동원한다;
- (j) 다음을 이행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 (i) 20년 이내 특히 지방에서 아프리카 인구의 최소 35%의 에너지에 대한 안정된 접근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신개발협력 목표를 이행하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프로그램, 협력 및 이니셔티브를 구축 및 증진한다;
 - (ii) 청정하고 효율적인 천연가스의 이용 증진 및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 증가를 포함한 에너지에 대한 기타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지방 및 도시 주변부 지역에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성 및 선진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 (k)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극심한 기상 재해,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이성 관련 적응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자원을 동원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고, 국가 기후변화 전략 및 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에 따라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 (l)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연결성(connectivity)을 증진하는 입수 가능한 운송 체계 및 인프라를 개발하도록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한다;
 - (m) 위의 제 40항에 부연하여, 아프리카의 산악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에 대처한다;
 - (n) 아프리카의 식림(afforestation) 및 재식림(reforestation)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과 산림황폐 방지 및 임업 분야 정책·법률 틀을 개선하는 조치들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57. 국가 수준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CCD)을 이행하는 아프리카의 노력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토착 지식 체계를 토지 및 자연 자원 관리 관행으로 통합시킨다. 국가 프로그램의 이행 능력을 개발하도록 토지 퇴화를 처리하는 농업 관행 개선을 통하여 지방 지역사회에 대한 보급 서비스를 개량하고, 더 나은 토지 및 유역 관리 관행을 증진한다;

58.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체계를 개발 및 강화하기 위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동원한다.

- (a)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증진한다;
- (b) HIV/AIDS, 말라리아, 폐결핵 및 트리파노소마증(Trypanosomiasis)과 같은 전염성 질병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야기된 비전염성 질병을 퇴치하고 통제하도록 지속적이고 입수 가능한 방식으로 필수 약품 및 기술을 유용하게 한다;
- (c) 의료진 및 준의료진(paramedical)의 능력을 배양한다;
- (d) 전통 의학을 포함한 토착 의료 지식을 증진한다;
- (e) 에볼라(Ebola) 질병을 연구 및 통제한다.

59. 모든 수준에서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가장 영향 받는 희생자로서 여성 및 아동과 같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일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이익과 노력을 방해하고 대부분의 경우 흔적을 없애는 아프리카의 분쟁을 인지하면서, 그들의 인도주의 및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자연 재해 및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 (a) 관측 및 조기 경보체계, 평가, 예방, 준비, 대응 및 복구를 포함한 효과적인 재해 관리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도 및 인력 등 능력을 강화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b)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연 재해 및 분쟁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을 보다 잘 처리하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 (c)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회피하도록 분쟁의 예방 및 해결, 관리 및 완화와 최근 분쟁 상황에의 조기 대응을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한다;
- (d) 피난민의 수용 및 정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생태계 및 거주지를 포함한 인프라와 환경을 복귀하는데 있어 본국(host countries) 피난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60. 모든 수준에서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통합된 수자원 개발을 증진하고, 이로 인한 상류 및 하류의 이익, 모든 이용에 걸친 수자원의 개발 및 효과적 관리, 수질 및 수상(aquatic) 생태계의 보호를 최적화한다.
- (a)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역적 여건을 존중하고, 집행을 감독하며,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책임성을 개선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국가 규제 틀 범위 이내 빈곤층의 필요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수자원 공급 및 공중위생에 있어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가계 수준에서 가계 식수, 위생 교육, 개선된 공중 위생 및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비상 급수(critical water supply), 그물망(reticulation) 및 처리 인프라를 개발하고, 지방 및 도시 지역에서 수자원 및 공중 위생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능력을 배양한다;
 - (b) 위의 제 25항에 따라 모든 주요 수역에 대하여 통합된 하천유역 및 유역관리 전략과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한다;
 - (c) 계획, 연구, 감독, 평가 및 집행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의 준비(arrangements)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의 지역, 소지역 및 국가 능력을 강화한다;
 - (d) 오염에 대비한 지하수 및 습지대 생태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물 부족의 경우 수자원을 보호하고, 에너지 효율적, 비용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해수의 탈염화, 빗물 수확 및 물의 재활용 등의 비전통적 수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61. 모든 수준에서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2015년까지 기아에 고통받는 인구 비율을 반감하도록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밀레니엄 발전 목표 합의(agree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및 식품 안전의 상당한 개선을 달성한다.

- (a) 농업 분야를 재건하고 지속적으로 어업을 개발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구 프로그램 및 발전 계획을 포함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필요성에 따라 인프라, 기술 및 보급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5년까지 국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맥락 내에서 식품안전 전략의 개발 및 이행 과정 중에 있어야 한다;
 - (b) 법률 규칙을 존중하고 국가법에 명시된 토지 및 토지소유권 개혁 과정을 통해 토지 소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자원 권리 및 책임성을 명백하게 하고, 모두에 대한 신용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며, 특히 여성들에 있어 경제 및 사회적 권한부여(empowerment)와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생태학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여성 생산자가 토지 상속권 등의 분야에서 의사 결정자 및 소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c) WTO 협상의 결과에 관계없이 도하 각료선언의 틀 내에서뿐만 아니라 특혜 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의 틀 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최빈국 원산지로부터의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한다;
 - (d) 아프리카 국가들간 역내 무역 및 경제 통합을 추진하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시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인 및 증진한다;
 - (e) 동물 질병의 진보적·효율적 통제를 목표로 하는 가축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62. 국가 화학 제품 프로필, 화학 제품 관리에 대한 지역 및 국가 틀과 전략, 화학제품 중점 지원분야(focal point)의 구축을 구체화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도록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해 화학 제품 및 폐기물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한 화학 제품의 관리를 달성한다.
63. 아프리카의 통합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접근 인프라 및 기술 이전과 적용에 대

한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디지털 기회를 창출한다. 투자를 유인하는 여건 조성을 창출하고, 필수 기관들을 연계하는 현행 및 신규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속화하며, 정부 및 통상 프로그램과 기타 국가 경제 및 사회 생활의 국면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을 자극한다.

64. 다음의 조치들을 통하여 사회, 경제 및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달성하도록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한다.

- (a) 탐험 관광, 생태 관광 및 문화 관광과 같은 아프리카 관광 상품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강조하면서 지역, 국가 및 소지역 수준에서 계획을 이행한다;
- (b) 생태계 접근법에 따라 생태계 보호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증진하도록 국가 및 국경간 보호 지역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 (c) 지방 전통 및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 자원 관리와 환경 관광에 있어 토착 지식의 이용을 증진한다;
- (d) 지역사회의 전통, 문화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면서 지역사회가 관광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 최대한의 이익을 얻도록 지원한다;
- (e) 생물다양성 협약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에 관한 국제무역협정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뿐만 아니라 지역별 생물다양성 협약과 같은 국가들이 당사국인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하에서 국가들이 소유한 공약에 따라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 보존,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평하고 동등한 분배를 지원한다.

65. 지속적으로 도시화되는 지역 및 인간 정착지의 국가 및 지역 제도 능력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간정주의제(Habitat Agenda)와 이스탄불 선언(Istanbul Declaration)을 이행하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충분한 주거지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도시 및 기타 인간 정착지의 효율적·

효과적 거버넌스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UN인간정주계획/UN환경계획 아프리카 도시를 위한 물관리 프로그램(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UNEP managing water for African cities programme)을 강화한다.

VIII.bis 기타 지역의 이니셔티브 (Other Regional Initiatives)

66.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타 UN 지역 및 지역, 소지역, 초지역(transregional)적 포럼 내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개발되고 있다. 국제 공동체는 이미 이루어진 노력 및 결과를 환영하고, 이러한 점에서 지역간, 지역 내 및 국제 협력을 장려하면서 모든 수준에서 추가 개발을 위한 조치들을 요청하며, 역내 국가들의 추가적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표명한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67. 지속가능한 발전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01년 10월 리우에서 승인된 2002 요하네스버그의 진행의 행동 강령(Platform for Action on the Road to Johannesburg 2002)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지역 조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의 특수성, 공유된 비전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지역의 지도자들에 의해 착수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윤리를 고려하면서, 생물다양성, 수자원, 취약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들, (건강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측면들, (에너지 등의) 경제적 측면들, (능력 배양, 지표 및 시민사회의 참여 등의) 제도적 준비 등과 같은 상이한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의 채택을 목표로 한다.

68. 이니셔티브는 남남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재정 기관을 포

함한 다자간 및 지역 조직들의 지원에 의존하는 역내 국가들간 조치 개발을 구상한다. 협력을 위한 틀로써 이니셔티브는 정부 및 모든 주요 단체들과의 협력에 개방되어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69.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2015년까지 빈곤 인구비율의 반감 목표를 명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프놈펜 강령(the Phnom Penh Reg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아시아 지역이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빈곤 인구가 세계 최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계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이다.

70. 지역적 강령(Regional Platform)은 후속 조치를 위한 7가지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능력배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빈곤 감소; 청정 생산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토지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민물 자원의 보호 및 관리와 민물에 대한 접근; 해양, 연안 및 해상 자원과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대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들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로 조직된 제 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 및 청정환경을 위한 기타큐슈 이니셔티브(Regional Action Programme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Kitakyushu Initiative for a Clean Environment)와 같은 국가 전략과 관련 지역 및 소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채택될 것이다.

서부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est Asia Region)

71. 서부 아시아 지역은 부족한 수자원 및 제한된 비옥 토양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더욱 향상된 부가 가치 상품의 지식 기반 생산으로 진보를 이루었다.
72. 지역 준비회의(regional preparatory meeting)는 다음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였다: 빈곤 완화, 부채 경감; 그리고 통합된 수자원 관리,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 통합된 연안지역 관리, 토지 및 수자원 오염 통제를 포함하는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UN유럽경제위원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ion)

73.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위한 UN유럽경제위원회 지역 각료회의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ional ministerial meeting 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역이 구체적 조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세계적 노력에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역내 국가들의 상이한 경제 발전 단계로 인하여 아젠다 21을 이행하는데 서로 다른 접근법 및 메커니즘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상호 강화적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중심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은 각료 성명서(Ministerial Statement)의 제 32-46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유럽경제위원회 지역의 우선 순위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74.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역의 위임사항을 추진하는 지역, 소지역 및 초지역 적 차원에서의 진행 중인 노력이 있다. 여기에는 유럽환경방안(Environment for

Europe process); 2003년 5월 키에프에서 개최될 제 5차 유럽경제위원회 각료 회의(the 5th ECE ministerial conference); 동유럽 12개국의 환경 전략 개발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12 countries of Eastern Europe);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Caucasus and Central Asia); 중앙아시아 아젠다 21(Central Asian Agenda 2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OECD활동(OECD work on sustainable development),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그리고 오르후스 협약(the Aarhus Convention), 알파인 협약(the Alpine Convention), 환경 협력에 대한 북미 위원회(the North Commissio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경계 수역 조약(Boundary Water Treaty), 북극 위원회의 이카루이 선언(Iqaluit Declaration of the Arctic Council), 발트해 아젠다 21(the Baltic Agenda 21) 및 지중해 아젠다 21(the Mediterranean Agenda 21)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지역 및 소지역 협약과 과정을 포함한다.

IX. 이행 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75. 밀레니엄 선언뿐만 아니라 본 행동계획에 포함된 아젠다 21의 이행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의 달성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 리우 원칙, 특히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고려하면서, 각각의 국가가 그들 발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발전 전략이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국가들 및 기타 국제공동체의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는 지구적 협력의 정신으로 건강 및 지구 생태계의 안전성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복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세계 환경 악화에의 상이한 기여에 대하여, 국가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 있다. 선진국은 그들의 사회가 세계 환경에 제기한 압력과 그들이 지배한 기술 및 재정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적으로 추구함에 있어 선진국이 분담한 책임을 인정한다."

밀레니엄 선언 및 아젠다 21뿐만 아니라 본 행동계획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는 개도국 개발의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 개선된 무역 기회, 상호 합의된 양허 혹은 특혜 기반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교육 및 인식증진, 능력 배양, 이러한 목표 및 이니셔티브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합의된 기간 이내 의사결정 및 과학능력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도록 특히 개도국에 대한 신규 및 추가 재정자원을 통해 몬트리얼 합의에서 구체화된 바에 따른 재정자원 흐름의 상당한 증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진전과정은 제 3차 UN 최빈국 회의(the Third UN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회의(Global Conference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와 개발재원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및 제 4차 WTO 각료회의 등의 1992년 이후의 관련 국제협정에서 채택된 조치 계획과 같은 주요 UN 회의의 결과를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과정의 일부로써 이에 의거하여 국제공동체가 이행한다는 점을 필요로 한다.

76. 재정자원의 효과적 이용의 동원 및 증가와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국가 및 국제 경제적 조건의 달성은 21세기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기가 되도록 보장하는 일차적 조치가 될 것이다.
77. 성장,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통의 수행에 있어, 결정적인 도전은 공공 및 민간 국내 저축을 동원하고, 생산성 있는 투자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며, 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 내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핵심 임무는 거시경제정책의 효용성, 응집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여건의 조성은 국내 자원의 동원, 생산성 증가, 자본 이동의 감소, 민간분야의 장려, 국제투자

및 지원의 유인과 효과적인 이용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 창출 노력에는 국제 공동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78. 다음의 활동으로 인프라의 개발을 포함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FDI)의 흐름 증가를 촉진하며, 개도국이 해외직접투자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익을 강화한다.

- (a) 동원된 국내 자원을 보충하도록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및 기타 우선 순위 영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흐름과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흐름에 있어 상당한(significant) 증가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국내 및 국제 조건을 창출한다;
- (b) 지속가능한 발전에 수단이 될 수 있는 수출 신용을 통해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한다;

79. 개도국이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적개발원조(ODA)의 실질적인 증가 및 기타 자원이 필수적임을 인지한다.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활동으로 원조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국내적·국제적으로 정책 및 발전 전략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 (a) 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 몇몇 선진국이 공고한 증가된 공적개발원조 의무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행하지 아니한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ODA로써 GNP의 0.7%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하며, 2001-2010년간 최빈국에 대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01-2010)의 제 83항에 제시된 바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선진국의 ODA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우리는 또한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결과에 따라 발전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ODA를 효과적으로 이용함

으로써 이루어진 진전상황에 개도국이 의지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모든 기부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ODA 기부금이 목표를 초과, 도달 혹은 목표를 향하여 증가하고 있는 기부자를 치하하며,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기간의 검토 착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b) 빈곤퇴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ODA를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피원조국 및 원조공여국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를 장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혜국 소유권의 국가 발전 필요성 및 목표를 고려하여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ODA 지출 및 조달을 개도국의 필요성에 더욱 유연하고 적합하게 하며, 개도국이 소유 및 추진하고 청구에 따른 원조 조달 수단으로써 빈곤축소 전략문서를 포함한 빈곤축소전략을 구체화하는 발전 틀을 이용하도록, 최고 수준에서 운영절차를 조화시키는 몬트레이 합의 제 43항에 따라 다자간·양자간 재정 및 개발 제도의 노력을 강화한다.

80.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현행 재정 메커니즘 및 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 (a) 현행 국제 재정구조를 개혁하고, 개도국의 국제경제 의사결정 과정 및 제도에의 효과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재정 표준 및 규범의 공식화에서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참여를 제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평하며, 포괄적인 체계를 육성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한다;
- (b) 국제금융환경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금융 흐름에 관한 투명성 및 정보를 개선하도록 피원조국 및 원조공여국의 조치를 증진한다. 단기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가 중요하며 따라서 고려하여야 한다;
- (c)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 프로그램 및 계획을 위한 국제기구 및 기관에 대한 기금이 시기 적절하고, 더욱 확실하며, 예측 가능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도록 활동한다;
- (d) 초국적 기업, 민간 재단 및 시민사회 기구를 포함한 민간 분야가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 (e) 메커니즘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면서 소규모 기업 및 중소기업 지역사회 기반 기업들에 이익이 되고, 그들의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개도국과 시장 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신규 및 현행 공공/민간 분야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81. 지구환경금융(GEF)의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제 3차 재원보충을 환영하며, 이는 신규 및 현행 중점지원분야의 기금지원 필요조건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개도국을 비롯한 피원조국의 필요성 및 관심에 지속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또한 GEF가 핵심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추가 기금을 이용하고,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기금의 관리를 개선하며, 계획 주기를 단순화하도록 장려한다.

82. 몬트레이 합의 제 44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전 목표를 위한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할당의 이용 제안을 주시하면서, 신규 공공 및 민간의 혁신적인 재정자원이 개도국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 목표를 위한 이러한 자원을 산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83. 개도국, 특히 채무과다 빈곤국의 부채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정된 부채 경감, 부채 말소 및 기타 혁신적인 메커니즘과 같은 조치를 통해 비지속적인 부채 부담(unsustainable debt burden)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채무국 및 채권국은 비지속적인 부채상태의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외 부채 경감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 달성에 일관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을 자유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부채 유지가능성(debt sustainability)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파리·런던 클럽 및 기타 관련 포럼 내에서 부채 경감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외부채를 다루는 몬트레이 합의의 제 47항에서 51항까지를 지지한다. 부채 경감 협정은 다른 개도국에 불공정한 부담을 부

과해서는 아니 된다. 최빈의 부채 취약국가(the poorest, debt-vulnerable countries)를 위한 보조금(grants) 이용의 증가가 필요하다. 국가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핵심 요소로써 대외 채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국가들을 장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을 이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a) 미불 부채액을 삭감하도록 착수된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극심한 교역조건(terms-of-trade) 충격으로 야기되거나 분쟁으로 영향받은 비지속적인 부채 부담의 개도국의 경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감안하면서 추가 재원을 통해 완전하게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강화된 채무과다 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이니셔티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한다;
- (b) 이를 행하지 아니한 모든 채권국의 채무과다 빈곤국 이니셔티브에의 참여를 장려한다;
- (c) 적절한 경우, 부채로 인한 위기 해결에 있어 민간 분야의 개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 방식으로 비지속적인 부채를 재구성하도록 관련 국제 포럼에 국제 채무국 및 채권국을 함께 초청한다;
- (d)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한 몇몇 비채무과다빈곤 저소득 국가들(non-HIPC low-income countries)의 부채 유지가능성 문제를 인지한다;
- (e) 중간 소득 국가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포함한 개도국의 부채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도록 혁신적인 메커니즘 연구를 장려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채 스왑(debt-for-sustainable-development swaps)을 포함한다;
- (f) 부채 경감을 목적으로 제공된 자원이 개도국 이용 목적의 ODA 자원으로 전환되지 아니함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원조 공여국을 장려한다.

84.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빈곤을 퇴치하는데 무역이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WTO 회원국들이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작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개도국 및 특히 최빈국의 경제 발전 필요성에 적당한 세계 무역의 성장에 있어 그들의 할당 몫을 확보하도록, 우리는 WTO 회원국이 다음의 조치에 착수하도록 권고한다.

- (a) 몬트레이 합의에 따라 WTO 회원 가입에 신청한 모든 개도국, 특히 최빈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가입을 촉진한다;
- (b) 적절한 무역 정책을 각각의 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주류화 하는 선진국 및 개도국에 의한 중요 공약으로써 도하 작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c) 실질적인 무역 관련 기술 지원 및 능력배양 조치를 이행하고, WTO 관련 기술 지원 및 능력 배양에 대한 견전하고 예측 가능한 근거를 보장하는 중요 진행 조치로써 제 4차 WTO 각료 회의 이후 구축된 도하 발전 아젠다 세계신탁기금(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을 지원한다;
- (d) 능력 배양, 성장 및 통합에 대한 WTO 기술협력 신전략(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for Capacity-Building, Growth and Integration)을 이행한다;
- (e) 최빈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의 통합 틀(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이행을 완전하게 지원하고, 발전 파트너들이 도하 각료선언에 따라 통합 틀 신탁기금(Trust Fund of the Framework)에 대한 기부를 상당히 증가시키도록 독려한다.

85. 도하 선언뿐만 아니라 도하에서 채택된 관련 결정문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러한 협정을 이행하는 개도국이 직면한 곤경 및 자원 제한을 포함하여 몇몇 WTO 협정 및 결정문의 이행과 관련 개도국이 제기한 이슈 및 문제점에 대처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

86. 도하 각료선언 제 45항을 고려하면서 다음 조치들의 이행을 통해 개도국 및 특히 최빈국에 대한 수출 이익 상품의 시장 접근 관련 도하 각료선언에서 이루어진 공약을 완수하도록 WTO 회원국들에 요청한다.

- (a) 도하 각료선언 제 44항에 따라 모든 특혜 및 차별 조치 조항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운영 가능하도록 이들 조항을 검토한다;
- (b) 개도국에 이익이 되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정점(tariff peaks), 고관세 및 관세 상승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축소 혹은 제거를 포함하여 비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거나 적절한 경우 제거를 목표로 한다. 생산품 적용범위는 포괄적이며 우선적으로 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하 각료선언에 따라 감축 공약의 완전한 호혜주의 이하로 개도국 및 최빈국의 특수한 필요성 및 이익을 협상에서 고려한다;
- (c) 개도국에 대한 특혜 및 차별 조치 조항은 모든 협상 요소 중 핵심 부분이 되고, 특혜 및 공약 예정표와 적절한 경우 협상된 규칙 및 질서 내에서 구체화 되어, 운영상 효과적으로 하고 개도국이 식품 안전 및 지방 발전을 비롯한 개발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고려하도록 합의하면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 보조금의 모든 형태의 단계적 폐지 목적의 감소 및 무역 왜곡적 정부 지원의 실질적 감소를 목표로 하여, 협상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도하 각료선언 제 13항 및 14항에 언급된 농산물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 20조에 따라 착수된 포괄적 협상을 위한 공약을 수행한다. WTO 회원국이 제출한 협상 제안서에서 반영된 비교역 문제(non-trade concerns)에 주의하며, 비교역 문제가 도하 각료선언에 따른 농산물 협정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협상에서 고려될 것을 확인한다.

87. 이를 행하지 아니한 선진국들이 2001년 5월 20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2001-2010년 간 최빈국에 대한 행동계획에서 구체화된 바에 따라 모든 최빈국 수출에 대하여 면세 및 쿼터 프리(quota-free) 접근 목표를 위하여 활동하도록 요청한다.

88. 도하 선언 제 35항에 따라 소규모의 취약한 경제가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로 더욱 완전하게 통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무역 관련 이슈 및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WTO 작업 프로그램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전념한다.
89. 재정 및 기술 지원, 경제 다양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통해 수출을 다양화하도록 상품 의존국가의 능력을 배양하며, 상품 가격의 불안정성 및 교역조건의 하락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상품공동기금의 제 2차 계정(Second Account of the Common Fund for Commodities)에 포함된 활동을 강화한다.
90. 공공-민간 협력과 기술 원조에 대한 재정 지원, 기술 개발 및 개도국에 대한 능력 배양 등 모든 수준에서 조치를 통하여 무역 자유화로 인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의 이익을 증진한다.
- (a) 무역 인프라를 증진하고 제도를 강화한다;
 - (b) 상품 가격의 불안정성 및 교역조건의 하락에 대처하도록 수출을 다양화하고 증가시키는 개도국의 능력을 증진한다;
 - (c) 개도국 수출의 부가 가치(value-added)를 증진한다.
91.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무역, 환경 및 발전의 상호 조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a) 도하 각료선언에서 이루어진 공약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WTO 무역환경위원회(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및 WTO 무역개발위원회(WTO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각각의 위임 사항 이내에서 협상의 발전 및 환경 측면을 확인하고 토의하는 포럼으로써 각각 역할 하도록 장려한다;

- (b)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환경을 강화하도록 보조금에 대한 도하 각료선언의 작업 프로그램의 완성을 지원하며, 환경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없는 보조금의 개혁을 장려한다;
- (c) WTO, UNCTAD, UNDP, UNEP의 사무국과 기타 관련 국제 환경, 개발, 지역 기구들간 개도국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 무역, 환경 및 발전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을 장려한다;
- (d) 무역, 환경 및 발전 연계를 보다 잘 확인하는 중요한 국가 수준의 수단으로써 환경 영향평가의 자발적 이용을 장려한다. 이 분야 경험이 있는 국가 및 국제 기구가 본 목적에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92. WTO를 통해 합의된 작업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일관된 다자간 무역체제 및 다자간 환경협정간 상호 조화를 증진하며, 양측 수단의 안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93.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조치를 통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무역 자유화의 이익을 강화하도록,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추가 조치에 착수함으로써 도하 각료선언 및 몬트레이 합의를 보완하고 지원한다.

- (a)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 목적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일관된 현행 무역 및 협력 협정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 (b) 개도국에 대한 능력 배양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환경 및 발전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기 농산품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및 국제 시장의 창출과 확대를 위한 자발적인 WTO 양립의 시장 기반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c) 개도국을 비롯한 수출국을 지원하도록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규제 및 절차를 단순화하고 더욱 투명하게 하는 조치를 지원한다.

94.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TRIPS 협정에서 합의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및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의 중요성을 지지하면서, HIV/AIDS, 폐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전염병으로 인한 다수의 개도국 및 최빈국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문제들에 대처한다. 따라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두를 위한 의학으로의 접근을 증진하여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해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재확인한다.

95. 국가들은 환경 악화 문제에 더욱 잘 대처하여 모든 국가에서 경제 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협력적이고 공개적인 국제경제체계를 증진하도록 협력한다. 환경 목표를 위한 무역정책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임의적이거나 이치에 맞지 아니한 차별 혹은 위장적인 제한 조치들로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국 관할의 외부 환경의 도전을 다루는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초국경적 혹은 세계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 조치는 가능한 국제 합의에 기반하여야 한다.

96. 여성 및 아동과 같이 영향받은 국가 인구에 의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달성을 방해하고, 복지를 저지하며, 건강 및 복지에 적절한 생활 수준의 권리와 식품, 의료 및 필수 사회 서비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지장을 주는 국제법 및 UN 헌장에 따르지 아니하는 일방적 조치의 무효를 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일방적 조치를 자제한다. 식품 및 의학이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97.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양립하지 아니하며, 퇴치 혹은 제거되어야 하는 특히 식민지 및 해외 점령지 국민의 자결권(self-determination)의 실현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하도록 추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해외 점령지의 국민들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98. UN 헌장에 따른 국가들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에 근거하여, 평등권 및 국민의 자결권에 따라 수행하고 인종의 차별 없이 영토에 속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소유한 주권 및 독립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통일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분할하거나 손상시키는 활동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 98.bis.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방해를 야기하는 국제 테러에 대하여 일치된 행동을 통해 해결한다.
99.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아젠다 21 제 34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호 합의된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한 호의적 조건을 기반으로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이에 상응하는 노하우의 접근 및 개발, 이전 및 확산을 증진하고, 촉진하며, 재정지원 한다.
- (a)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 (b)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상응하는 노하우의 접근, 개발, 이전 및 확산을 증진하도록 개도국의 현행 국가 제도적 능력을 강화한다;
 - (c) 국가 주도 기술 필요성 평가를 촉진한다;
 - (d)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비용 효율적 방식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

전을 진척시키고 이행을 지원하는 피원조국 및 원조공여국 모두 법적 및 규제 틀을 구축한다;

- (e) 자연 재해에 영향을 받는 개도국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 및 완화 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접근 및 이전을 증진한다.

100.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양자 및 지역 수준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개선한다.

- (a) 대학, 연구 기관, 정부 기관 및 민간 분야간 상호작용 및 협조, 이해관계자 관계 및 네트워크를 개선한다;
- (b) 기술 및 생산성 센터, 연구, 훈련 및 개발 기관, 국가 및 지역 청정 생산 센터와 같은 관련 제도적 지원 시설의 네트워크를 개발 및 강화한다;
- (c) 최선의 실행을 공유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증진하여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지원하도록 투자 및 기술의 이전, 개발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협력을 창출한다;
- (d) 공공 소유의 혹은 공공 영역내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 및 기술에 대한 공공 영역 내의 이용 가능한 지식을 입수하고, 발전 목표 추구를 위하여 지식을 독자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및 전문 기술을 입수하도록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 (e)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및 확산의 현행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적절한 경우 신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101. 다자적 국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더욱 확대된 할당에 접근하도록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센터를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창설한다.

102. 연구 기관, 대학, 민간 분야, 정부, 비정부기구 및 네트워크간, 뿐만 아니라 개도국 및 선진국의 과학자와 학회들간 연구·개발(R&D) 및 이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하여 협조 및 협력을 증진하는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및 기술의 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점에서 개도국의 과학 우수 센터들간 네트워크를 장려한다.

103.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자연 및 사회 과학자들과 과학자 및 정책결정자들간 협력 증진을 통해 모든 수준의 정책 및 의사결정을 개선한다:

- (a) 과학 지식 및 기술의 이용을 증진하고, 지방 및 토착 지식의 보유자를 존중하면서 국가법에 따라 이러한 지식의 유익한 이용을 증진한다;
- (b) 통합된 과학 평가, 위험성 평가 및 학제간·분야간 접근법을 더욱 이용한다;
- (c) 개도국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포함한 의사 결정을 지지하는 국제 과학 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 (d) 과학 및 기술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개도국을 지원한다;
- (e) 과학, 기술 발전 및 공학 분야에 대한 확대된 역할을 보장하도록 과학자의 조언을 의사결정체에 통합함으로써 과학, 공공 및 민간 기구들간 협력을 구축한다.
- (f) 과학 기반의 의사결정을 증진 및 개선하고, 다음과 같이 명시된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원칙 제 15조에 따라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을 재확인한다: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들은 그들 능력에 따라 예방적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심각한 혹은 역전 불가능한 손실이 있는 경우, 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연기하는 근거로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핍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환경 관리 및 보호 정책의 공식화 및

이행에서 환경보호 관련 이슈에 대처하는 노력에 있어 능력을 강화하도록 국제 협력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한다:

- (a) 환경 감독, 평가 모델, 정확한 자료 및 통합 정보 체계에 대한 과학 및 기술의 이용을 개선한다;
- (b) 우량의 정확하고 장기적이며 일관성있고 신뢰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지지하면서 우량의 자료 수집, 증명 및 갱신과 대기 및 지상 관측의 추가적 개선에 대한 위성 기술의 이용을 증진하고, 적절한 경우 개선한다;
- (c) 효과적인 과학 및 기술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과학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services)을 창설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개발한다.

105. 아젠다 21의 이행에 대한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요청하고 제공받으면서 정책 결정자 및 과학 공동체간 정규 채널을 구축하고, 지식, 경험 및 우수 실행의 공유 및 개도국의 과학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및 교육의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강화한다.

106. UN 정보통신기술위원회(U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ask Force)에서 촉진된 작업 및 기타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의 노력에 의거하여, 통신 빈도와 경험 및 지식의 공유를 증진하고, 모든 국가에서 정보 및 통신 기술의 품질과 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써 적절한 경우,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한다.

107. 신규 및 추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재정 및 기술 자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청정 생산 및 생산 기술을 획득하도록 연구·개발 강화 목적의 전략적 제휴에 관계된 공공 자금 지원 연구·개발 기구들을 지원하고, 개도국에 대하여 이러한 기술의 이전 및 확산을 장려한다.

108. 공공의 이해를 더욱 증진하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워크숍을 통해 세계적 공익 이슈를 검토한다.
109.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결정적이다. 따라서 다음의 목표 및 활동을 추구하는 국가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여, 세계 은행(World Bank)과 지역 개발은행을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기부자, 시민 사회, 재단 등으로부터 모든 수준의 재정 자원을 포함한 필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a) 2015년까지 아동, 소년, 소녀 모두 초등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전세계적 초등 교육 달성의 밀레니엄 선언 발전 목표를 충족한다;
 - (b) 지방 및 빈곤에 처해있는 소녀 등의 모든 아동에게 초등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접근 및 기회를 제공한다;
110. 다음 활동을 이행하도록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교육, 연구, 공공 인식증진 프로그램 및 개발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원조를 제공한다.
- (a) 환경 및 공중 위생 교육 관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 (b)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전 세계 대학들을 포함한 다수의 고등 교육 기관이 직면한 상승적이고 심각한 재정적 제한을 회피하도록 수단을 고려한다;
111. 유행병에 심각하게 영향받은 국가들의 교육 체계에 대한 HIV/AIDS의 영향에 대처한다.
112. 모두를 위한 교육의 다카르 행동 틀(Dakar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All)에서 제안된 기초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교육 및 양자·

다자 발전 프로그램으로의 개선된 통합을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자원을 할당하고, 공공 자금 지원 연구·개발과 발전 프로그램간 통합을 향상시킨다.

113. 성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교육체계를 창출함으로써 모든 수준 및 형태의 교육, 훈련 및 능력 배양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통해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발전 목표를 충족하도록 모두를 위한 교육의 다카르 행동 틀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늦어도 2015년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성적 불평등을 제거한다.

114.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써 교육을 증진하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든 교육 수준의 교육 체계로 통합한다.

115. 모두를 위한 교육의 다카르 행동 틀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 달성을 이끄는 지역의 조건 및 필요성에 관련되는 교육 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을 국가, 소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개발, 이행, 감독 및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이러한 계획의 일부로 만든다.

116. 문맹을 퇴치하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자발적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공식 및 비공식 지속적 교육 기회를 모든 지역사회 일원들에게 제공한다.

117.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교육의 이용을 지원한다:

- (a) 지방 및 도시 지역사회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발전에 정보통신 기술을 통합시키고, 이러한 기술에 필요한 여건 조성의 구축을 위하여 특히 개도국에 지원을 제공한다;

- (b) 모든 협력자에 이익이 되는 경험 및 능력 교환을 진전하도록 선진국 대학 및 연구 기관의 개도국 출신 학생, 연구자 및 공학자에 대하여 입수가능하고 증가된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을 증진한다;
- (c)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작업 프로그램(재가 programme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 (d) UN 총회가 2005년에 시작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년 교육 채택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118. 인력, 제도 및 인프라의 능력 배양 이니셔티브를 강화 및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개도국의 개별적 필요성에 반응하도록 협력을 증진한다.

119. 신규 및 추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재정 및 기술 자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지식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적용시키고, 지방, 국가, 소지역 및 지역의 교육, 연구, 훈련을 위한 우수센터를 증대하는 조치를 통해 지방, 국가, 소지역 및 지역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119.bis UN개발계획 능력배양 21 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 capacity 21 programme)과 같은 능력 배양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a) 개별, 제도 및 사회 차원에서 각각의 능력 개발 필요성 및 기회를 평가한다;
- (b)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세계화의 도전에의 효과적인 대처 및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c)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및 전략을 고안하고, 이행하며, 검토하

는데 참여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능력을 개발한다;

(d) 아젠다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수행하는 국가 능력을 구축하고 적절한 경우 강화한다.

119.ter. 리우 선언 원칙 제 5, 7 및 11조를 고려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환경 정보 및 사법적, 행정적 절차로의 국가 수준의 접근을 보장하고,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원칙 제 10조를 진전시키도록 의사 결정에의 공공 참여를 보장한다.

119.quater 성별, 연령 및 기타 요인으로의 분리된 자료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국가 및 지역 정보와 통계 및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공식화 및 프로그램 이행 능력을 강화하도록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기부자를 장려한다.

119.quinques 국가 조건 및 우선 순위에 부합하여 자발적 근거 하에 성별 측면의 통합을 포함한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표(indicators)의 추가 작업을 장려한다.

119.sexties.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문 9/4의 제 3항에 따라 지표에 대한 추가 작업을 증진한다.

119.septies.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환경적 영향, 토지 이용 및 토지 이용도 변경에 대한 우량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위성원격탐사(satellite remote sensing), 세계 지도제작(global mapping) 및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포함한 지구관측기술의 개발 및 광범위한 이용을 증진한다.

- (a) 능력 배양과 지상 관측, 위성 원격 탐사 및 모든 국가들간 기타 출처로부터의 자료 공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통합된 세계 관측을 위한 세계 관측 시스템 및 연구 프로그램들간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한다;
- (b) 지구 관측 자료의 활발한 교환을 포함한 가치 있는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한다.
- (c) 세계 지도 제작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협력을 장려한다.

119.octies. 다음을 이행하는 국가 노력에 있어 특히 개도국을 지원한다:

- (a) 정확하고,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고, 신뢰 가능한 자료를 수집한다;
- (b) 자료 수집 및 지상 관측의 추가 개선을 위한 위성 및 원격 탐사를 이용한다;
- (c) 위성 원격 탐사,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satellite global positioning), 지도 제작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리 정보에 접근하고, 탐사하며, 이용한다.

119.noviens.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자연 재해의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 (a) 조기 경보 목적의 재해 관련 정보에 대한 입수 가능한 접근을 제공한다;
- (b) 세계 기상 관측 시스템으로부터의 이용 가능한 자료를 시기 적절하고 유용한 생산품으로 변형시킨다.

119.diciens.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계획에 대하여 필수 의사결정지원정보 (decision-support information)를 제공하도록 국가 수단으로써 환경 영향력 평가의 광범위한 적용을 개발 및 증진한다.

119.undeciens 지방 및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

능한 발전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 전략 및 계획에 대한 방법론을 증진하고 추가 개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들이 이용할 적절한 방법론의 선택은 국가 개별적 조건 및 상황에 적합하여야 하고, 자발적인 근거로 이루어지며, 국가 개발 우선 순위 필요성에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X.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20.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틀은 아젠다 21,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결과의 후속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전으로 등장한 회의의 완전한 이행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틀 강화 목적의 조치는 아젠다 21의 조항뿐만 아니라 1997년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1997 Programme for its further implementation) 및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의 원칙에 의거하며, 몬트리외 합의와 1992년 이후의 기타 주요 UN 회의 및 국제 협정 관련 결과들을 고려하면서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 달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이행 수단을 포함한 개도국의 개별적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모든 국가들의 필요성에 대응하여야 한다. 현행 위임사항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루는 국제 조직체 및 기구의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 국가 및 지방 기구들의 강화를 이끌어야 한다.

120.bis. 건전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건실한 경제정책, 국민의 필요성에 반응하는 견고한 민주 제도 및 개선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고용창출의 기반이 된다. 자유, 평화 및 안보, 국내적 안정, 발전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법률 규칙, 성평등, 시장 지향적 정책, 그리고 공정한 민주 사회에 대한 총체적 책임 역시 필수적이며 상호 보완적이다.

목 표 (Objectives)

121. 모든 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도적 준비를 강화하는 조치는 아젠다 21의 틀 내에서 취해져야 하고, UN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발전에 의거하며, 다음 목적의 달성을 이끌어야 한다.

- (a)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약 강화;
- (b) 균형적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의 통합;
- (c) 특히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자원의 동원뿐만 아니라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통해 아젠다 21의 이행 강화;
- (d) 긴밀성, 조정 및 감독 강화;
- (e) 법률 규칙의 증진과 정부 기관의 강화;
- (f) 위임 사항 및 비교 우위에 근거하여 UN 체계 내외 국제 기구들 활동의 중복 및 복제를 제한함으로써 유효성 및 효율성 증진;
- (g) 아젠다 21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효과적 개입의 강화뿐만 아니라 투명성 및 광범위한 공공 참여 증진.
- (h) 특히 개도국의 지방 수준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능력 강화;
- (i) 아젠다 21 및 정상회의의 결과의 이행 강화 목적의 국제 협력 강화.

국제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강화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122. 국제 공동체는 다음을 이행한다.

- (a) 아젠다 21에 반영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뿐만 아니라 아젠다 21 및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결과 이행에 대한 지원을 관련 UN 기관, 프로그램 및 기금, 지구환경금융, 위임사항 이내 국제 재정 및 무역 기관의 정책, 작업 프

로그래 및 운영 지침으로 통합하여 강화한다. 동시에 이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의 국가 프로그램 및 우선 순위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강조한다.

- (b) UN 최고운영위원회(UN Chief Executive Board for Coordination), UN 개발 그룹(UN Development Group) 및 환경 관리 그룹(Environment Management Group)과 기타 기관간 통합체를 이용하여, UN 체계, 국제금융 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및 WTO 이내 및 이들간 협력을 강화한다. 강화된 기관간 협력은 아젠다 21을 이행하는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개별적 이슈에 대한 협력 협정을 포함하여, 운영 수준을 특히 강조하면서 모든 관련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c)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세 가지 차원을 강화하고 더욱 통합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사회적 이슈에 일차적 초점을 맞춘 기관의 프로그램 및 정책에 완전히 통합하도록 증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은 사회발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및 5년간 검토 결과에 대한 후속을 강조하고, 그들의 보고서를 고려하며, 사회보장체계를 지원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 (d) UN환경계획 제 7차 특별회기 총회(UNEP Governing Council at its seventh special session)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결정문 I의 결과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제 57차 UN 총회가 총회/세계 장관급 환경포럼(Governing Council/Global Ministerial Environment Forum)에 대한 일반 회원국 구축의 중요하지만 복잡한 이슈를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 (e) 원산국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의 송환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협상을 시기 적절하게 완성하도록 적극적 및 구조적으로 개입한다;
- (f)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및 기타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중 이해관계자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의 기업 책임성 및 최선의 실행 교환을

증진한다;

(g) 모든 수준에서 몬트레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123. 국제 수준의 건전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의 기초가 된다. 역동적이고 가능한 국제경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발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재정, 무역, 기술 및 투자패턴을 다룸으로써 세계 경제적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국제 공동체는 구조 및 거시경제 개혁에 대한 지원 보장, 대외부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개도국에 대한 시장 접근의 증가를 포함한 모든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재정 구조 개혁 노력은 더욱 확대된 투명성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보편적이고, 규칙 기반의, 공개적이며,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간 무역체제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무역자유화는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들이 이익을 얻는 세계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124.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UN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세계경제체계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취지로 UN의 이상과 국제법 및 UN 헌장에 간직된 국제법 원칙, 그리고 UN체계 및 기타 다자간 기구의 강화와 이러한 기구들 운영의 개선 증진에 대하여 굳은 책임이 필수적이다. 국가들은 또한 원산국에서 불법적으로 이전된 자금 송환 문제를 포함한 모든 측면의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최대한 신속하게 협상하고 승인하며, 또한 돈 세탁(money-laundering)을 제거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총회의 역할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125. UN 총회는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UN 활동의 틀을 포괄하는 핵심 요소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채택하여야 하

며, 아젠다 21 및 이의 검토 이행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UN경제사회이사회의 역할 (Role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26.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를 UN 체계 및 전문 기구의 조정과 부속 기구의 감독을 위한 중심 메커니즘으로써 재확인하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 결정 48/162 및 50/277에 관한 UN 헌장 및 아젠다 21 조항의 관련 제공에 의거하여, 전 시스템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아젠다 21의 이행을 증진하도록 경제사회이사회는 다음을 이행한다.

- (a)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전 시스템 조정을 감독하는 역할과 UN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의 균형 잡힌 통합을 증가시킨다.
- (b) 이행 수단을 포함하여 아젠다 21의 이행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의 주기적인 고려를 계획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권고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이루어진다.
- (c)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UN 작업의 모든 관련 측면을 효과적으로 고려하도록 상급, 조정, 운영 활동 및 일반 부분을 충분히 이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사회이사회는 개별적인 절차 규칙에 따라 상급 부분 및 관련 기능 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s)의 작업에 대하여 주요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한다.
- (d) 아젠다 21의 이행 관련 기능 위원회 및 기타 부속 기구 활동의 더욱 확대된 조정, 상보성, 효과 및 효율성을 증진한다.
- (e) 에너지 및 자연자원 발전 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for Development)의 작업을 종결하고 이 작업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전한다.
- (f) 정상회의 후속 작업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몬트레이 합의 후속 작업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간 지속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장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회는 몬트레이 합의에 제시된 바에 따라 브레튼 우즈 체제 및 WTO와의 회의 관련 협력을 개발하도록 방안을 검토한다;
 (g) 성차별 철폐(gender mainstreaming)가 아젠다 21의 이행 조정 관련 활동의 필수 요소가 되도록 노력을 강화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Role and function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127.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UN 체계 이내 지속가능한 발전 상급 위원회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차원의 통합 관련 이슈 고려를 위한 포럼으로써 기능 한다. 아젠다 21의 관련 부분에 명시된 바와 총회 결정 47/191에서 채택된 바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 기능 및 위임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도, 위원회가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역할을 고려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강화된 역할은 아젠다 21의 이행 진전상황의 검토 및 감독뿐만 아니라 이행, 이니셔티브 및 협력의 긴밀성 촉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128. 이러한 맥락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아젠다 21의 이행에 대한 관련 정부, 국제 기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증진 및 촉진하여 모든 수준에서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더욱 강조한다.

129.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을 이행한다:

- (a) 아젠다 21의 추가적인 이행을 검토하고, 진전상황을 평가하며, 증진한다.
- (b) 개별적인 분야 이슈의 분야간(cross-sectoral) 측면을 강조하고, 상급 분야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차원 및 분야를 다루는 각료들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의 통합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 (c) 아젠다 21의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 및 기회에 대처한다;

- (d) 위원회는 2년 주기의 위원회 회기의 협상을 제한하여 아젠다 21의 이행 관련 조치들에 초점을 맞춘다.
- (e) 각 회기 처리하는 주제의 수를 제한한다.

130.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 (a)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아젠다 21의 추가적 이행을 증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이행에 대한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도록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 (b) 학습된 교훈, 진전상황 및 최선의 실행을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협력 논의에 대한 초점으로써 기능한다.
- (c) 현행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능력 배양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 관련 이슈를 검토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 보고서 및 지역 경험의 더욱 효과적인 이용에 대해 고려하고, 적절한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 (d)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의사 결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조치에 대한 분석 및 경험 교환을 위하여 포럼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 보고서의 더욱 효과적 이용에 대해 고려한다;
- (e) 국제 법률 기관 및 메커니즘 관련 아젠다 21의 이행을 증진하도록 관련 정부 간 조직체의 역할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중대한 법적 개발을 고려한다;

13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작업의 실제 양식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주제 작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는 경우, 후속 회기에서 위원회가 이러한 이슈에 대한 개별 결정문을 채택한다. 특히, 다음의 이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UN 총회 결정문 47/191에 포함된 위원회 위임사항의 이행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를 제공한다;
- (b) 국제 기구뿐만 아니라 본 작업의 주요 단체들의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c) 과학 공동체의 인출 및 위원회에 개입하는 국가, 지역 및 국제 과학 네트워크의 장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과학적 기여를 고려한다;
- (d) 위원회 활동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가의 기여를 증진한다;
- (e) 회기간(inter-sessional) 회의의 예정표 및 기간.

132.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학습된 최선의 실행 및 교훈 증진 목적의 추가 조치에 착수하고, 정보 기술의 광범위한 이용을 포함한 자료 수집 및 보급의 최신 방법의 이용을 증진한다.

국제기구의 역할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133. 위임사항 내에서 다음을 이행하는 협력 노력을 강화하도록 국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TO 및 GEF를 포함한 UN 체계 내외에서 국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a) 모든 수준에서 아젠다 21의 이행에 대한 효과적이고 집합적인 지원을 증진한다;
- (b) 아젠다 21,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결과, 밀레니엄 선언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측면, 몬트레이 합의 및 2001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 회의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국제 기구의 효율성 및 조정을 강화한다;

134.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 세계 기관간 협력 및 조정을 추가 증진하고, 정보 교환 촉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아젠다 21 이행의 채택된 조치를 경제

사회이사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정보제공 받도록 하여, 비공식 협력 노력을 통한 조정 최고 집행위원회(Chief Executive Board for Coordination)를 UN 사무총장이 이용하도록 요청한다.

135. 개도국의 지역 및 국가 발전 능력 배양 노력에 대한 중요 메커니즘인 능력배양 21 (Capacity 21)로부터 획득된 경험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UN개발계획(UNDP) 능력 배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강화한다.
136. UN환경계획 및 기타 UN 기관과 전문 기관, 브레튼 우즈 체제 및 WTO간 위임사항 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137. 위임사항 내의 UN환경계획(UNEP), UN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 UN개발계획(UNDP) 및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능력 배양 증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및 모든 수준의 아젠다 21 이행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여야 한다.
138. 국제 수준에서 아젠다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하도록 다음 사항에 착수하여야 한다:
 - (a) 국제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 일정을 합리화하고, 적절한 경우, 이행 관련 실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소요 시간을 지지하여 회의의 횟수, 회의 길이 및 협상 결과의 소요 시간을 줄이도록 한다;
 - (b)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결과를 지원하도록 모든 관련 행위자들의 이행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장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 협력 개발 및 협력 후속작업은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주목하여야 한다;
 - (c)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의 발전을 충분히 이용한다.

[제 139항은 삭제되었다.]

14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제도 틀의 강화는 진보적 과정이다. 관련 준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격차를 확인하며, 기능의 중복을 제거하고, 아젠다 21 이행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의 확대된 통합, 효율성 및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준비 강화 (Strengthen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regional level)

141. 아젠다 21 및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결과 이행은 지역 위원회(regional commissions) 및 기타 지역, 소지역 기관을 통해 지역 및 소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4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내(intra-regional) 조정 및 협력은 지역 위원회, UN 기금(UN Funds), 프로그램 및 기관, 지역개발은행과 기타 지역 및 소지역 기관 간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및 지역 우선 순위를 반영하면서 발전에 대한 지원, 합의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조치 계획의 강화 및 이행을 포함한다.

143. 특히 아젠다 21의 관련 조항을 고려하여 기타 지역 및 소지역 기구체와 협력하는 지역 위원회는 다음을 이행한다:

(a) 아젠다 21의 이행을 통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의 위원회 작업에 대한 통합을 증진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UN 지역 위원회(UN regional commissions)는 내적 조치를 통해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외부 지원을 제공받는다;

- (b) 국가 경험, 최선의 실행, 사례 연구 및 아젠다 21 이행 관련 협력 경험을 포함한 경험 교환을 촉진 및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의 지역, 소지역 및 기타 기구체 작업에 대한 균형 잡힌 통합을 촉진 및 증진한다;
- (c) 기술 및 재정 지원의 동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 목표의 처리를 포함한 지역 및 소지역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및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의 제공을 촉진한다;
- (d)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및 소지역 수준에서 아젠다 21 이행을 지원하도록 협력을 장려한다.

144. 아프리카 신개발협력(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과 같은 지역 및 소지역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군소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의 지역간 측면(inter-regional aspects)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강화 (Strengthening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145. 국가는 다음을 이행한다.

- (a) 정책 결정, 조정, 법률의 이행 및 집행에 필요한 현행 당국 및 메커니즘의 구축 혹은 강화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에 대하여 긴밀하고 조정된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 (b)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가 전략의 공식화 및 구체화를 진전시키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2005년까지 이행에 착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특수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제 협력을 통해 전략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을 통합하는

빈곤축소전략으로 공식화가 가능하며, 각 국가의 국가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46. 각 국가는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 정책 및 발전 전략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분명하고 효과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는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투명성, 책임성과 공정한 행정 및 사법제도를 증진함으로써 정부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146.bis. 모든 국가는 법률, 규제, 활동,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 참여를 증진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공식화에 대하여 완전한 공공 참여를 육성하여야 한다. 여성 역시 정책 공식화 및 의사결정에 완전하고 공평하게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147.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상위 단계의 초점을 제공하도록 지방 수준을 포함한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 및/또는 조정 기구의 구축 혹은 강화를 추가적으로 증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

148.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제도적 준비를 강화하도록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노력을 지원한다. 이는 빈곤축소전략, 원조 조정, 참여 접근법 증진 및 정책 분석 강화, 관리 능력 및 이행 능력과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공식화에 있어 분야간 접근법 증진을 포함한다.

149. 아젠다 21 및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결과를 이행하고 지방 아젠다 21(Local Agenda 21) 프로그램 및 관련 이니셔티브와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

원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방 자치당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능력을 강화하고, 인간정주의제(Habitat Agenda)에서 요청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 하도록 지방 자치당국과 기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장려한다.

주요 단체의 참여 (Participation of Major Groups)

150.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하여 모든 주요 단체뿐만 아니라 자발적 단체를 포함한 정부 및 비정부 관계자들간 협력을 강화한다.

[제 151항은 삭제되었다.]

152. UN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의 완전하고 투명한 참여로 환경 및 발전 권리를 포함한 인권간의 가능한 관계에 대한 고려사항을 인지한다.

153. 지역 청소년 회의 혹은 상응 기관 지원을 통해 및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한 지역은 설립을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 및 지원한다.

ABSTRACT

The Analysis of WSSD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Following Measures

Chung, Young-Keun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which was held in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on September 2002, was brought up the new paradigm of seeking for the harmony among th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ocial welfare, and it is presumable to be the indicator of economy, environment, and social policy by adopting promote as the fundament in 21C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each countries.

In this study, analysis of WSSD expanding discussion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each case were the foundation of build the WSSD latest result, which is from the Plan of Implementation schedule to the domestic following condi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endency of the analysis was as the decision is appeared on the board, and the opening to the closing ceremony were might be called the range of study, total of four sessions such as the Global Preparatory Committee, Regional Preparatory Meetings, WSSD, through ou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tendency and result would be the range of study for this. After the 1992 Earth Summit in Rio, domestic condition was focused on the Agenda 21, which is the discharge result and the national strategic impulse accomplishment, and comprise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le condition and the discharge efforts to the range of study.

Based on the WSSD Plan of Implementation, the following measures will bring out as the term of short, mid, and long perio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ssignment.

WSSD is able to examine throughou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scussion. It held for evaluating the last 10 years impulse accomplishment of th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which was adopted in 1992, and manage to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fter the year 2002. The four sessions of Global Preparatory Committee and five Regional Preparatory Meetings were unfolded, and the draft agreement was negotiated. At the WSSD session the ten main agendas, which were brought up during the Preparation Committee, would be the leading discussion to pull out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Plan of Implementation, Partnership/Initia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primary subject, which was come out during the WSSD preparatory to the main summit. Unfold and belong to the three different categories of economy and society par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means of implementation. The each subject was analyzed based on the leading subject at the second session of Preparatory Committee and general domestic condition and strategy of details.

Regarding above as for the discharge Plan of Implementation, the future impulse assignment is appeared. The Introduction, Poverty Eradication,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Globalizing World, Health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of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ose kind of impulse assignments were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to conduct the plan, and those were the details of leading strategy in discussion.

The following measures were based on the discharge Plan of Implementation, and in the middle of the general flowing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ecent negotiation and discussion, brought out 53 impulse primary measures for ou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ange of operation Plan of Implementation categorized to the term of short, mid and long as to the meaning of each assignment and Plan of Implementations aim year. Also must be examined and reviewed of how those were organically connected in the range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This study is provided the cooperated institution as the brought up assignment. The several controversial points while progress were the inadequacy of system mediation and regulation, the inadequacy of political reflection, inadequacy of connection between the local environment management department, and the inadequacy of absence of importance group during the session. It is able to present the impulse directions, such as the political harmony and unification approach, the demand focus and drive up of eco-efficiency, the preliminary protection intensity, the policy based on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ializ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 and the building of international society partnership.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only focused on the environment protection as the exclusive possession 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NGOs, also under these kinds of understandin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never embedd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s the concept of integration of the economic growth, environment protection, and social welfare. Not on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also all Ministries participation is the key to discharg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garding to the WSSD 2002, we must inspect and evaluate our sustainable development impulse accomplishment from the Earth Summit in Rio to the present.

집필자 약력

鄭英根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1983)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교 경제학박사(199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현, E-mail: ykchung@kei.re.kr)

著書 및 論文

『거시환경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12

『거시환경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12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추진전략』 환경부 2000. 6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환경부 2001. 8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영근

참여연구원 배현희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

임종수 (광운대학교 교수)

성수호 (환경부 사무관)

©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서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우편번호 122-706

전화 380-7777 팩스 380-7722

<http://www.kei.re.kr>

인쇄 2002년 11월

발행 2002년 11월

출판등록 제2-503호

ISBN 89-8464-034-4
